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9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한보영 boyoung84@krei.re.kr

TEL 02-3299-4374



중국농업동향

2009 여름호(제2권 제2호)

I. 농업정책 브리핑

- 2009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3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5
- 중국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현황과 과제 34
- 농촌노동력 이전과 농민공 문제 50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75
- 가격 동향 88
- 무역 동향 104
- 소득 동향 127
- 고추·마늘시장 동향 129

III. 농정연구 이슈

-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37

IV. 정책자료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전문 151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전문 161

V. 농업통계

177



I. 농업정책 브리핑

- 2009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현황과 과제
 - 농촌노동력 이전과 농민공 문제

2009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정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주석령 제14호; 이하 《분쟁조정중재법》이라 칭함)이 2009년 6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6.22~27)에서 통과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분쟁조정중재법》은 1장 총칙, 2장 조정, 3장 중재, 4장 부칙 등 총 4장 53조로 구성되었음.(《분쟁조정중재법》 전문은 IV. 정책자료 참조)
- 《분쟁조정중재법》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및 농업경영제도로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기구의 설치, 중재 업무의 절차, 중재 판결 및 집행 등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한 최초의 법률임.
-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촌토지도급법》은 토지도급 관련 분쟁의 발생 요건, 해결 방법 및 절차 등 분쟁의 해결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장 쟁의의 해결과 법률책임)하고는 있으나 중재 신청 또는 제소, 중재기구 설치 및 권한, 중재 절차 및 판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제정

- 중국 정부는 1995년 제정되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던 《식품위생법》의 대체 법률인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jchon@krei.re.kr)

- 《식품안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등 총 10장 104조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법》 시행 후속조치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식품안전법실시조례(초안)》을 사회에 공포하여 2009년 5월 4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식품안전법실시조례》를 통과시켜 7월 24일자로 공포 및 시행하였음.
- 《식품안전법실시조례》(국무원령 제557호)는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 안전사고 처리,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등 총 10장 64조로 구성됨.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전문은 IV. 정책자료 참조)

□ 《토지조사조례실시방법》 제정

- 중국 정부는 토지자원의 이용 현황 조사, 정확한 토지관련 기초 통계 정비를 목적으로 2008년 2월 7일자로 《토지조사조례土地調查條例》(국무원령 제518호)를 공포 및 시행하였음.
- 《토지조사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장 토지조사의 조직 실시, 제4장 조사 성과의 처리와 품질 통제, 제5장 조사 성과 공포와 응용, 제6장 표창과 처벌, 제7장 부칙 등 총 7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음.
- 《토지조사조례》는 매 10년마다 한차례씩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토지변경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제6조).
- 중국 국토자원부는 《토지조사조례》 시행 후속 조치로 2009년 6월 17일 국토자원부 제9차 부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토지조사조례실시방법》(국토자원부령 제45호)을 공포 및 시행하였음.
- 《토지조사조례실시방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조사 기구 및 인원, 제3장 토지조사의 조직 실시, 제4장 조사 성과의 공포와 응용,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등 총 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음.

- 《토지조사조례실시방법》은 토지조사의 종류를 전국토지조사, 토지변경조사(土地變更調查), 토지전항조사(土地專項調查) 등 3종류로 구분하고, 각각 조사 주체를 명시하였음(제3조).

토지조사 종류	주요 내용
① 전국토지조사	· 국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의 각종 토지에 대해 진행하는 전수조사 · 국무원 전국토지조사영도소조의 지휘하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조사영도소조에서 조사 실시
② 토지변경조사(土地變更調查)	· 전국토지조사의 기초위에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 현황 및 재산권의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수시로 진행하는 도시와 농촌의 지적 변경조사 및 토지이용 변경조사. 정기적으로 통계자료 종합. · 국토자원부 및 관련 부문이 조직하고,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 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실시
③ 토지전항조사(土地專項調查)	· 국토자원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특정 범위 및 시간 내에 특정 대상에 대해 진행하는 전문 조사. 경지개발자원조사, 토지이용동태 원격탐지 모니터링 및 경계측정 등. ·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이 조직 및 실시

□ 《통계법》 개정

- 중국 정부는 2009년 6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된 수정 《통계법》(주석령 제15호)을 공포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국 《통계법》은 1983년 12월 8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바 있음.
- 2005년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집행 검사조의 《통계법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關於檢查《中華人民共和國統計法》實施情況的報告》에서 통계법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국가통계국은 2005년 5월 이후 통계법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음.
- 수정 《통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조사관리, 제3장 통계자료의 관리와 공포, 제4장 통계기구와 통계인원, 제5장 감독검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등 총 7장 5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수정 《통계법》은 특히 통계자료의 허위보고, 누장보고, 위조, 임의수정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통계데이터의 질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초점을 두었음.
-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집행 검사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보고, 누장보고, 위조, 임의수정 등 위법행위가 전체 통계위법행위의 60%를 차지하였음.
- 수정 《통계법》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부문의 간섭 금지, 통계자료의 심의·서명·인수인계·보존 등 관리제도 수립, 통계종사자의 책임 강화, 위조 및 임의수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 이외에도 통계조사항목 관리, 통계자료의 관리 및 공포, 조사 및 감독, 법률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였음.

□ 위생부,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발전 촉진 방안 제시

- 중국 위생부는 2009년 7월 2일 농촌지역 기본의료보장제도인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및 공고화에 관한 의견關於鞏固和發展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的意見》(衛農衛發[2009]68호)을 발표하였음.
-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는 정부 주도 및 지원하에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농민, 집단, 정부 3자가 기금을 각출하여 운영하는 농민의료 상호공제제도를 지칭함.
-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모든 농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2009년 1분기 현재 가입한 농촌주민 수는 8.3억 명에 이름.

< 중국의 농촌합작의료제도 관련 주요 문건 >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009 7. 2	衛農衛發[2009]68호	《關於鞏固和發展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的意見》 / 위생부
1.10	衛辦農衛發[2009]6호	《關於做好新型農村合作醫療管理能力建設項目有關工作的通知》 · 위생부판공실
2008 12.4	衛農衛發[2008]65호	《關於規範新型農村合作醫療二次補償的指導意見》 / 위생부
10.24	-	《關於規範新型農村合作醫療健康體檢工作的意見》 / 위생부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4.14	-	《新型農村合作醫療補助資金國庫集中支付管理暫行辦法》/ 재정부
3.13	衛農衛發[2008]17호	《關於做好2008年新型農村合作醫療工作的通知》/ 재정부, 위생부
1.22	財社[2008]8호	《衛生部關於印發《新型農村合作醫療基金財務制度》的通知》 · 재정부, 위생부
2007 9.10	衛農衛發[2007]253호	《關於完善新型農村合作醫療統籌補償方案的指導意見》 · 위생부, 재정부, 국가중의약관리국
3.19	-	《關於下發中央財政新型農村合作醫療財政補助資金申報審核軟件的通知》/ 위생부, 재정부
3. 2	衛農衛發[2007]82호	《關於做好2007年新型農村合作醫療工作的通知》/ 재정부
1.31	財社發[2007]5호	《關於調整中央財政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補助資金撥付辦法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위생부
2006 11.22	衛農衛發[2006]453호	《關於新型農村合作醫療信息系統建設的指導意見》/ 위생부
1.10	衛農衛發[2006]13호	《關於加快推進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工作的通知》 · 위생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식품 약품관리감독국, 중의약국
2005 9. 8	國辦函[2005]81호	《關於增補和調整國務院新型農村合作醫療部際聯席會議成員的複函》/ 국무원판공실
8.10	衛農衛發[2005]319호	《關於做好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有關工作的通知》/ 위생부, 재정부
2004 8. 9	國辦函[2004]56호	《關於做好2004年下半年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工作的通知》 · 국무원판공실
6.21	財社[2004]37호	《關於完善中央財政新型農村合作醫療救助資金撥付辦法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위생부
1.13	國辦發[2004]3호	《關於進一步做好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工作指導意見的通知》 · 국무원판공실, 위생부,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인사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품약품관리 감독국, 중의약국, 빈곤구제반
2003 9. 3	國函[2003]95호	《關於同意建立新型農村合作醫療部際聯席會議制度的批複》 · 국무원
8.28	-	《國務院新型農村合作醫療部際聯席會議制度》 ·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인사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식품약품관리감독국, 중의 약국, 빈곤구제반
8.25	財社[2003]112호	《關於中央財政資助中西部地區農民參加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補助資金撥付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위생부
3.24	衛辦基婦發[2003]47호	《關於做好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工作的通知》/ 위생부판공실
1.16	國辦發[2003]3호	《關於建立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意見的通知》 · 국무원판공실,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
1997 5.28	國發[1997]18호	《關於發展和完善農村合作醫療若干意見的通知》 · 국무원, 위생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민정부

- 《의견》은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금 규모 확대 및 기금확보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한편 보상방안 정비,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금의 안정적 운용 보장, 의료서비스행위의 규범화, 의약비용의 불합리한 상승 억제, 농민공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의견》은 2009년 하반기부터 보상 상한선(최고 지불금액)을 해당지역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의 6배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의견》은 또한 2010년에 농민 1인당 기금 규모를 150위안으로 하고, 중서부지역의 경우 참여 농민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60위안을 보조하고, 농민 개인의 부담액은 30위안 이상으로 함.

□ 국무원, ‘농업발전 안정, 농민소득 증대’ 의견 제시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5월 10일 최근 6년 연속 식량증산을 달성하고, 농산물 공급이 풍족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삼농에 대한 관심도가 약해지고 농업을 홀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농업·농촌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농업발전 안정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當前穩定農業發展促進農民增收的意見》(이하 《의견》이라 칭함)을 발표하였음.
- 《의견》은 ①식량 등 주요 농산물 생산 증대, ②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 ③주요 농산물의 수매·비축 강화, ④농산물 가공업 및 대규모 농기업 발전 지원, ⑤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⑥농산물 수출입 조정, ⑦농민공 취업 확대 조치 실시, ⑧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기초시설 건설사업 확대 등 8가지 목표와 2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식량 등 주요 농산물 생산 증대: 파종 및 관리 강화, 보조 확대, 농자재 생산 및 공급 확대, 농업구조 조정 및 농업발전 방식 전환, 농업 생산능력 제고, 농업생산 과정에서 금융지원 확대.
-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 투입 확대, 시장조정 능력 강화, 질병예방.
- 주요 농산물의 수매·비축 강화: 수매·비축 능력 확대, 저장시설 건설 확대.
- 농산물 가공업 및 대규모 농기업 발전 지원: 대규모 농기업 발전 지원, 금융지원 확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재세정책 완비.

- 농산물 유통체계 발전 촉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비용 절감, 소비 확대.
- 농산물 수출입 조정 강화: 비교우위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민공 취업 확대 조치 실시: 농민공 취업지원 정책 실시, 농민공 취업훈련 강화, 농민공 취업기회 확대.
-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기초시설 건설사업 확대.

□ 농업부, ‘農墾농산물’¹ 품질이력 추적 표지 관리방법 발표

- 중국 농업부는 2009년 4월 21일 ‘農墾농산물’의 품질이력 추적제도 구축 및 ‘農墾농산물’의 품질이력 추적 표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農墾農產品質量追溯標識管理辦法(試行)》(農辦墾[2009]39호)을 발표하였음.

- 《관리방법(시험실시)》은 제1장 총칙, 제2장 이력추적 표지 사용권의 신청, 제3장 이력추적 표지 사용권의 수여, 제4장 이력추적 표지의 사용, 제5장 이력추적 표지 사용의 관리 감독, 제6장 부칙 등 총 6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력 추적 표지>

- 중국 농업부는 이에 앞서 2008년 7월 《農墾農產品質量追溯系統建設項目管理辦法(試行)》(農辦墾[2008]55호)를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관리방법(시험실시)》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관리, 제3장 항목 보고, 제4장 항목 실시, 제5장 항목 자금관리, 제6장 항목 검사 검수, 제7장 부칙 등 총 7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1 農墾의 영어 표현은 Agricultural Reclamation로 개간으로 해석되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병단(生產建設兵團)에 의해 개간된 국유농장 또는 이러한 국유농장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춘 독립적인 농업계통을 의미함(농업부 農墾局에서 관리). 따라서 農墾농산물은 이러한 농업계통에서 생산된 농산물(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산물)을 지칭함.

- ‘農墾농산물’ 품질이력추적 체계 건설항목은 농업부 農墾局(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가 주관 부문이며, ‘정부인도(政府引導), 기업실시(企業實施), 경쟁강화(擇優扶強), 시범사업을 통한 견인(示範帶動), 분산관리(分級管理), 점진적 추진(逐步推進), 관리감독 강화(強化監管), 수익창출(兼顧效益)’ 등 8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상무부·재정부, 2009년도 ‘쌍백시장공정(雙百市場工程)’ 계획 발표

-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는 2009년 6월 8일 현대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건설, 도시 및 농촌주민을 위한 채람자(菜籃子)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쌍백시장공정(雙百市場工程)’의 2009년도 계획을 담은 《농산물 유통네트워크 건설 강화, “쌍백시장공정” 추진에 관한 통지關於加快農產品流通網絡建設推進“雙百市場工程”的通知》(商建發[2009]277호)를 발표하였음.
- “쌍백시장공정”은 100개의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 및 개조하고, 100개의 대형 농산물 유통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실시, 공익성 시설·저장 및 운송시설 등 시설 건설,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신선농산물 배송센터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도 주요 사업 목표
 - 농산물 주산지과 주소비지를 중심으로 200개의 대형 신선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개조, 시장-생산기지-농가를 통합한 생산계열화 체계 강화 및 시장서비스 수준 제고.
 - 도시와 농촌에 표준화된 400여개의 농산물시장 건설·개조, 거래시설 완비, 거래환경 개선
 - 도매시장을 핵심으로 하고 농산물시장을 기초로 하며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건설, 유통비용 절감, 유통과정에서 손실 감소, 다양한 유통채널 개척, 농산물 판매난 해결, 농민소득 증대, 식품안전성 증대.
- 농산물 도매시장 지원 내용 및 자격 조건
 - 지원 내용: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품질안전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공익성 시설과 거래소 건물, 창고물류, 가공배송, 포장 등 경영성 시설의 건설 및 개조.

- 자격 조건: 종합시장인 경우 연간 거래총액이 동부 20억 위안 이상, 중부 10억 위안 이상, 서부 5억 위안 이상, 전문시장인 경우 연간 거래총액이 동부 8억 위안 이상, 중부 4억 위안 이상, 서부 2억 위안 이상. 시장 면적이 10ha(서부지역은 6.7ha) 이상이고 30년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시장.

○ 농산물시장 지원 내용 및 자격 조건

- 지원 내용: 거래소 건물, 냉장보관 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서비스시설의 건설 및 개조.
- 자격 조건: 소매 거래 위주이고 농산물 거래액의 비중이 전체 시장 거래총액의 60% 이상. 시장이 고정된 장소에 위치하고, 면적이 2,000 평방미터 이상인 시장.

□ 《유제품산업정책(2009년 수정)》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유제품산업의 발전, 산업관리 강화, 유제품의 품질안전 보장을 위해 수정된 《유제품산업정책(2009년 수정)乳制品工業產業政策(2009年修訂)》(工聯產業[2009]48호)을 발표하였음.
- 《유제품산업정책(2009년 수정)》은 제1장 정책목표, 제2장 산업의 분포, 제3장 유제품시장진입, 제4장 원유 공급, 제5장 기술 및 장비, 제6장 투자 및 융자, 제7장 상품 구조, 제8장 품질안전, 제9장 조직구조, 제10장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제11장 소비와 유통, 제12장 관리 및 감독, 13장 기타 등 총 13장 7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유제품 가공산업 진입 조건乳制品加工行業准入條件》(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 2008년 제26호), 《유제품산업정책乳制品工業產業政策》(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 2008년 제35호)는 폐지됨.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 시행세칙 발표

-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공안부·상무부·공상총국·국가질검총국은 2009년 6월 4일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정책 실시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大汽車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財建[2009]247호; 이하 《통지》라고 칭함)를 발표하였음.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은 2009년 3월 10일자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공안부·상무부·공상총국·질검총국 공동명의로 문건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 실시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財建[2009]104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²
- 《통지》는 소형 화물트럭을 폐차하지 않고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판매가격의 10%를 직접보조하고(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대당 5,000위안 정액보조), 중량 1.8톤 이하의 화물트럭도 보조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음.
-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공안부·상무부·공상총국·국가질검총국은 2009년 6월 4일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조작세칙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操作細則》的通知》(財建[2009]248호; 이하 《세칙》이라고 칭함)을 발표하였음.
- 《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하향기업 인증과 하향 상품 판매, 제3장 보조 조건 및 표준, 제4장 보조 신청, 심사 및 자금 지원, 제5장 자금 출처와 결산, 제6장 보장조치, 제7장 관리 및 감독, 제8장 부칙 등 총 8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의 보조 품목, 내용, 사업기간 〉

보조 품목	보조 내용	사업 기간
① 微型화물트럭(중량 1.8톤 이하)	보조대상 및 수량 -농민(농업호적), 농가당 최대 1대 보조 범위 -5만 위안 이하: 판매가격의 10% 보조 -5만 위안 이상: 대당 5,000위안 보조 -3륜 자동차, 4륜 저속 화물트럭 폐차 시 · 3륜 자동차: 대당 2,000위안 보조 · 4륜 저속 화물트럭: 대당 3,000위안 보조	2009.3.1 ~12.31
② 輕型화물트럭(중량 1.8~6.0톤 이하)		
③ 微型버스(배기량 1,300CC 이하)		
④ 3륜 자동차(3륜 농용차)		
⑤ 4륜 저속화물트럭(4륜 농용차)		
⑥ 오토바이(2륜·3륜 오토바이)	보조대상 및 수량 -농민(농업호적), 농가당 최대 2대 보조 범위 -5,000위안 이하: 판매가격의 13% 보조 -5,000위안 이상: 대당 650위안 보조	2009.2.1 ~2013.1.31

2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농업동향』 제2권 제1호 “농촌소비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참조

□ 2009년도 2/4분기 농업정책 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6.29	農機發 [2009]6호	농기계 전업합작사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快發展農機專業合作社的意見》 / 농업부
6.24	財農 [2009]92호	중앙재정 소형논 수리시설 중점현 건설에 관한 의견 《關於實施中央財政小型農田水利重點縣建設的意見》 / 재정부, 수리부
6.18	農業部公告 제1224호	사료첨가제 안전사용 규범《飼料添加劑安全使用規範》 / 농업부
6.17	財建 [2009]274호	제2차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생산기업 및 제품 목록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第二批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及產品目錄的通知》 ·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6.15	民發 [2009]81호	도시 및 농촌 의료구제제도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完善城鄉醫療救助制度的意見》 · 민정부, 재정부,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6. 5	衛監督發 [2009]52호	《식품안전법》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貫徹實施《食品安全法》有關問題的通知》 · 위생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식품의약품 관리감독국
5.30	中辦發 [2009]20호	촌민위원회 선거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關於加強和改進村民委員會選舉工作的通知》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
5.27	發改經貿 [2009]1362호	2009년 유채종자 수매 업무에 관한 통지 《關於做好2009年油菜籽收購工作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저량총공사
5.25	銀發 [2009]170호	집체임지재산권제도 개혁과 임업발전 금융서비스 업무를 잘할데 대한 지도의견 《關於做好集體林權制度改革與林業發展金融服務工作的指導意見》 ·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임업국
5.23	國辦發 [2009]42호	농촌 우정 물류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關於推動農村郵政物流發展的意見》 ·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5.19	發改經貿 [2009]1293호	자동차 오토바이하향사업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09年小麥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저 량총공사
5.19	發改經貿 [2009]1293호	2009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09年小麥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저 량총공사
5.18	農機科 [2009]45호	여름철 농기계작업 기술지도 의견 《“三夏”農機作業技術指導意見》 / 농업부 농업기계화관리사
5. 5	農辦醫 [2009]29호	돼지의 갑형 H1N1독감 감염 응급 예비안 《豬感染甲型H1N1流感應急預案（試行）》 / 농업부판공실
4.29	農辦醫 [2009]26호	농업부문 종사 인원의 돼지독감 감염 응급 예비안(시험실시) 《農業部門人感染豬流感應急預案（試行）》 / 농업부판공실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4.22	財綜 [2009]24호	일부지역 신규 증가 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 징수 등급의 조정에 관한 통지 《關於調整部分地區新增建設用地土地有償使用費征收等別的通知》
4.22	財金 [2009]31호	중앙재정 신행 농촌금융기구에 대한 비용보조자금 관리 잠행 방법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中央財政新型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資金管理暫行辦法》的通知》 · 재정부
4.16	財建 [2009]155호	가전하향사업 시행 세칙 《關於印發《家電下鄉操作細則》的通知》 ·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농업부, 환경보호부, 공소총사(供銷總社), 세무총국, 공상총국, 질검총국
4.15	財建 [2009]153호	제1차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생산기업 명단 및 제품 목록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第一批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名單及產品目錄的通知》 ·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4.15	農辦經 [2009]7호	대두산업 발전기제 창신 시범지역 업무 방안 《大豆產業發展機制創新試點工作方案》 / 농업부 판공실
4.13	財稅 [2009]37호	《關於加快落實地方財政耕地占用稅和契稅征管職能劃轉工作的通知》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4.10	財監 [2009]12호	일부 지역 가전하향 및 자동차·오토바이하향 정책 집행상황 조사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部分地區家電下鄉和汽車摩托車下鄉政策執行情況調查的通知》 · 재정부
4. 8	財建 [2009]143호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보조 심의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關於汽車摩托車下鄉補貼審核有關事項的通知》 / 재정부
4. 3	財建 [2009]140호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상품 표지 및 사용규범 등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汽車摩托車下鄉”產品標識及使用規範等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이하 《분쟁조정중재법》이라 칭함)이 2009년 6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6.22~27)에서 통과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분쟁조정중재법》은 1장 총칙, 2장 조정, 3장 중재, 4장 부칙 등 총 4장 53조로 구성되었음.
- 중국 국무원은 《분쟁조정중재법》 제정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개최된 제36차 상무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을 토론을 거쳐 통과시키고,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12.22~27)에 심의를 요청하였음.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초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법제업무위원회는 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하고 2009년 2월 15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음.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차 회의(4.20~24)와 제9차 회의(6.20~27)에서 각각 2차, 3차 심의를 거친 후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은 최종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되었음.
- 《분쟁조정중재법》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및 농업경영제도로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기구의 설치, 중재 업무의 절차, 중재 판결 및 집행 등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한 최초의 법률임.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jchon@krei.re.kr)

2. 법률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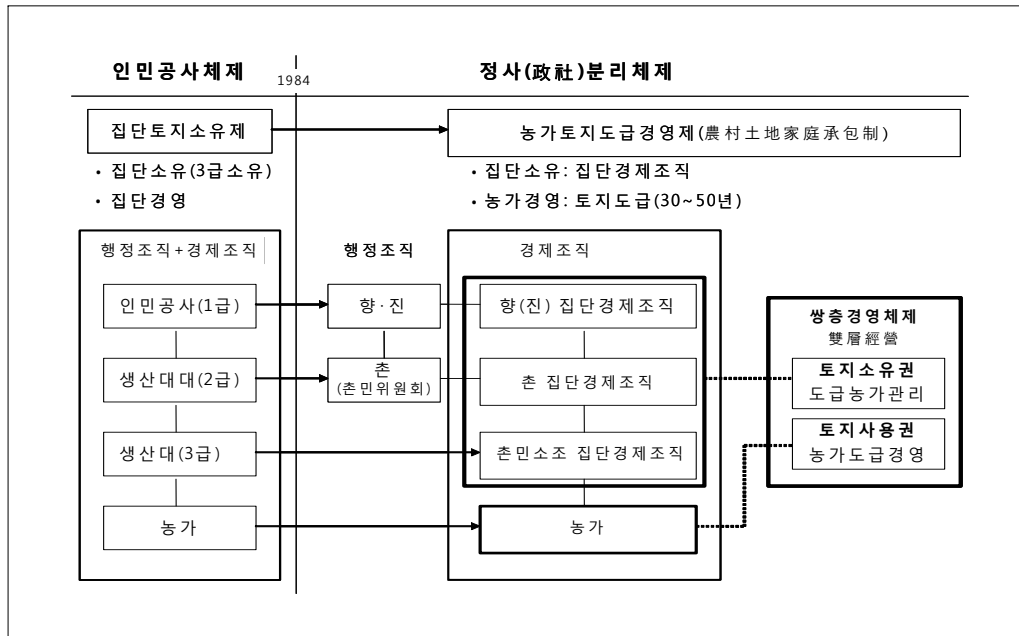
2.1. 토지제도의 불안정성

-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토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토지재산권의 주체와 성질, 권리와 의무, 권리의 행사범위 등을 규정한 각종 법률과 법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국 농촌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등 토지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규로는 《헌법憲法》, 《민법통칙民法通則》,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 《물권법物權法》,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확정 규정確定土地所有權和使用權的若干規定》¹등이 있음.
- 중국의 현행 법률과 법규는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국가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전부 ‘농민집단(農民集團)’ 소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민집단의 표현 형식을 ①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 ②촌 내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 ③향·진 집단경제조직 등 3급으로 구분하고,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를 경영·관리하거나 농민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²
- 이는 인민공사체제에서 존재하였던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의 ‘3급 소유제’가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될 때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현재의 ‘향·진 집단경제조직-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촌 내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의 ‘3급 소유제’ 형태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임(그림 1 참조).

1 국가토지관리국은 1989년 《토지권리 귀속문제 확정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確定土地權屬問題的若干意見》(國土[籍]字第73號)을 발표한 이후 1995년 3월 11일 《토지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확정 규정確定土地所有權和使用權的若干規定》을 새롭게 제정 공포하였음.

2 농촌 토지소유권에 관한 관련 법률의 자세한 규정은 『중국농업동향』 제1권 제4호 P.24 표1 참조.

그림 1.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및 농업경영체제 개념도



주: 필자작성

-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향·진 농민집단 소유 토지는 전부 비농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³ 농민집단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모든 농촌 토지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 또는 촌 내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이 도급수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이것은 결국 국가와 향·진 농민집단은 농촌 토지에 대한 도급수여의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원칙적으로 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 또는 촌 내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이 농촌 토지의 도급수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高飛(2008)⁵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부분 농민들은 자신들이 도급 경영하는 농지의 도급수여자가 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58.5%) 또는 촌 내 집단

3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확정 규정確定土地所有權和使用權的若干規定》(국가토지관리국, 1995, 3.11)

4 《농촌토지도급법》(2002.8.19 제정, 2003.3.1 시행) 제12조.

5 高飛, 2008, “集體土地所有權主體制度運行狀況的實證分析—基於全國10省30縣的調查,” 『中國農村觀察』 2008年第6期(總第84期): 33-43, 2007년 5~8월 동안 전국 10개 성 180개 촌을 대상으로 집단 토지소유권제도 실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임.

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17.7%)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향·진 집단경제조직과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6.3%와 4.7%를 차지하였음.

- 주목할 만한 것은 高飛(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촌 집단소유 토지의 소유권 주체를 국가(41.9%)라고 인식하고 있고, 3급의 촌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위원회), 촌 내 집단경제조직(또는 촌민소조), 향·진 집단경제조직이라는 응답은 각각 29.6%, 6.2%, 3.6%를 차지했음.

- 결국 농촌 토지소유권의 귀속은 법률적으로 3급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3급 주체 간 권리 귀속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국 농촌의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서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은 토지사용권에 속하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포하고 있음.⁶ 그러나 농민들의 토지재산권 행사를 규정한 각종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 내용이 불충분하여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민들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농촌토지 관련 현행 법률 및 법규는 농민이 커다란 제약없이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와 촌 집단이 매우 강력한 토지통제권을 가지고 있음.

-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물권법》은 농지의 농가 도급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가의 가족수가 늘거나 줄어도 농가의 도급 면적은 불변이라는 원칙을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의 가족수 변화에 따라 도급 면적을 조정(재도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현행 법률과 법규는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가격 형성이 불합리하고, 지방정부와 촌 집단이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6 畢寶德 主編. 2001.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335.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기본법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물권법》(2007.3.16 제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농민이 도급 경영하는 농지, 초지, 임지의 사용권, 점유권, 수익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

- 특히 수익권 측면에서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촌 공공사업 실시 등의 이유로 고액의 도급 비용을 부과하거나, 국가가 개발 명목으로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토지재산권이 침해되어 농민들이 토지가치 상승의 실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또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도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2. 토지도급 관련 분쟁의 증가

- 개혁개방 이후 농촌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토지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토지도급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농가토지도급 경영제 운용과정에서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 2008년 전국 농촌의 기층 토지도급 관리부문이 접수한 분쟁 건수가 15만 건에 달함.
- 분쟁의 유형은 크게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관련 분쟁, 토지도급계약 관련 분쟁 및 기타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좀 더 세부적으로는 토지소유권 확정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확정 관련 분쟁, 도급계약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권리 침해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련 분쟁, 도급토지 수용보상비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 집체경제조직 구성원 권익 침해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됨.
- 2004~2006년 동안의 85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孫淑雲·楊春·馮瑞琳(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지도급경영권 관련 분쟁이 55.3%, 토지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24.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개인 간 분쟁이 43.5%, 개인과 집체조직 간 분쟁이 51.8%, 집체조직과 집체조직 간 분쟁이 4.7%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중국 농촌의 토지도급관련 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특징	주요 내용
① 비도급토지 관련분쟁 증가	· 중국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농민들이 새롭게 황폐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현상이 증가하여 토지도급주체가 이러한 토지를 선점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현상이 증가하여 택지, 자류지 등 비도급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징	주요 내용
② 기동지(機動地) ⁷ 관련 분쟁 증가	· 일부 촌 및 촌민소조 집단이 기동지를 집체 수입 증대의 원천으로 삼거나, 토지도급의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간부들이 사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함. · 특히 기동지의 도급은 농가에게 도급주는 방식이 아닌 기타 방식의 도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가도급 보다는 기타방식에 의한 도급과정에서 분쟁이 더욱 많음. · 또한 《농촌토지도급법》은 기동지 면적이 집체경제조직 경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동지 면적을 확대하여 결국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
③ 집단민원성 분쟁 증가	· 촌 집단경제조직(촌민위원회) 또는 촌내 각 집단경제조직(촌민소조) 간부들의 불공정한 토지도급 행위, 상이한 도급비용 기준 적용 등에 맞서 다수의 농민들이 도급 무효 및 재도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④ 지방정부 상대 분쟁 증가	· 일부 농촌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도급비용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동일 토지를 다수에게 도급하고, 또는 전임자가 처리한 도급계약을 무시하고 새롭게 도급계약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의 서명 당사자인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⑤ 황폐지 도급 관련 분쟁 증가	· 식량가격의 상승, 식량직불제의 실시 등으로 토지도급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경작을 포기했던 토지에 대한 농지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스스로 토지유동을 시켰던 농민들이 농지를 회수하거나, 토지도급과정에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농민들이 농지를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촌민소조의 합병과정에서 농민들이 공평한 재도급을 요구하고, 소도시 건설, 도시자본 유치 등으로 수용 토지가 증가하여 농민들 간 토지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농민들 간 토지도급경영권의 획득, 도급토지의 경계 확정, 토지수용 후 토지보상비의 분배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토지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도급수여자 주체의 자격 불명확

- 현행 《농촌토지도급법》은 “촌 내 2개 이상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속하는 농민집단 소유 토지는 촌 내 각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도급을 준다. 촌 집체경제조

⁷ 농민들에게 도급주지 않고 남겨두는 소량의 토지로 토지도급제 운용 과정에서 주로 도급토지의 조정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토지임.

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도급을 주는 경우 촌 내 각 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지가 촌민소조의 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도급과정에서 촌 집체경제조직, 촌내 집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소조가 중복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서로 다른 농민에게 도급주는 경우가 빈번함.

□ 도급계약의 내용 불명확

- 도급계약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주요 조항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계약서 상 도급토지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고 도급면적, 도급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가 어려움.
- 일부의 도급계약은 도급기간이 너무 길고, 면적이 과다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기동지의 도급기간이 50년, 심지어 70년인 경우도 있음.
- 일부 도급계약은 도급농가와 계약에 서명하는 촌 집단경제조직(촌민위원회) 또는 촌내 집단경제조직(촌민소조) 간부가 유착하여 도급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농민이 문맹인 경우 타인이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도 있음.

□ 도급과정의 규범화 미약

- 《농촌토지도급법》 제18조는 “토지도급 방안은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촌민회의의 2/3 이상의 구성원 혹은 2/3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유출 노동력이 많거나 주민 거주가 분산되어 전체 촌민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만 촌민대표자회의를 통해 토론할 수 있음.
- 일부 촌 집체경제조직(촌민위원회) 또는 촌 내 집체경제조직(촌민소조)은 토지를 도급할 때 18세 이상의 전체 촌민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3/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공평 원칙 위배

- 도급수여자가 임의로 도급 관계를 변경하거나 도급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도급비용을 불균등하게 적용하거나 간부와의 친소여부에 따라 도급토지의 질을 달리하는 경우도 빈번함. 일부 도급인이 도급 토지의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며 약탈경영으로 농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존재함.

2.3. 법률제정의 필요성 증대 및 입법 추진

- 1990년대 이후 일부 지역에서 중재 방식으로 토지도급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이래 전국의 23개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법규로 토지도급 경영 관련 분쟁의 중재 규정을 마련하였음.
- 10개 성(자치구, 직할시)⁸ 인민대표대회 또는 성급 정부는 ‘농업도급계약중재방법(農業承包合同仲裁辦法)’, ‘농업도급계약분쟁중재방법(農業承包合同糾紛仲裁辦法)’, ‘농업집체경제도급계약분쟁중재방법(農業集體經濟承包合同糾紛仲裁辦法)’, ‘농업도급계약중재규정(農業承包合同仲裁規定)’, ‘농업도급계약중재잠행규정(農業承包合同仲裁暫行規定)’ 등을 제정하였음.
- 1994년 8월 제정된 《중재법仲裁法》(1995.9.1 시행) 제77조는 “집체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 분쟁의 중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고 규정하여 토지도급관련 분쟁의 조정이 《중재법》의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003년 정식 시행된 《농촌토지도급법》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확인시켜 준 최초의 법률로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법률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였음.
- 《농촌토지도급법》은 토지도급 관련 분쟁의 발생 요건, 해결 방법 및 절차 등 분쟁의 해결과 책임에 관한 사항(제4장(제51조~제61조) 쟁의의 해결과 법률책임)도 규정하여 국가법률 형식에 의한 분쟁 해결의 틀을 마련하였음.
- 법률 제54조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도급자의 행위를 8가지로 명시하고, 제51조에서는 협상, 조정, 중재 등 3가지의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음.⁹

8 북경시, 하남성, 허북성, 요녕성, 산둥성, 안휘성, 호북성, 감숙성, 광둥성, 영하회족자치구

9 제54조는 ①도급자의 생산경영자주권 간섭, ②도급 토지의 회수 및 조정, ③도급자의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을 강제하거나 저해, ④도급자로 하여금 토지도급경영권의 포기 또는 변경을 강제하여 토지도급경영권 임의 유동, ⑤구량전(口糧田)과 책임전(責任田)을 구분하고 도급 토지를 회수하여 입찰도급 실시, ⑥도급 토지를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에 이요, ⑦부녀자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토지도급경영권의 탈취 및 침해, ⑧기타 토지도급경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고 원래 물건을 반환하며, 원상을 회복하고, 방해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하는 등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제51조는 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쌍방이 합의하여, 촌민위원회와 향진 인민정부의 조

- 그러나 중재 신청 또는 고소, 중재기구 설치 및 권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중재 절차 및 판결 등에 대한 규정도 없음.
- 농업부는 2004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분쟁중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시범지역의 중재시설 건설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15일자로 《농촌 토지도급 분쟁중재 시범지역 시설건설항목 조직실시 방법農村土地承包糾紛仲裁試點設施建設項目組織實施辦法》(農經發[2005]22호)을 공포하였음.
- 2008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224개 현(시, 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6월 말 현재 농업부가 지정 운영하는 88개 분쟁중재 시범지역의 토지도급 분쟁 누적 건수는 8,917건으로 이중 토지도급 관련 4,635건, 토지유동 관련 3,241건, 토지보상비 관련 759건임.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된 8,085건 중 조정은 6,264건, 중재는 1,736건을 차지하였음.
- 최고인민법원은 2005년 3월 29일 《농촌토지도급 분쟁 안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關於審理涉及農村土地承包糾紛案件適用法律問題的解釋》(2005.9.1 시행, 法釋[2005]5호)을 공포하고 토지도급 분쟁의 유형과 소송 주체,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해석》은 농촌 토지도급 관련 민사분쟁을 도급계약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권리 침해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련 분쟁, 도급토지 수용보상비 분배 관련 분쟁, 토지도급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인민법원은 이에 속하는 분쟁 사안을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음.
- 중국 정부는 점차 증가하는 토지도급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전문 법률이 없어 지역적으로 중재기구의 설치, 중재업무의 절차, 중재 판결의 집행 등 방면에서 규범화 되고 통일적이지 못해 전문 법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정을 통해 해결하고,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나 조정을 원하지 않고, 합의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중국 농업부는 《농촌토지도급법》 시행 이후 토지도급 분쟁 조정 및 중재 관리 방법 제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문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6월 《농촌토지도급 분쟁중재법(의견수렴고)農村土地承包糾紛仲裁法(征求意见稿)》을 마련하여 이를 사회에 공포하고 6월 3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였음.
- 《농촌토지도급분쟁중재법(의견수렴고)》는 1장 총칙, 2장 중재위원회, 3장 일반중재 절차, 4장 간소화 절차, 5장 부칙 등 총 72조로 구성되었음.
- 이에 앞서 2005년 6월 호남성 창샤(長沙)에서 개최된 ‘전국 농촌토지 도급관리와 중재업무 좌담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업무위원회 민법실 자오샹양(趙向陽) 처장이 《농촌토지도급분쟁중재조례(토론고)農村土地承包糾紛仲裁條例(討論稿)》를 발표하였음. 《조례(토론고)》는 1장 총칙, 2장 중재위원회, 3장 관할 및 수리, 4장 중재법정, 5장 개정과 판결, 6장 법률 책임, 7장 부칙 등 총 59조로 구성되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법제화 노력을 토대로 2008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1월 19일 개최된 제36차 상무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이하 《분쟁중재법(초안)》이라 칭함)을 토론을 거쳐 통과시키고,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이 제정되었음.

3. 법률의 주요 내용

3.1. 법률의 적용 범위

- 법률은 《농촌토지도급법》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토지도급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농촌토지도급법》 제51조는 당사자가 토지도급경영 관련 분쟁의 합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당사자는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2조는 당사자가 중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도록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판결이 즉각적으로 법

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음.

- 법률은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을 토대로 농촌토지 도급 관련 분쟁의 유형을 모두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법률을 적용하여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음. 분쟁의 유형은 《분쟁중재법(초안)》에 비해 토지도급 계약 관계 및 토지유동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분쟁중재법(초안)》 제2조	《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① 토지도급관계의 확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② 토지도급 계약의 이행, 변경, 해지 및 종결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③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④ 도급토지의 회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⑤ 토지도급경영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⑥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농촌토지도급 경영 관련 분쟁	① 토지도급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결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② 토지도급경영권의 전환도급(轉包), 임대(出租), 교환(互換), 양도(轉讓), 주식전환(入股) 등 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③ 도급토지의 회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④ 토지도급경영권의 확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⑤ 토지도급경영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⑥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농촌토지도급 경영 관련 분쟁

- 법률은 집체소유 토지의 수용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정재심의 또는 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음.(제2조)
- 이 조항은 《분쟁중재법(초안)》에는 없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포함되었음. 법률 심의 과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농촌위원회, 국무원 법제반, 농업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분쟁의 종류를 2가지로 구분하였음.
- 첫째, 공공이익을 위한 집단소유 토지의 수용 및 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것으로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정재심의 또는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음.
- 둘째, 집체경제조직 내부에서 토지보상비의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농업부는 중재방식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각 지역별로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재처리의 범위에 넣지 말 것을 제안하였음.

3.2. 분쟁의 조정

- 《분쟁중재법(초안)》에서는 조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분쟁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정(調解)을 한 개의 장(제2장)으로 신설하였음.
- 법률은 분쟁의 처리 과정에서 촌민위원회와 향·진 인민정부의 조정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당사자를 도와 합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돕도록 규정하였음.(제7조)
 - 또한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8조),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촌민위원회와 향·진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제10조)
 - 중재패널(중재법정)도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드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 즉시 판결하도록 하였음.(제11조)

3.3. 분쟁 중재위원회와 중재위원

- 법률은 중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재위원회와 중재위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첫째,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칭함)의 설립과 구성,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법률은 분쟁 해결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현(縣), 시(市) 및 시 직할의 구(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제12조)
 - 《분쟁중재법(초안)》은 현급 인민정부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현 이외에 시(市) 및 시 직할의 구(區)에도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음.
 - 법률은 해당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 대표, 관련 인민단체 대표, 농촌집체경제조직 대표, 농민대표 및 법률, 경제 등 관련 전문가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중 농민대표와 전문가의 수가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제13조) 《분쟁중재법(초안)》과 비교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대표가 새롭게 중재위원에 포함되었음.

- 법률은 중재위원의 임명 및 해임, 중재신청의 수리, 중재활동의 감독을 중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본 법률에 의거하여 규약(章程)을 제정하도록 명시하였음.(제14조)
- 둘째, 해당 인민정부와 중재위원회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법률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농촌토지 도급경영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인민정부의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과 유관 부문이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분쟁 조정 조직 및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제4조)
 - 법률은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해당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 중재업무의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보장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제52조)
 - 법률 부칙에서는 국무원의 농업 및 임업행정 주관부문이 본 법률에 의거하여 분쟁 중재 규칙과 중재위원회의 시범 규약을 공동 제정하도록 명시하였음.(제51조)
- 셋째, 법률은 중재위원의 자격 조건 및 관리 제도를 명시하였음.
 - 법률은 중재위원회가 공명정대한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임명하되, 농촌토지도급 관리업무 및 법률 관련 업무 또는 민사 조정업무에 만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촌토지도급 관련 법률 및 국가 정책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주민으로 중재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음.(제15조)
 - 법률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농촌토지도급법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제16조) 다만 《분쟁중재법(초안)》이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데 비해 다소 규정을 완화하였음.
 - 중재위원회와 별도로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은 반드시 중재위원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중재위원에 대한 교육 훈련 업무의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음.(제16조)
 - 법률은 중재위원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위법 판결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하고,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제17조)

3.4. 중재 신청과 처리

- 법률은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중재와 소송의 관계를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중재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였음. 첫째, 중재 신청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법률은 중재가 속지관할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인이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명확한 피신청인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중재 요구와 사실, 이유가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업무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로 분쟁 중재 신청 조건을 제한하였음.(제20조)
 - 법률은 중재 신청의 시효를 2년으로 명시하고(제18조), 중재 신청은 분쟁이 발생한 토지 소재지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신청인이 검토 후 서명 및 날인한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제21조)
 - 법률은 분쟁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분쟁의 당사자로 하되, 농가도급의 경우 농가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중 일방이 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또한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자의 자격으로 중재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9조)
- 둘째, 중재 신청 수리 절차를 규범화하였음.
 - 법률은 중재위원회가 5 근무일 이내에 수리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수리된 사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음.(제23조)
 - 법률은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수리한 분쟁, 유효 판결, 재정(裁定), 재결(裁決) 및 행정처리 결정이 이루어진 분쟁, 기타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22조)
- 셋째, 통지 및 답변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수리통지서, 중재규칙 및 중재위원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제23조), 피신청인에게도 신청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수리통지서,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 규칙 및 중재위원 명단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음.(제24조)

- 만약 중재위원회가 수리 불가 혹은 중재 절차 종결을 결정한 경우 신청일 혹은 중재 절차 종료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음.(제23조)
- 법률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되, 서면 답변이 어려운 경우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피신청인이 검토 후 서명, 날인한 경우 구두 답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제25조)

3.5. 중재패널의 구성 및 회피

- 법률은 중재패널(중재법정)을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석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가운데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2명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위원 가운데 선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당사자가 패널 위원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중재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7조)
- 중재위원회는 중재패널이 구성된 후 2 근무일 이내에 구성 상황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제27조)
- 단,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하며 쟁의가 크지 않은 분쟁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1명의 중재위원이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재위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되, 당사자가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7조)
- 중재패널에 대한 회피 요건을 명시하였음.
 - 법률은 중재패널이 ①해당 사안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②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③혹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④사적으로 해당 사안의 당사자, 대리인을 접촉했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접대에 응하고 선물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중재패널 개정 전에 이유를 명시하여 중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제28조)
 - 법률은 중재위원회가 중재 회피 신청에 대해 즉시 결정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음. 또한 중재위원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음.(제29조)

3.6. 중재패널 개정과 판결

- 법률은 공개재판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기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제30조)
 - 재판은 분쟁 관련토지의 소재지인 항·진 또는 촌에서 진행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0조)
 - 중재패널은 재판 개시 5 근무일 이전에 재판 시간, 장소를 확정하여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 시간과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제31조)
- 법률은 중재패널의 증거 수집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법률은 중재패널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8조)
 - 또한 중재패널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시 중재패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9조)
- 법률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법률은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의견 발표, 사실과 이유 진술, 증거 제공, 대질, 변론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음.(제36조)
 - 법률은 분쟁과 관련된 증거를 당사자 일방의 집체경제조직이 장악하고 있을 경우, 집체경제조직은 관련된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토록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의 불리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였음.(제37조)
 - 법률은 중재패널이 재판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중재위원, 기록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여자가 서명 및 날인토록 하고,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들이 중재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여길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음.(제43조)
 - 중재패널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여 판결 후 판결서를 작성하되 소수 중재위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4조)

- 법률은 판결 시한과 절차, 판결서 수록 내용을 규범화하였음.
 - 법률은 안건 수리 후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중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단, 안건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되 연장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47조)
 - 법률은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기한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음.(제48조)
 - 법률은 또한 당사자 일방이 효력이 발생한 조정합의서, 재결서, 판결서의 판결 내용을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거주지 및 재산 소유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제49조)

4. 시사점

- 후진타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삼농문제의 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특히 시장경제가 진전된 가운데 자산에 해당하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행사와 관련한 각종 제약으로 농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음.
-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을 위해 2003년 《농촌토지도급법》을 제정 시행한데 이어 국가법률 형식으로 토지 재산권 관련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안정적 제도 운용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분쟁중재법(초안)》에서 밝히고 있듯 중국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법률의 필요성	주요 기대 효과
① 농가토지도급경영 제도의 안정	· 농가토지도급경영에 기초하는 쌍층경영제도는 중국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임. · 법률 제정으로 토지도급 관련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② 농민의 토지도급 경영권 권리보장	· 입법을 통해 토지도급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며, 농민들이 도급받은 토지의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③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	· 도시화의 진전, 국가의 농업지원 정책 확대 실시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제고되었으며 이와 함께 토지도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여 농촌사회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 초래. · 법률 제정으로 토지도급 관련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분쟁해결 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촌사회의 모순 및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④ 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의 법제화	· 《중재법》은 농업 집체경제조직 내부의 토지도급계약 분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촌토지도급법》은 토지도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존재함. · 각지에서 실제로 중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재기구 설치기준이 상이하고, 업무 추진 절차도 규범화되어 있지 않으며, 판결 및 집행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 존재. · 법률의 제정을 통해 토지도급 관련 분쟁 해결의 규범화 및 법제화 완성.

○ 《분쟁조정중재법》의 제정 과정은 점진적 개혁이라는 중국식 개혁의 특징을 반영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실험과정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가 법률 형식으로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약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2003년에 이르러서야 《농촌토지도급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법률 형식으로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분쟁조정중재법》은 《농촌토지도급법》에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원칙적인 규정이

제시된 후 불과 6년여 만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재산권 분쟁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全文及說明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

《農村土地承包法》

“人大常委會首次審議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 中國人大網(www.npc.gov.cn)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再次提請審議”. 中國人大網(www.npc.gov.cn)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進入三審”. 中國人大網(www.npc.gov.cn)

“有中國特色的仲裁法制度有望確立”. 中國人大網(www.npc.gov.cn)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草案)增加進一步強化調解”. 中國人大網(www.npc.gov.cn)

《確定土地所有權和使用權的若干規定》

高飛: “集體土地所有權主體制度運行狀況的實證分析—基於全國10省30縣的調查.” 『中國農村觀察』2008年第6期(總第84期): 33-43. 2008年.

畢寶德: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335. 2001年.

孫淑雲·楊春·馮瑞琳: “農村土地承包糾紛案例的分析.” 『河北工程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年第4期.

중국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현황과 과제

1. 서론

- 2007년 9월 5일, 중국위생부 천주(陳竺) 부장(장관)은 국무원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부터 신농촌합작의료제도가 시범실시 단계에서 실시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2007년 신농촌합작의료제도 실시 현(시, 구)은 전국 현(시, 구) 전체의 80%이고 2008년에서 전국 대부분을 포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 기준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 구)은 2429곳으로 전국 전체 현(시, 구)의 84.87%를 차지하며, 합작의료 참가인구는 7.2억 명으로 전국농촌인구의 82.83%를 차지함. 전국적으로 신농촌합작의료제도의 시행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효과도 뚜렷해 대다수 농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사회각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09년 상반기 현재 참가 인구는 8.3억 명으로 전체농촌인구의 약 93%에 해당함.
- 그러나 연구자의 실지조사에 따르면, 농촌합작의료제도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농촌합작의료에 입원하는 것만 해당되고 진료는 관여하지 않는 점, 농민 공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범위와 수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중국의 농촌의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농촌합작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작성: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박경철(북경대학 박사과정, kcpark@krei.re.kr)

2. 농촌합작의료의 발전 과정

2.1. 농촌합작의료제도란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촌합작의료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임(간략히 “신농협” 또는 “농의보” 등으로 불림). 이 제도는 이전 농촌합작의료제도의 기본토대 위에 2003년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의 것과 차별을 두기 위해 명칭을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로 칭함.
 - 2003년 1월 16일, 국무원 판공청은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에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마련에 관한 의견(關於建立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的意見)》하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적시함: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며, 농민은 자원해서 참가하며, 개인, 집체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로 큰 병을 계획적으로 치료하는 농민상호의료공제(보험)제도이다.”
- 신형농촌합작의료와 이전 농촌합작의료제도의 차이에 대한 전문가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으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자금출자 부분에 맞춰져있음.
 - 이전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비교해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자금조달을 통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확대하는 것임. 특히 중앙정부가 중서부지구의 시, 구 이외지역 농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할 경우 매년 1인당 평균 10위안(2006년 20위안으로 상향)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하는 농민에게 매년 1인당 평균 10위안 이상을 보조함.
- 이전 합작의료제도의 실패원인은 전체적인 계획 범위가 작고, 자금조달 수준이 낮으며, 보장은 주로 외래진료나 잔병 위주여서 기금의 분산사용을 초래함. 결국 보장도가 낮아 농민들의 큰 병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음.
 -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큰 병 치료 위주로 현금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
 - 또한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는 농촌의료구제제도를 마련해, 민정부(民政部) 등 빈곤구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금을 출원해 빈곤농민이 참가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통해 병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빈곤인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과정

- 신구합작의료제도가 다를지라도 결국 모두 농민, 의료기관, 정부 3자 간 내적 협력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따라서 이들 합작의료제도의 변화과정에서 이들 주체 간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위생부 의정사(醫政司) 전 사장(司長), 중화의원(醫院)관리학회 회장 쟁쯔관(張自寬) 교수는 《중국농촌합작의료변천50년(中國農村合作醫療50年之變遷)》에서 농촌합작의료는 일찍이 항일전쟁시기 산시·간쑤·닝샤(陝西·甘肅·寧夏)지역에서 실시한 보건약사(保健藥社)와 위생합작사(衛生合作社)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 항일전쟁시기 장기간의 봉쇄와 전쟁으로 이들 변경지역에 의료시설과 약이 부족해 위생 상황이 극히 열악해짐. 또한, 장티푸스와 출혈열 등과 같은 전염병이 이들 지역에 유행하게 됨. 따라서 1938년 민간에서 농촌거주민 간 자발적인 합작의료사가 출현함. 1944년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중합작사(당시 상업판매기구)에 기대 합작의료를 실시했으며 위생합작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생겨났음. 본부는 옌안(延安)에 설치함. 자금은 대중합작사와 보건약사의 투자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출자금을 통해 마련되고 정부가 약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민영공조 정부관리의 의료기구임.
- 일부 학자들은 농촌합작의료의가 중화민국 당시 향촌건설운동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함. 그들은 당시의 향촌건설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고 여김.
 - 왜냐하면, 당시에 진료 받는 게 쉽지 않았고 큰 병인 경우는 더욱 더 어려웠기 때문에 농촌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향촌건설의 선구자들도 여러 값진 실험을 실시했음. 그중 꽤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허베이(平)의 “평현실험(定縣實驗)”임.
 - 1932년 당시 열악한 농촌위생상황을 토대로 천즈첸(陳志潛) 박사가 안양추(晏陽初)의 지원 하에 허베이성 평현에서 기층위생조사를 전개함. 이 “평현실험”이 발단이 되어 현을 단위로 하는 중국의 첫 번째 현, 향, 촌 3급보건제도를 마련함.
 -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평현모델”이 여러 이유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를 하나의 실행주체로 통합 및 계획하여 운행한 사례는 이후 농촌합작의료의 기본사상과 실행에 영향을 줌.

- 중국의 농촌합작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합작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탄상관(覃祥官)임. 1966년 8월 10일 탄상관의 노력으로 신중국역사상 첫 번째 농촌합작의료시범소인 러위안공사뚜지아촌대대위생실(樂園公社杜家村大隊衛生室)이 문을 열었기 때문임.
- 그 운영방법은 보면, 농민 개개인이 합작의료비로 1위안을 내면 대대가 다시 집체공익금 중 일인평균 5전을 합작의료기금을 떼어놓음. 고질병으로 항상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민들은 한 번 진료를 볼 때마다 5푼(分: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을 등록비를 내면 약을 무료로 탈 수 있음. 농촌합작의료는 병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고 병이 없으면 조기에 예방하자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해 인민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1968년 하순, 마오 주석은 이 러위안공사(樂園公社) 농촌합작의료에 대해 친필로 “합작의료는 훌륭하다(合作醫療好)”고 쓰고 서면으로 의료위생사업의 중점을 농촌에 두라고 지시함. 이후 농촌합작의료는 전국농촌에서 신속하게 확대되어 합작의료의 전국적 확대를 실현함.
- 농촌합작의료, 맨발의 의사(赤腳醫生), 농촌3급보건망은 중국농촌위생문제를 해결한 “3대법보(三大法寶)”로 불리우며, 개도국농촌위생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식모델”을 만들었음.
- 그러나 빨리 흥하면 빨리 망하듯, 중국에서의 일들은 종종 어떤 개인, 또는 하나의 운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운동이 사라지면 그 사업도 쇠망하게 됨.
- 집체합작화운동의 생산물인 농촌합작의료(중국 전 위생부 장관 첸신중(錢信忠)은 농업합작화운동이 없었으면 농촌의 합작의료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김)는 집체화가 가장 한창일 때 거의 전국에 퍼졌다가 농촌공사의 소실과 집체화의 와해에 따라 합작의료에 대해 국가의 정치상, 이데올로기상, 그리고 재정상의 지원도 부식되어 농촌합작의료는 전국 대부분이 와해됨. 1980년대 초기의 농촌경제체제개혁 이후 많은 지방의 농촌합작의료조직이 신속하게 해체되고 1989년에 이르러 전국의 실시율은 4.80%에 이름.

- 요약하자면, 합작의료는 근 50년의 발전과정 중 20세기 30-40년대의 맹아단계, 50년대의 초기단계, 60-70년대의 발전과 전성단계, 80년대의 해체단계와 90년대 이후의 회복과 발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 중국이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삼농(三農) 문제”는 당과 국가 전체와 관계하는 근본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함. 농민의 의료보장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중류수준의 사회)건설이라는 목표의 실현도 어렵고, 현대화사회의 완전건설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

2.3. 농촌합작의료제도의 발전 형태

- 80년대 이전, 중국농촌합작의료사업의 형식은 통일적, 규범적이었음. 왜냐하면 전국에서 균일하게 社, 隊의 집단체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통일된 기초와 통일된 사회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농촌개혁 이후 농촌경제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겨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옴. 동일한 지역, 심지어 동일한 향, 촌의 발전에도 불균형을 초래해 전국의 통일된 농촌합작의료제도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음.
-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가가 비록 농촌합작의료사업을 재건하고 확대를 주도하지만 통일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이로 인해, 80년대부터 주요 각지에서는 자신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식의 농촌합작의료사업이 형성됨. 그 구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음.
 1. 촌에서 설립하고 촌에서 관리하는 형태(村辦村管型): 즉, 합작의료소를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촌위원회에서 관리함. 그 경비는 촌의 집체경제조직과 해당 촌의 주민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실시대상은 해당 촌 주민에 한정함. 합작의료로 인한 주민의 혜택 범위와 표준은 모두 촌에서 제정함. 이것은 과거중국농촌합작의료의 주요 형식임. 예를 들어, 1985년 상하이시 교외 현에서 합작의료를 실행하는 3037개 촌 가운데 이러한 형태는 83.5%를 차지함.
 2. 촌에서 개설하고 향에서 관리하는 형(村辦鄉管型): 이러한 종류의 형식 하에서 합작의료는 촌위원회에서 계획하여 건립하고 합작의료 경비는 집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 부담함. 그러나 혜택범위와 표준은 촌, 향과 협의해 제정함. 경비는 위생원(衛生院) 혹은 합작의료관리위원회서 통일적으로 관리함. 촌단위로 정산해 경비가 초과 지불 되었을 시 각 촌에서 부담함.
3. 향촌연합운영형(鄉村聯辦型): 이러한 형식 하에서 합작의료소는 향, 촌에서 건립하고, 합작의료 경비는 촌 집체와 개인이 공동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향급 정부에서 일부분을 보조함. 경비는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향과 촌이 각각 정산하며, 이체와 정산은 향과 촌이 협의해 결정하며, 혜택범위와 표준은 향정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함. 예를 들어, 1985년 상하이시 근교 현 농촌합작의료 가운데 약 13%가 이런 형식에 속함.
 4. 향에서 개설하고 향에서 관리하는 형(鄉辦鄉管型): 이러한 형식 하에서 합작의료소는 향급 정부가 책임지고 건립하며, 합작의료 경비는 향, 촌,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함. 향이 통일 관리하고 통일 계산하며 혜택범위와 표준도 향이 통일적으로 제정함.
 5. 다자참여형(多方參與型): 이러한 형식으로는 향과 촌급 농촌기층정부 이외 다른 참여형태의 농촌합작의료소 건립이 있음. 예를 들어, 상하이시 진산현(金山縣), 후베이(湖北) 지엔리현(監利縣) 등에서는 그 지역 정부와 주민의 협력 하에 초보단계의 합작의료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함. 이후 진산현의 사례를 통해 여러 현에서 “합작의료건강보험관리위원회”가 조직됨. 여기에는 주로 현 위생국, 현 인민보험지사와 현 정부가 참여함. 이 위원회에서 의료보건카드를 배포하면 참여자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진료를 받거나 상급진료를 위해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진료 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용을 보상받음.
 6. 중대질병 통합 계획형(大病統籌型): 이 형식 하에서 합작의료는 단지 “중대질병” 표준의 농촌사회의료문제만 책임짐. 일반 질병은 합작의료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예를 들어, 장쑤(江蘇) 까오여우시(高郵市)에서는 중대질병합작의료제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매 개인은 매년 약 1.5위안의 통합계획금을 내면, 향진정부에서 잘 저축했다가 주민이 일차 의약비로 50~100위안을 지출할 경우에는 20%를, 일차 의약비로 100~500위안을 지출할 경우에는 30~40%를 환급해주며 이런 식으로 누적해 가장 높게는 약 70%를 환급받을 수 있음. 이 시에서는 32개 농촌향진의 70여만 농민이 모두 자원해 이 중대질병합작의료에 참가했다고 함.
 7. 혼합보장형(混合保障型): 어떤 지역에서는 종합성 농촌기층보장제도를 만들었는데

합작의료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함. 예를 들어, 산시성(山西省) 루청현(潞城縣) 스쿠향(石窟鄉)과 후난성(湖南省) 린상현(臨湘縣) 위안탄진(源潭鎮) 창위안촌(長源村) 등에서 만든 것이 이 향촌기층사회보장제도로 합작의료보장과 양로보장 등이 모두 그 내용 중에 포함됨. 모두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형태의 농촌합작의료제도는 모두 발전단계에 있으며, 촌 중심으로 실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향(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게 좋은지, 한 가지 항목만 실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종합보장이 좋은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음. 그러나 2003년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가 실시되면서 실행 주체는 대부분 현 단위로 통합되었음.

3.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운행 방법

3.1.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위치

- 일반적으로 말해, 최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권위있는 정의는 《意見》에서 정의한, 즉,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며, 농민은 자원해서 참가하며, 개인, 집체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로 큰 병을 계획적으로 치료하는 농민상호의료공제(보험)제도이다.”임.
-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강제성 사회의료보험이 신형농촌합작医료를 대체해 미래 농촌사회의료보장의 중요형식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즉, 비록 합작의료는 현재 여전히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최종발전추세는 전국민건강보장체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인식함.
- 그러나 중국농촌은 여전히 통일된 농촌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이 때문에 이전 합작의료의 토대위에 의료보험의 유익한 부분을 흡수하고 거기에 접목하여 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키자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가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해야 함.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합작의료를 전국민건강의료보장체제로 자리매김해야 농민건강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여김. 문제는 합작의료제도가 단순히 농민들에게 돈을 받거나 정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가.”임.

3.2.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운영방식

-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실행하는 현급 정부는 자금을 모금해야 함. 하지만 기층간부들은 농민들로부터의 자금 모금이 쉽지 않다고 토로함.
 - 농가는 가정단위로 합작의료에 참가함. 그 이유는 합작의료에 노약자, 병약자만 참가하는 역선택을 막아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함임.
- 농민들도 농촌합작의료의 회복시기에 다시 실패에 다시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더욱이 “농민이 자원해서 참여한다.”는 원칙으로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자금모금 비용이 더 높아짐.
 - 게다가 “倒籌資”체제, 즉, 합작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이 일정비율에 도달하고 참가비를 납부해야지만 각급재정부서에 배합자금을 지급함. 이처럼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참여케 하느냐에 달려있음.
- 농촌합작의료기금은 합작의료경영기관(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름. 어떤 지역은 “合療辦”, 또는 “經辦中心”으로 불림) 재정부문에서 개설한 전문통장에 맡김.
 - 구체적으로 은행기관에서 처리하고, 기금의 사용은 불관여(封閉)원칙, 즉 은행이 기금은 관리하지만 계좌에는 관여하지 않고, 합작의료관리중심은 계좌는 관리하나 기금에는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기금을 사용하나 기금에는 관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합작의료기금 불관여원칙을 실현함.
- 구체적으로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두 종류가 있음.
 - 하나는 의료기관 전도금임. 즉, 합작의료에 참여한 농민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병을 치료한 후 이 병원에서 먼저 정산을 하면(이를 “결산직통차”라고 함) 월말이나

그 다음 월초에 병원은 결산서를 가지고 합작의료 재무부서에 가서 자금이체를 신청함. 합작의료 재무부서는 심사 후 보고하고 병원의 개설은행통장에 자금을 이체함.

- 다른 하나는 합작의료 재무부서가 지정 의료기관의 이전 자료에 근거하여 대략 매월 농민의 의료비용정산현황을 계산해 미리 지정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월말에 정산해, 자금이 남을 경우 다음 달 이체금액에서 상쇄하고, 모자랄 경우 다음 달 이체금액 시 보충함.

3.3.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운영 현황

가. 자금조달수준의 향상

-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가 시범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2729개 현(시, 구)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수준을 보면, 중서부지역수준은 2003년 일인당평균 30위안에서 2006년 50위안으로, 2008년에는 100위안으로 높아졌음.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전까지 150위안으로 올릴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그중, 정부재정보조는 20위안에서 40위안, 80위안, 그리고 120위안으로 높일 계획임. 동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비교적 낮으나 지방정부의 재정보조와 농민개인, 집체에서의 납부로 자금조달수준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참여농가의 증가

-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참여율을 보면, 2005년 76.7%에서, 2006년 84.6%, 2007년 90.6%, 2008년 91.5%로 높아짐. 장기간 외지 유동농민을 제외하면 대략 모든 농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된 초기에는 자원참가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선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재정보조가 자금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농민들을 적극 흡수했고, 둘째, 정부의 유관부문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한편, 비

교적 규범적인 관리기구와 제도를 마련했으며, 셋째, 농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날로 증가하는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임.

다. 농민의 실제 보상수준의 증가

- 입원의 경우를 보면, 2004년에서 2008년 실제보상비는 각각 24.7%, 23.4%, 27.8%, 30.0%, 그리고 38.1%임.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자금조달수준의 향상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형농촌합작의료비용이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6년에서 2007년, 참여농민의 일인당평균 입원비는 27775위안에서 2588위안으로 낮아짐.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입원환자의 의료비용은 4669위안에서 4964위안으로 상승함. 명의가격으로 계산하면 6.3% 올랐음.
- 2008년 참여농민의 평균입원비용은 2799위안으로 2007년보다 8.15%가 오름. 그러나 2008년 전국입원환자의 평균비용은 5447위안으로 2007년보다 9.5%가 오름.
- 2008년 참여농민이 현, 향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비율은 83.38%임. 그러나 전국입원환자의 2급과 1급병원 입원/향진위생병원 입원 비율은 대략 66%임. 이로써 참여농민의 대부분은 지방의 기층의료기관에서 입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동시에 참여농민이 받는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5099입원환자, 488242.5만 진료환자, 323.16만 병원분만 여성이 보상을 받았고, 336.49만 명이 큰 액수의 진료보상을 받음. 입원혜택도 2006년 4.35%에서 2008년 6.27%로 상승함.

라. 큰 병과 작은 병을 포괄한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 농촌합작의료의 실시 초기에는 자금조달수준이 매우 낮아 참여농민의 중대질병의 위험을 분담을 강조해서 중대질병 위주로 보상을 실시함. 그러나 자금조달수준이 높아지면서 큰 병 위주에서 점점 작은 병도 포괄하는 보상방식으로 전환됨.
- 예를 들어, 2008년 중대질병 통합계획 실시 현(시, 구)은 2.39%만 존재하나, 입원과 외래진료를 다 보상해주는 비율은 97.61%에 이르며, 외래진료 보상에 사용한 지출도 8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부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빈곤인구 1억5712만 명이 신형농촌합작의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민정부와 위생부가 공조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을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첫째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합작의료에 참여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합작의료 참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의료비용에 대한 공제비율을 높여 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현재 이들 빈곤인구의 의료비용 보상수준은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4.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현황

4.1. 큰 병만 관여하고 작은 병은 관여하지 않는 문제

- 현재 농촌합작의료문제 중 현안 중의 하나가 정산문제임. 많은 농민들은 합작의료가 큰 병으로 입원할 때만 유효하고 작은 병으로 간단한 치료받을 경우에는 무효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이러한 근거는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정의 가운데 “중대질병 통합계획치료(大病統籌)”의 원칙 때문임.
- 이러한 원칙은 중국농촌의료보험의 하나의 모델임. 제한적 조건으로 현재 농촌합작 의료는 현금 통합 계획만 가능함.
- 물론 지역에 따라 그 실행방법이 다르지만 그 제도는 모두 “작은 병은 각자가 치료하고, 큰 병은 통합 계획으로 치료한다.”는 원칙으로 지불기준선을 규정함. 지불기준선은 각 지역의 경제부담능력과 의료대우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범위는 대략 몇 백 위안에서 몇 천 위안임. 지불기준선 이하의 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지불기준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불함.
- 중앙정부가 이러한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농민주민이 병으로 인해 빈곤해 지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
- 다시 말해, 농촌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대다수 농민은 간단한 진료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그러나 농민들은 합작의료에 가입하면 진료비를 대부분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가입을 하지만 작은 병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이는 지방정부에서 자금모금을 위해 합작의료를 홍보할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 농민들의 오해와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고 있음.

- 상술하였듯 현재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질병의 경중에 따른 보상비율의 다른 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4.2. 지불기준선 설정 문제

- 지불기준선은 속칭 “문턱선”이라고 불림. 이것은 정산자격 취득문제와 관련함. 이 지불기준선의 의미는 이 선을 초과한 부분이라야 정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지불기준선 이하의 부분은 농민 개인이 부담하며, 지불기준선을 초과한 부분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보상을 받음.
- 지불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진료를 받는 농민들은 자신의 의료기관의 등급을 합당하게 선택함. 즉, 환자를 합리적으로 분류하게 됨.
- 예를 들어, 호흡기전염병환자는 현금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향진 위생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후자는 지불기준선이 비교적 낮은데다 같은 상황에서 정산비율이 높아 경제수입이 비교적 낮은 가정에 합당함. 사실, 지불기준선을 설정한 것은 유한한 합작의료자금 압력이 중요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작은 병은 스스로 해결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지불기준선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는데 관련 조사에 따르면 향진의료기관은 50위안, 현금 의료기관은 200위안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

4.3. 농민공의 의료비용 정산 문제

- 현재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향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근무지에서

치료받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형농촌합작의료가 농민공의 진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음.

- 위생부는 2010년 신형합작의료제도가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으로는 합작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화로 더 많은 농민을 도시가 흡수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점점 더 방대하게 증가하는 농민공 집단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집단임.

○ 농촌합작의료는 현재 현금 통합계획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현의 이익을 우선 고려함.

- 즉, 기금을 해당 현 의료기관에 한정해 지원하고 환자도 해당 현으로 한정함.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은 외지에 나가 일하는 농민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여김.

○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은 외지에 있는 농민공의 의료비용 정산문제에 대해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음.

- 농민공이 해당 현금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관련 비용 영수증을 해당 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지불기준선은 상대적으로 높고 정산비율을 약간 낮음. 따라서 외지 농민공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반드시 가족에게 부탁해 해당지역 합작의료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한 다음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료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도시에도 농민공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함. 농민공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면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현재 농촌합작의료제도는 발전단계에 있음. 도시의료보장과 비교하면 그 운행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보상비율도 비교적 낮음. 그러나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농민의 의료문제, 나아가 병으로 인한 농민의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4. 의료비용 정산문제에 관한 최근 개선 내용

- 2009년 6월 29일 위생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정산에 관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국농민들이 해당 성 내에서 진찰받고 즉시 정산할 수 있게 됨.
 - 2009년 1분기까지 전국에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인수는 8.3억 명에 달함. 목전 장시(江西), 지린(吉林)성 등에서는 이미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농민들은 성 내에서 진찰을 받고 바로 정산하고 있음.
 - 위생부의 요구에 따라 2009년 말 전까지 각 성, 구, 시에서는 성시급의 신형농촌합작의료기구의 신속결산정산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함. 2010년부터 각각 1~2개의 성급과 시급 신형농촌합작의료 거점의료기구의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3년 내에 성을 단위로 농민이 주문하면 신속하게 결산 및 정산하도록 함.
- 위생부의 농촌위생관리사 부사장(副司長) 니에춘레이(聶春雷)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의 83.4%는 현 내에서 진료를 받고 16.6%는 현 외에서 진료를 받음. 최근 현 내에서 진료를 받는 농민은 즉시 결산 및 정산을 할 수 있고, 현 외에서 병을 보면 현으로 돌아와야 정산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들이 성급과 시급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퇴원 시 자기부담분만 지불 및 정산하면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관과 농민소재 신형농촌합작의료기구가 협의해 결산함. 이렇게 하면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유리하고 성, 시급의 신형합작의료 지정 의료기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며 가짜 영수증으로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데 유리하게 된다고 함.
 - 위생부에서는 각 성, 구, 시에서 성내의 통일된 총괄보상방안을 제정하여 동급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최저지불선, 보상비례, 최대지불선의 실시를 요구함. 각 성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의약품목록과 진료항목의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목록 외로 사용하는 약비용 비례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위생부에서는 또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서비스 공약, 의료비용, 약품가격의 “세가지 공개”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환자의 예납금액을 낮추어 주고 합리적으로 검사하고 합리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치료하며 합

리적으로 비용을 수납할 것을 요구함. 지정 의료기관의 엄격한 진입과 퇴출시스템을 마련해 심사에 합격되지 않으면 지정자격을 취소할 것을 권고함.

5. 결론 및 남은 과제

- 중국 농촌의료개혁의 핵심 제도 중의 하나가 농촌합작의료제도임. 이 제도는 20세기 초부터 촌 단위, 혹은 현 단위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지방자치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질병발생 시 상부상조하는 공제제도였음.
- 그러나 사회주의 집단체제에서 이 제도가 더욱 발전을 거듭하다 집단체제가 해체된 이후 농촌합작의료제도도 급속한 해체 상황을 맞게 되어 중국농민들의 의료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정부는 기존 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2003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함. 제도적으로는 기존 촌 단위, 현 단위 등으로 나뉘어 있는 권역을 대부분 현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재정적으로는 농민에 대한 평균보조금 수준을 높이고, 진료 후 진찰비용의 보상도 높여나감.
-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위생부,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5개 부문이 연합해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의견(關於鞏固和發展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的意見)》을 발표하고 이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공표함. 최근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다른 지역 진료 시 발생하는 복잡한 의료비 정산문제를 간소화하고 보상(환급)비용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의료 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은 일단 중대질병이 발생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이는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소강사회 및 화합사회(和諧社會) 조성, 3농문제 해결,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농촌합작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제고, 의료서비스의 제고, 의료규범의 표준화, 관리담당자의 자질 제고, 정산절차의 간소화, 정책목표의 설정 및 실행, 빈곤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음.

[참고자료]

毛正中, 新型農村合作醫療的發展狀況與挑戰, 〈衛生經濟研究〉, 2009(6).

張增國, 解讀新型農村合作醫療, 光明網, 2007. 12. 12.

人民日報(2009. 6. 30)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96413.htm>)

衛生部 新型農村合作醫療研究中心 (<http://ccms.org.cn/index.asp>)

新型農村醫療合作網 (<http://www.cncms.org.cn>)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wfb/2009-07/13/content_1363939.htm)

농촌노동력 이전과 농민공 문제

- 농민공은 중국 특유의 명사임. 특히 이들은 농업농촌에서 이전해 나왔으나 아직 진정한 정식노동자도 도시주민의 노동자도 되지 못한 집단으로 지칭됨. 이 용어의 출현은 중국의 시장경제가 초보적 성장을 이룩했으나 인구관리체계의 개선은 철저하지 못했음을 나타냄.
- 시장경제국가에서 농촌노동력의 이전은 사회경제구조 변화의 자발적 과정에 상응되나 중국의 농촌노동력 이전 과정은 비교적 독특함.
 - 이러한 독특성의 하나는 농촌노동력의 이전이 공업화의 초보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른 하나는 대규모 철세식 이전이 중국농촌노동력 이전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임.
- 농민공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음. 광의의 농민공은 두 가지 집단을 포괄하는데, 하나는 현지에서 비농산업에 종사는 농촌노동력이고, 다른 하나는 외지에 나가 일하는 농촌노동력집단을 가리킴.
 - 중국의 정책성 문건에서 사용하는 농민공은 광의의 개념이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집단은 외지의 농민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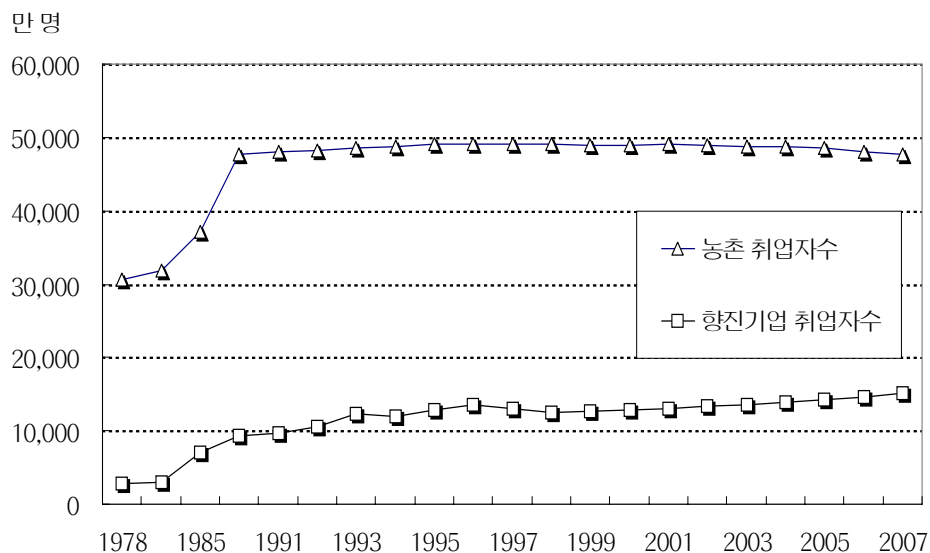
1. 농촌노동력 이전 과정과 현황

1.1. 개혁 이후 현황

* 2009년 4월 28일 본원 중국사무소에서 개최한 제2회 한중농업포럼 주제발표(趙長保,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주임)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번역, 정리한 것임.

- 1978년 농촌개혁의 시작으로 농업생산경영에서 농가의 주체적 지위를 확정해 농민의 생산적극성이 높아져, 원래 저효율의 농업노동력 잉여문제가 나타났음.
- 농촌개혁으로 인민공사 관리체제를 폐지했고, 농민의 직업신분제한이 완화됐음. 또한, 농업잉여노동력이 비농산업으로 이전하는 조건을 만들었음. 이전과정을 보면, 개혁 이후 농촌노동력의 이전은 대략 세 단계를 거쳤음.
- 첫 번째는 개혁초기 농촌노동력의 경종업에서 임목어업부문으로의 이전으로 이것이 농업잉여노동력 이전의 발단이 됨.
- 농업생산효율의 증대로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함. 농산물 수급관계의 변화로 국가는 농민이 경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농업 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민들도 다양한 경영을 적극 발전시키기 시작해 농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였음.
- 1978년 임목어업생산량의 농업총생산량 비중은 17.6%였으나 1985년에는 30.8%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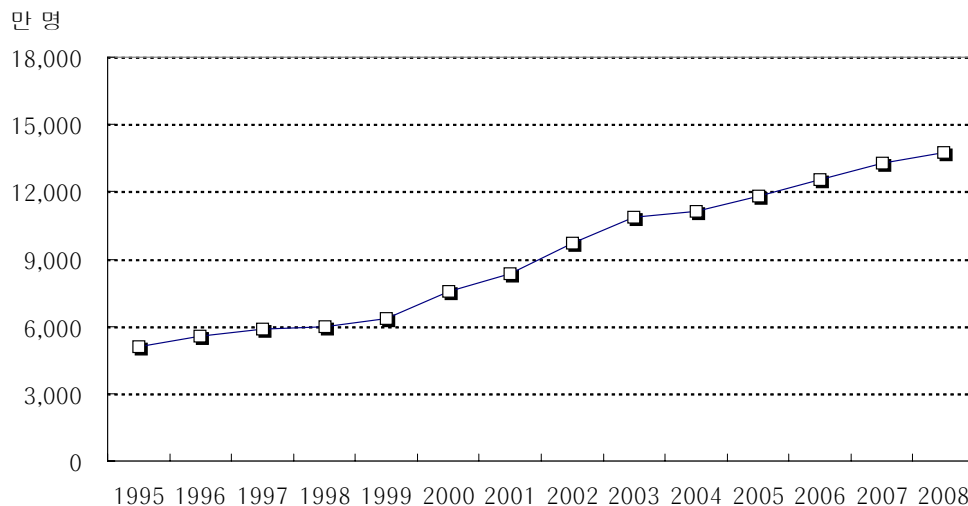
그림 1. 농촌 취업자수 및 향진기업 취업자수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두 번째는 농촌내부의 비농산업으로의 이전이며 80년대 중반, 농업생산이 매년 풍년이었고 국가 또한 전후 몇 차례 주요 농부산품의 수매가격을 제고해 농민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로써 농민은 일정한 투자능력을 구비하게 됨.
- 어떤 지역에서는 농민개인의 투자나 연합으로 하는 창업붐이 서서히 나타남. 이러한 방법은 정책상의 호응과 지원을 얻어내 향진기업으로 대표되는 농촌 내 비농업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 이로써 농촌노동력은 농촌내부에서 분공분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음.
- 1978~2007년 향진기업취업자 수는 2827만 명에서 15090만 명으로 증가되어 농촌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에서 31.7%로 상승함.

그림 2. 외지취업 농촌노동력의 수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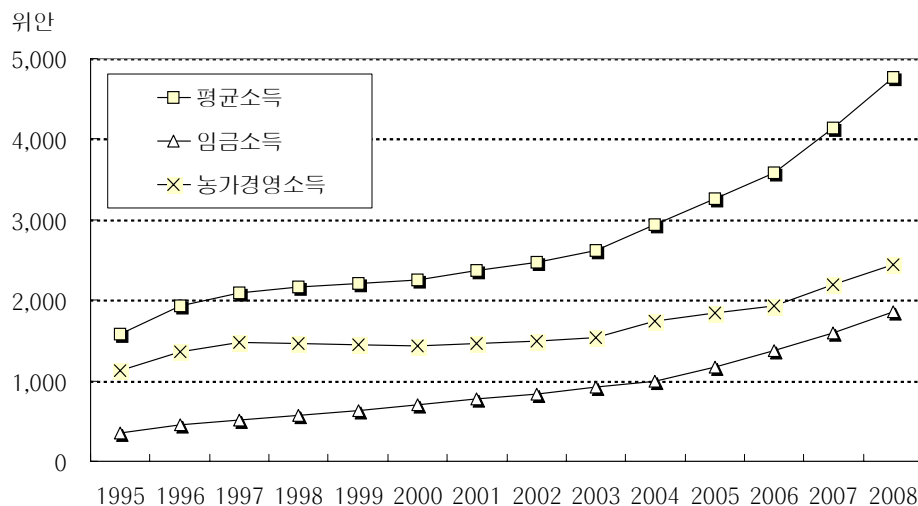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세 번째는 도농 간과 지역 간 대규모 이동으로 전체 80년대 농촌노동력 이전은 주로 “離土不離鄉”, 즉 농토는 떠나나 고향을 떠나지 않는 방식을 취해 현지에서의 이전을 실현함.
- 그러나 80년대 말기에 이르러 농업구조의 조정은 물론이고 향진기업의 발전도 모두 신규취업능력의 감소추세가 나타났고, 더욱이 이 시기에 국가거시경제의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농민의 수입증가는 빠르게 줄어들어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났음.

- 그래서 대규모 농촌노동력의 지역 간 유동이 일어나게 됨. 90년대 중기 이후 농촌노동력의 지역 간 유동정책에 대해 정부도 “막기(堵)”에서 “소통(疏)”으로의 중대 전환을 보여 농촌노동력의 외지취업의 정책 환경도 날로 완화되어 외지취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였음.
 - 1995년에서 2008년, 농촌노동력 외지취업자수 5066만 명에서 13753만 명으로 증가해 농촌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에서 25.9%로 증가하였음.
- 만약 도시화 발전요소를 고려한다면, 농촌이전노동력의 수량은 더욱 큼. 호적제도 개혁으로 농업호구의 비농업호구 전환이 쉬어져 많은 농촌인구가 농전비(農轉非: 농업인구에서 비농업인구로의 전환), 도시계획의 변경, 진학, 입대와 전역 등의 방식으로 도시로 전입해 도시인구가 됨.
- 1978년에서 2007년 중국도시인구는 17245만 명에서 59379만 명으로 상승해 도시화 수준은 17.9%에서 44.9%로 상승함.

1.2. 농촌노동력 이전의 영향

그림 3. 농민 일인당 소득 증가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가.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 농촌노동력의 이전은 농민의 취업통로를 확대했고 농민소득증대에 중요한 소스를 제공함.
- 90년대 중기, 급여성 수입은 농민일인당평균 순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38.9%에 이름. 급여성 수입은 농민 소득 증대에 중요한 공헌자가 되었음. 2000-2008년 농민일인당 순수입 증대에서 급여성 수입이 차지하는 공헌비율은 45.9%로 가정경영 순수입의 공헌비율보다 5.7%나 더 높음.

나. 빠르고 건강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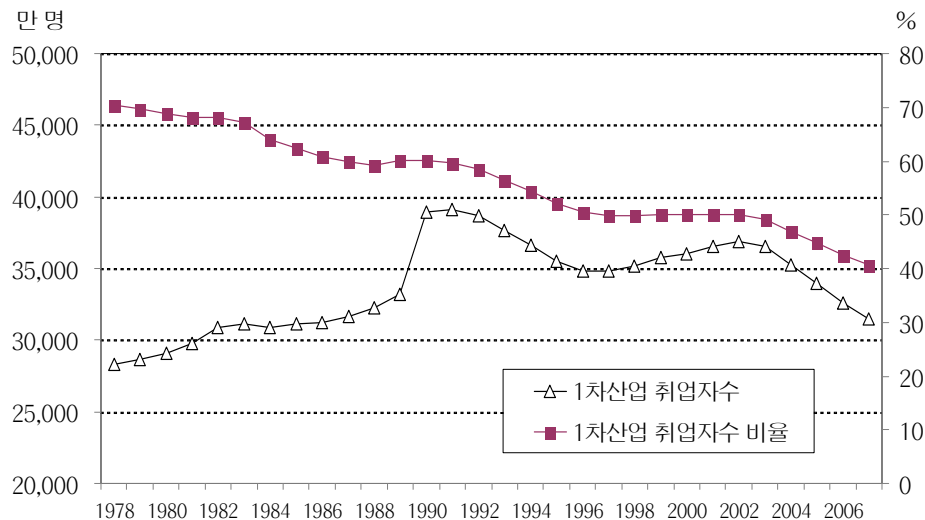
- 몇몇 연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래 경제성장이 16%에서 20%로 발전은 노동력 이전과 노동력의 재배치로 인한 생산성의 제고 때문임을 분명히 했음. 또한, 향후 몇 년 내 만약 농업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전에 대한 장애가 서서히 제거된다면, 노동력의 부문 간 이동은 앞으로 매년 경제성장에 2-3% 공헌할 것으로 예측함.

2. 농민공 부족: 농촌노동력 수급관계의 단계적 변화

- 오랜 동안 사람들은 중국의 농촌노동력이 무한정 공급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고 풍부한 인력자원은 중국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비교우위였음.
-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은 “민공황(民工荒)”, 즉 농민공 부족 현상이 나타났음. “민공황”의 최초 표현은 “기공황(技工荒)” 즉, 노동력시장에서의 주물, 선반공 등 비교적 고급기술공의 부족임. 이후 일반 노동 인력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음.
- 2005년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어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에서부터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화베이(華北)연해지역 심지어 주요 노동력 수출지역인 후난(湖南), 장시(江西)성 등지의 기업에서도 노동력 고용문제에 직면했음.
-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중국농촌노동력 잉여 현상과 노동력 수급관계 변화에 관한 학술계의 대논쟁을 불러일으켰음.

-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농촌노동력 수급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농촌노동력 이전 속도는 현저히 빨라지고, 농촌노동력 잉여 수량은 현저히 감소하며, 공급에 비해 비농산업과 도시의 농촌노동력의 수요는 급증하고, 농촌 잔류 잉여 노동력의 질은 더욱 떨어져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제약이 점차 나타남.

그림 4. 제1차산업 종사자 수 및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2.1. 농업노동력의 절대수량과 상대비율 동반 하락

- 국제적 경험에 의하면, 농업위주의 개발도상국가는 공업화 과정에서 대체로 3단계의 취업구조 변화를 거침.
- 첫 번째 단계는 농업노동력의 절대수량과 취업비율이 모두 증가함.
- 두 번째 단계는 농업노동력의 절대수량은 증가하나 취업비율은 하락함.
- 세 번째 단계는 농업노동력의 절대수량과 취업비율이 모두 하락함.
- 일단 제3단계에 진입하면, 농업노동력 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상대취업비율의 하락

속도도 빨라짐.

- 1992년 시작하여 중국농업노동력의 절대수량과 취업비율은 모두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2003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중국의 농업노동력 이전이 이미 제3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농촌노동력 이전이 가속화 시기에 진입했음을 나타냄.
- 1991-2007년 제1차산업 취업자 수는 3억9098만 명에서 3억1444만 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약 478만 명이 감소함. 사회 총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7%에서 40.8%로 하락하여 연평균 1.18%의 감소율을 기록함. 그 중 2002-2007년 제1차산업 취업자 수는 1085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총 취업비중에서 매년 1.85% 하락한 것임.

2.2. 농촌노동력 잉여 수량의 뚜렷한 감소

- 중국농촌노동력 이전 과정을 회고해 보면, 개혁개방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내 농촌 잉여 노동력 이전 속도는 줄곧 농촌잉여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낮아 농촌노동력의 절대잉여 국면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음.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1980년대 농업노동력의 절대잉여수량은 약 1억 명이었음. 1990년대 후기에서 2000년 전후 중국농촌노동력의 잉여수량은 약 1억3000만 명에서 2억 명 가량임.
- 그리고 정부와 학계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농촌에는 약 1억5000만 명 정도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함. 현재 중국농업과 농촌노동력의 잉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해 보다 세밀한 추정을 실시하였음.
- 먼저, 농업노동력의 잉여에 관하여, 국가통계국과 농업부는 농산물 비용수익으로 근로수치를 조사하고, 각 농산물의 파종면적 또는 주요 농산물 총 생산량에 근거해 근로수요량을 추산하고, 다시 250 근로일수를 일인 노동력 일 년의 표준근로시간으로 삼아 필요한 노동력 수량을 환산해 봄.
- 농업생산구조, 기술조건, 생산수준 등의 요소가 불변하다는 전제 하에서 최근 중국 농업생산은 적어도 2억200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농업종사자 중 잉여인원은 많아야 8000만 명임.

- 다음, 농촌노동력의 잉여에 관하여, 농촌고정관찰거점의 2006년 20000개 농가의 조사수치를 이용해 전체 불충분 취업인원의 불충분 취업일수를 계산하고, 다시 250 근로일을 일인 노동력의 일 년 내 적정종사시간으로 환산하면, 최근 전국농촌노동력의 잉여 총량은 9000만 명 가량임.
- 이러한 추산으로 볼 때, 농업잉여노동력이든 농촌잉여노동력이든 절대량은 모두 90년대 말보다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대략 60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2.3. 경제발전으로 인한 농촌노동력 수요의 빠른 확대

- 더 자세히 분석하면, 농업잉여노동력 수량의 감소 상황에서 현재와 향후 한동안 비농산업 및 도시의 근로수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고 노동력의 공급부족 상황은 여전히 확대될 것임.
 - 공급측면에서 보면, 2000년 전국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추산하면 2007-2015년 노동력인구는 8억478만 명에서 8억1099만 명으로 증가할 것임.
 - 수요측면을 보면, 중국 각 업종의 생산액취업탄력성이 2000-2006년 평균수준으로 불변하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연도 예측 생산액을 상응한 취업탄력성으로 곱해 상응한 연도의 노동력 총 수요 상황을 계산할 수 있음.
- 결과를 보면, GDP가 8% 성장하면 노동력인구의 공급과 노동력수요는 2015년 대체로 수평을 유지하고, GDP가 6% 성장하면 노동력인구의 공급이 노동력 수요보다 큰 형태를 이룸.
 - 그러나 GDP 성장이 10%를 초과하면, 2015년 전후 노동력 수요가 공급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부족한 수량은 1500만 명 정도임. 노동력의 공급수요 구조는 이때 근본적인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임.

2.4. 미 이전 농촌노동력의 전체적 수준은 하락하는 추세

- 수요구조의 제약으로 이전한 농촌노동력은 젊고 문화 정도가 비교적 높으나 농촌노동력 이전 수량의 부단한 증대로 최근 농촌에 남아있는 노동력의 수준은 뚜렷한 하향추

세를 나타냄.

- 농촌고정관찰지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전출 취업노동력의 평균연령은 대체로 만 33세 정도이고 비전출 노동력의 평균연령은 이미 40세 이상에 이르렀음. 그 중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평균연령은 이미 만45세에 이르렀음. 전출취업노동력 중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수준은 약13%이고 비전출 노동력 중 이 비중은 단지 8% 정도 이임. 그중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중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정도는 약 5%에 불과함.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최근 중국 농촌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절대적 구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농업노동력의 총 수요문제가 발생할 있음.
- 둘째, 농업노동력 수준이 현대농업발전에 적합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
- 셋째, 농촌노동력의 공급구조와 수급구조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 구조가 날로 돌출 되어 이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임.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농촌노동력 이전과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

3. 금융위기 배경 하의 농민공 귀향 문제

○ 중국이 루이스전환구역(신규 일자리가 늘더라도 급여는 올라가지 않는 현상, 이 전환 점을 지나면 신규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올라감.)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각계의 논쟁이 진행될 무렵,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중국까지 파급되어 중국의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음.

-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하는 현상(返鄉現象)이 확대되었음.

○ 농촌노동력 전출이 비교적 많은 15개 성(省)의 165개 농촌고정관찰거점에 대해 실시한 일차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9년 1월 15일까지 실업이나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귀향한 자는 전체 전출자 중 15.3%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대략 2000만 명인 것으

로 추산됨.

- 평년의 실업과 구직난으로 귀향한 인수를 빼면 금융위기로 인해 적어도 1200만 명 이상의 농민공 실업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 이것은 이미 실업되었거나 구직을 못했으나 귀향하지 않은 농촌노동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2009년 전체를 보면, 농민공의 취업 형세는 낙관적이지 않음. 국무원 농민공판공실과 국가통계국의 음력 1월 10일(2월 10일 좌우) 전후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춘제(설) 전에 각종 이유로 귀향한 농민공은 약 7000만 명이고, 그 중 5600만 명이 설 이후 다시 외지로 나갔으며, 1100만 명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고향에 남아 있는 1400만 명 중 대략 700만 명이 업무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설 전 귀향한 농민공 실업자는 대략 1800만 명임.
- 전국에서 매년 신규로 700-900만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이전이 필요한 노동력은 2500만 명 이상이 될 것임.
- 금년 중국 도시신규취업 목표는 겨우 900만 명이어서 설사 이 900만 명의 신규취업 기회를 전부 농민공으로 채우더라도 농촌노동력의 수급부족은 해소되기 어려워 농촌노동력의 취업형세는 매우 심각할 것임.

○ 농민공의 대량 귀향에 따른 세 가지 측면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첫째는 농민공의 수입증대에 대한 영향임. 임금수입 증대의 어려움으로 올해 농민수입 6% 증대 목표의 달성은 실현되기 힘들 것임.
- 둘째는 도농사회 안정에 대한 영향임. 많은 귀향 농민공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므로 설사 고향에 남아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만약 귀향지역에서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면 농촌의 사회치안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 외 현재의 통계제도의 미비로 도시로 들어갔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농민공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고 추적관리 또한 한계가 있어 이러한 집단은 향후 도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셋째는 농촌 토지에 대한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농민공 실업과 귀향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 2008년 12월 국

무원 판공청은 문건을 하달해 현재의 농민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였고 유관 부문도 상응한 정책을 내놓았음. 관련 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민공 취업의 안정과 촉진
- 둘째, 농민공 기능훈련과 직업교육의 강화
- 셋째, 귀향농민의 창업과 신농촌 건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대폭 확대
- 넷째, 농민공 급여의 준시 지급 확보
- 다섯째, 농민공의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마련. 여섯째, 농민공의 토지승포에 대한 권익 보장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등 유관부문도 중앙의 요구에 따라 일련의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취업서비스를 강화함. 농민공 취업의 실마리는 구직정보에 있음.
- 둘째, 부서에서 대규모 농민공 직업훈련을 전개해 농민공의 취업기능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함.
- 셋째, 기업부담경감정책을 실시해 농민공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취업 추세의 안정화를 촉진함.
- 넷째, 부양정책을 제정하여 귀향농민공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취업을 촉진함.
- 다섯째, 부서에서 인력자원시장의 전문프로그램을 전개해 농민공 구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
-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하에서 농민공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현재 정책측면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어떤 요구는 지나치게 모호하여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농민공 창업 지원문제, 농민공 훈련방식의 조정과 자원통합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음.

○ 농민공 실업과 귀향 문제의 출현으로 농민공 부족 문제와 농촌노동력 수급 관계의 전환 문제에 관한 학술계의 토론은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토론의 주제는 바로 어

떻게 농민공의 취업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한시적 문제로 바뀌었음.

- 이들 학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러한 전환은 크게 비난할 것도 없지만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키포인트는 근시안적인 방편은 안 된다는 것임.
- 현재 농민공의 취업 부족은 금융위기의 충격 하에 형성된 것으로 농촌노동력 수급 전환의 과정이 이로 인해 비록 늦춰지더라도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임.
- 농촌노동력의 취업문제는 농민소득증대,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안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이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반드시 취업규모의 확대와 취업환경의 개선에 진력해 더 강한 정책을 실시해야 함.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국가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취업정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즉시 실시해야 경제 형세의 호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피할 수 있음.

4. 농민공 문제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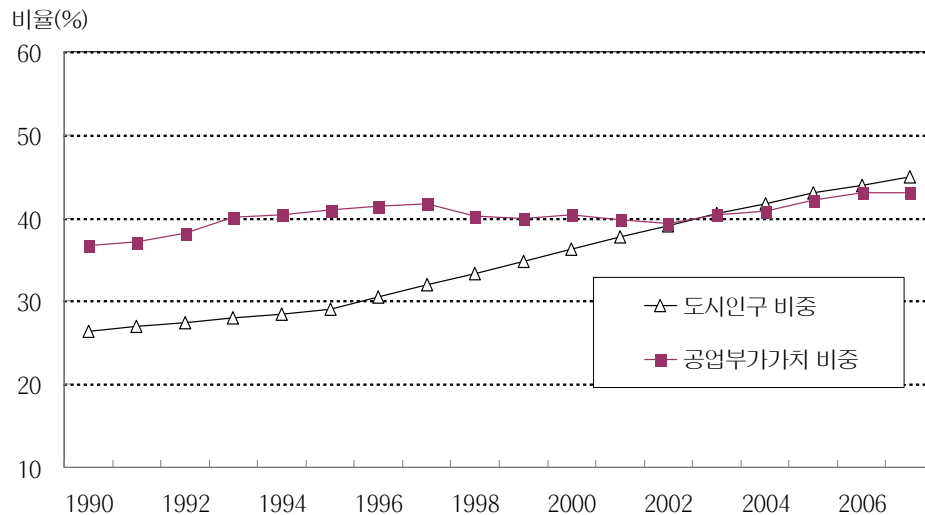
4.1. 미래 국민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노동력시장의 변화

- 국제적 경험과 대조해 보면, 현 단계 중국인구의 도농 분포 구조와 농촌노동력의 취업구조는 여전히 불합리하며, 중국의 경제발전수준과도 어울리지 않음.
- 주된 특징은 농촌인구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도시화 수준이 공업화 과정보다 정체가 되어 있고, 제1차산업 취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편차가 비교적 크다는 것임.
- 세계 공인의 도시화율(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인구의 비율)과 공업화율(GDP 중 공업부가가치 비중)간의 비율의 합리적 범위는 1.4:1-2.5:1사이임.
- 1978-2007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중국 도시인구의 비중은 17.9%에서 2006년 44.9%로 높아졌음. 공업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에서 43.0%로 하락했음.
- 도시화율과 공업화율 간의 비는 0.41:1에서 1.04:1로 상승했음.
- 비록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합리적인 구간으로의 진입은 아직 요원함.

만약 현행 통계를 기준으로 도시인구를 다시 고려해 대량의 비도시농업인구를 실제 포함할 경우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더 낮아짐.

-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아직 중국의 공업화 수준보다 분명히 떨어짐.

그림 5.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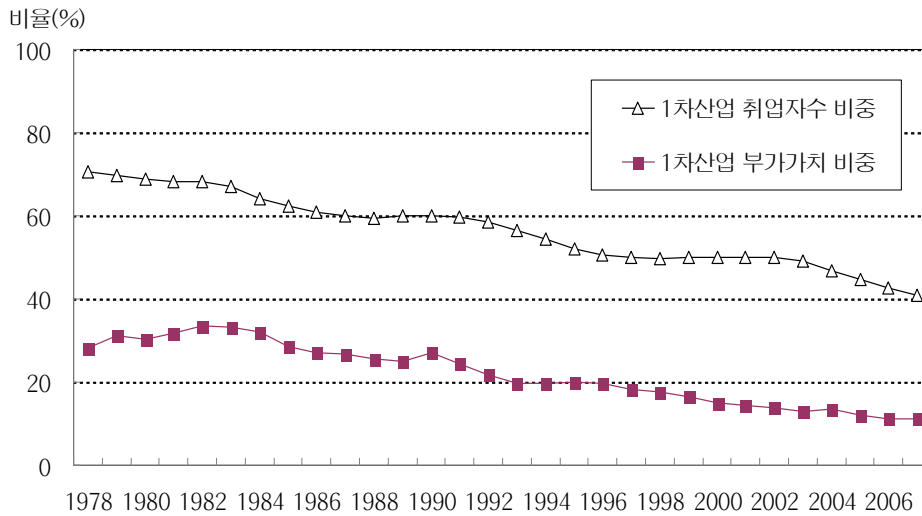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경제발전의 일반적 법칙에 따르면, 국민경제 생산구조와 취업구조는 대부분 함께 변화함.

-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농업생산액 비율과 농업취업비율이 비대칭이 되는 문제가 줄곧 존재해 왔음.
- 1978-2007년, 중국 제1차산업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에서 11.3%로 하락했음. 제1차산업 취업자 수가 총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5%에서 40.8%까지 하락했지만, 제1차산업 취업 비중은 제1차산업의 생산액 비중에 비해 여전히 훨씬 멀리 초과하고 있어 노동력자원 배치의 저효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 중국의 제1차산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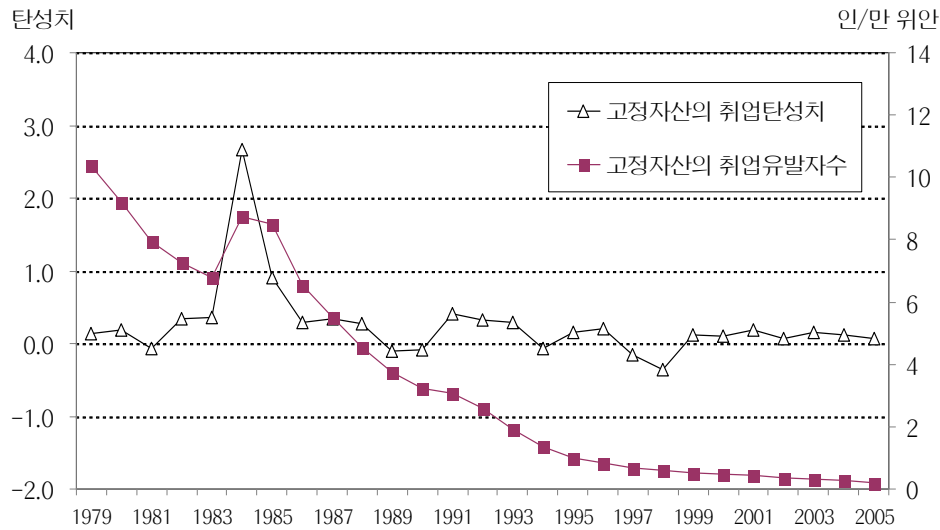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도시화와 공업화 발전 과정의 부조화, 생산액 구조와 취업구조의 불합리 국면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경제사회의 장기 발전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임. 이러한 모순 해결의 관건은 바로 농촌노동력 이전의 가속 추진에 있음.

4.2. 미래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 관점에서 본 농민의 취업 기회

- 농촌내부로부터 보면, 90년대 이후 농업과 향진기업은 농민의 취업문제 해결 방면에서 한계를 내보임.
 - 농업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가임. 일인당 평균 경지규모가 0.1ha로 세계 일인당 평균토지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이와 같이 인구는 많고 토지는 적은 국가는 농촌노동력의 이전 경향이 매우 강력함.
 - 90년대 이후 농업의 소부문화(小部門化)가 중국에서 이미 거스를 수없는 대세가 되었음. 비록 토지이용을 고도로 정밀화 하고 농업구조 조정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더라도 이는 농촌노동력의 이전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농업노동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감소할 것임.

그림 7. 향진기업의 고정자산 취업탄성치 및 취업유발자수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향진기업측면에서 보면, 발전과정 중에 역시 일련의 문제가 존재하며 두드러진 특징은 자금집약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해 취업 흡수 능력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
- 향진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취업탄력성은 이미 80년대 전기 0.8에서 근년 0.2 정도로 하락했음. 만 위안의 자산이 유발하는 취업인수는 1988년 6명에서 최근에는 0.3명으로 감소하였음.
- 농업은 노동력의 전출이 필요하고 향진기업은 노동력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 본래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방식은 농민취업과 농민수입의 빠른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음.
- 또한, 이로 인해 이전취업은 중국농민이 반드시 해야 하며 이미 해왔던 또 한 번의 선택임. 농민의 취업과 농민의 수입증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

4.3. 현재의 농민공 문제

- 다른 시장경제국가의 인구변천과는 달리, 중국농촌도시노동력 이전은 전혀 다른 경로를 나타냄. 농촌인구의 도시화 과정은 두 개의 단계로 나눔.
 - 첫 번째 단계는 농민에서 도시농민공으로의 전환이고, 두번째 단계는 도시농민공에서 시민으로의 전환임.
 - 최근 중국의 “노동력 이전”은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며 농민공의 도시민으로의 전환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근 우리가 말하는 농민공 문제는 실질적으로 간단히 농민공의 “반도시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이 문제는 취업, 생활 그리고 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정식 그리고 비정규적인 사회 배척으로 조성된 것임.

가. 취업 배척

□ 직업 분할

-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해 농민공과 도시 현지주민이 직면한 문제는 이원화 된 노동력 시장임.
 -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개인상점, 소형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고, 외래 노동력이 현지노동력에 비해 공유제 단위에 취업하는 비율은 55%로 낮음(王美豔, 2005).

□ 보수 차별

- 농민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 근로자의 60%, 생활 소비 지출은 도시주민의 50%에도 못 미치므로 농민공의 현 소득수준으로는 도시주택, 자녀교육 그리고 소비지출을 부담할 수 없어 더더욱 도시정주라고 말할 수 없음.
 - 농민공과 도시근로자 간에는 “동일노동 차별보수(同工不同酬)” 현상 즉, 같은 일을 하지만 보수가 다른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도 더 많음.
 - 2005년 《중국노동통계연감(中國勞動統計年鑑)》에 따르면, 외성(外省) 호적 농업호구 근로자의 주간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 현지거주민보다 약 11시간 많음.

나. 생활 배척

□ 거주

- 농촌유동인구의 도시거주 방식은 대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즉, 고용단위에서 제공한 숙소 혹은 가건물, 도시거주민구역, 도농경계지역의 향촌 그리고 향촌의 자건(自建)취락거주지 등임.
- 북경과 상해의 유동인구 중 다수 유동인구는 부득불 조건이 더욱 열악하고 밀집된 환경에서 거주하는데 이들의 일인당 평균 주택(주거공간)면적은 도시거주민의 1/3에 불과하며 주택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의 비율은 1%도 안 됨(吳維平·王漢生, 2002).
- 시장화 분배방식, 예를 들어 매매용 주택대출(商品房貸款), 헌집양도(舊房轉讓), 임대(租賃) 등은 유동인구집단의 수요를 거의 무시하고 있음.

□ 자녀교육

-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동아동은 모두 1982만 명이고 그중 “농업호구”에 속하는 인구가 1500만 명임.
- 의무교육 단계에 속하는 6~14세의 적령기 아동이 44%를 차지함. 유동아동 중 미취학자가 6.85%를 차지하고, “**실학자(失學者)**”, 즉 배움의 기회를 잃거나 학업을 중단한 자는 2.45%임(교육부 조사연구팀 2006).
- 다수의 가정이 도시학교의 고가학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가장들은 부득이하게 비체제행위에 호소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외래인구 취학연령의 자녀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비정규 학교가 대량으로 출현하였음.
- 2004년에 중앙에서는 각지 도시정부가 농민공 자녀의 해당 지역 공립학교 취학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상응한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지방정부는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 사회보장

- 도시진입 농민공이 직면한 것은 전통농업사회의 사회위험에서 공업화사회의 사회위험으로의 전환이며 이러한 사회위험은 주로 실업, 양로, 산업재해, 질병, 공공위생 등임.
- 그 이유 중 하나는 농민공과 도시주민소득의 편차가 심하고 그러한 사회위험에 대항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사회배척성 정책의 실시로 농민공은 위험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임.
- 1998년부터 중국 각지에는 일련의 농민공 양로보험정책을 실시했으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도시의 국유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농민공에게 대부분 적합하지 않았음. 그 주된 특징은 보험요율이 너무 높고 가입문턱이 너무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임.

다. 교류 배치

□ 지역사회 배치

- 농민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음.
- 첫째, 그들은 혈연, 지연 그리고 지방방언이 고착화된 해당 지역의 사회연결망에 진입할 수 없음.
- 둘째, 물리적 조건으로 그들은 공장 혹은 염가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해 필연적으로 현지 부유계층과 격리되어 삼.
- 셋째, 그들로 인한 범죄와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은 현지주민들에게 심리상의 공포감을 주게 됨.
- 넷째, 그들은 현지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서 지역사회와 기업주에 맞서는 경우 실패는 이미 결정된 것임.
- 사회 배척은 외래인구가 현지사회에 융합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 하나의 지역사회 내에 두 개의 거대한 이질적 사회집단이 존재해 사회긴장을 야기시킴. 농민공의

정치참여는 “體制性邊緣人”, 즉 체제성 주변인 상태에 처해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에 불과함.

□ 개인의 교류 연결망

- 농촌노동력의 유동은 고도의 자조직(自組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공은 고향을 떠난 후 유동지에서 지역관계에 의지하여 동향인을 중심으로 유대하는 하나의 하위사회(亞社會) 구조를 구축함.
- 농민공의 교류연결망의 특징은 규모가 작고, 밀도가 높으며, 동질성이 강하고, 이질성이 낮아 여전히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전통적 연결망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농민공은 원시적 사회자본을 새로운 사회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임무에 직면해 있음.

4.4. 도농통합 경제사회발전

- 농민공 문제는 농민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임. 중국은 현재 노동력 이전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있는 동시에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도 가장 극렬한 시기임.
 - 이러한 발전단계에서 노동력시장의 차별을 제거하고 노동력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농촌노동력이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농민공의 시민 전환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임.
 - 중공16차 인민대회 이후 도농통합 경제사회 발전은 이미 중국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었음. 이 방침을 실제상황에 잘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중국사회경제 발전단계의 필연적 요구이자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
-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 국면에서 보면, 농민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을 반드시 원만하게 실시해야 할 것임.
 - 첫째, 도농 노동취업을 일원화하고, 도농통합의 인력자원시장을 조속히 건립하고, 농민공이 순차적으로 이전하여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농민의 근거리 이전 장려하고 귀향 농민공의 창업을 지원함.

- 둘째, 농민공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농민공의 노동보수, 자녀취학, 공공위생, 주택 임대구매 등에 있어 도시거주민과의 동등한 대우를 점차 현실화 하고, 농민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안전을 보장하고, 농민공의 근로상해, 의료, 양로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민공 양로보험 관계이전 연계방법을 조속히 제정해 실시함.
- 셋째, 도농 사회 관리를 통합해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하고, 호적제도와 결부된 각종 복리수익을 제거하고, 낙후한 중소도시의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취업과 거주하는 농민이 순차적으로 도시주민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유동인구서비스와 관리체제의 쇄신을 추진함.
- 넷째, 정부관리체제의 개혁과 직능전환을 가속화함. 정부직능의 전환을 통해 도농통합발전을 사회경제발전계획 내에 포함시켜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실행함. 투자, 신용대출, 금융, 재정 그리고 세수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해 도농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함.
- 다섯째는 국민경제의 산업구조와 지역안배의 구조를 적극 추진해 중국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짐.

〈질의 및 응답 요약〉

① 질문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도시가 소화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현재 중국의 호구실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민공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① 답변

호적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현재 청두(成都) 등 몇 개 도시에서 호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호적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야 하나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 협력이 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② 질문

금융위기와 관련해 실업자 1,800만 명, 매년 신규 실업자가 700만 명, 즉 2009년 현재 총 실업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안다. 정부의 도시 취업 목표를 500만 명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② 답변

정부는 도시의 신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투자로 인한 취업난 해소,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세금 감면, 실업인구에 대한 교육 훈련, 북경 및 상하이 등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조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기가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③ 질문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과 공업화율간의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가?

③ 답변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45%로 이는 표면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충칭(重慶) 지역의 인구를 예를 들면, 주변지역의 인구를 포함해서 3,000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몇 백만 명에 불과하다. 즉, 수치가 과장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외 공업화와 도시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④ 질문

결국은 산업화,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농민의 도시이동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최소한의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④ 답변

현재 중국의 잉여노동력이 많이 있으나 노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작년에 국무원에서 농촌노동력과 관련해 정책 마련을 준비해왔으나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발표가 유보된 상황이다.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업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재 중국농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의 수준 저하가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소득 증대, 농업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 농업서비스 체계 개선, 농업전문협작사 도입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여부에 있어 토지에만 한정시키면 발전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기업으로 이전시켜 농촌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5 질문

최근 식량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식량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5 답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의 식량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998년 이전에 식량의 잉여가 문제가 되었으나 1998년부터 2003년 기간 중에는 식량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그 후 식량 증산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식량 증산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중장기 식량산업발전계획, 농업의 지원정책 강화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농작물 품종 개량, 보조금 지급(경지면적에 따른 보조금, 종자 보조금, 농자재 보조금, 농업기계 보조금 등), 농산물 판매구조 개선(농산물 수출입, 국내 생산 판매 등), 농업기술의 보급 등이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자급률 95%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美] H.B. 錢納裏等:《發展形式: 1950—1970》,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88年版.

[美] 西蒙, 庫茲涅茨:《各國的經濟增長》, 上海: 商務印書館, 1999年版.

白南生, 陳傳波:《還有人能外出嗎: 外出務工率的地區差異研究》, 《中國勞動經濟學》, 2008年.

蔡昉, 白南生主編:《中國轉軌時期勞動力流動》,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版.

蔡昉主編:《中國人口與勞動問題報告2007》,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蔡昉, 孟昕, 白南生:《中國勞動力是否枯竭》, 《比較》2008-35, 中信出版社, 2008年.

蔡昉 王德文(1999):《中國經濟增長可持續性與勞動貢獻》, 北京:《經濟研究》, 1999 (10).

- 郭克莎, 王延中: 《中國產業結構變動趨勢及政策研究》,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9年版.
- 孟昕, 白南生: 《中國非技術工人工資增長了多少-基於2000-2004年廣東七廠家的數據研究》, Ross Garnaut, 宋立剛主編《中國市場化與經濟增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 世界銀行: 《世界發展報告》1984年, 1998/99年,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宋洪遠等: 《改革以來中國農業和農村經濟政策的演變》,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2000年.
- 張培剛: 《農業與工業化(中下合卷)》, 武漢: 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02年.
- 趙長保: 《農民工資收入問題分析》, 《中國勞動經濟學》, VOL.3 No.4, 2007年.
- 趙長保: 《工業化, 城鎮化和農業現代化對應關係戰略研究》, 農業部課題組《新農村建設戰略研究》,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年版.
- 趙長保: 《中國現階段的農村勞動力流動與民工短缺現象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資助課題報告, 2004年.



Ⅱ. 농업·농촌경제동향

- 거시경제 동향
 - 가격 동향
 - 무역 동향
 - 소득 동향
- 고추·마늘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09년 1~6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하였음.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별 GDP 성장률은 1차 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2차, 3차 산업도 각각 6.6%, 8.3% 증가하여 올해 1/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09년 1~6월 중국의 농업GDP는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부문별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임업GDP가 가장 높은 6.7%, 재배업GDP가 가장 낮은 3.3%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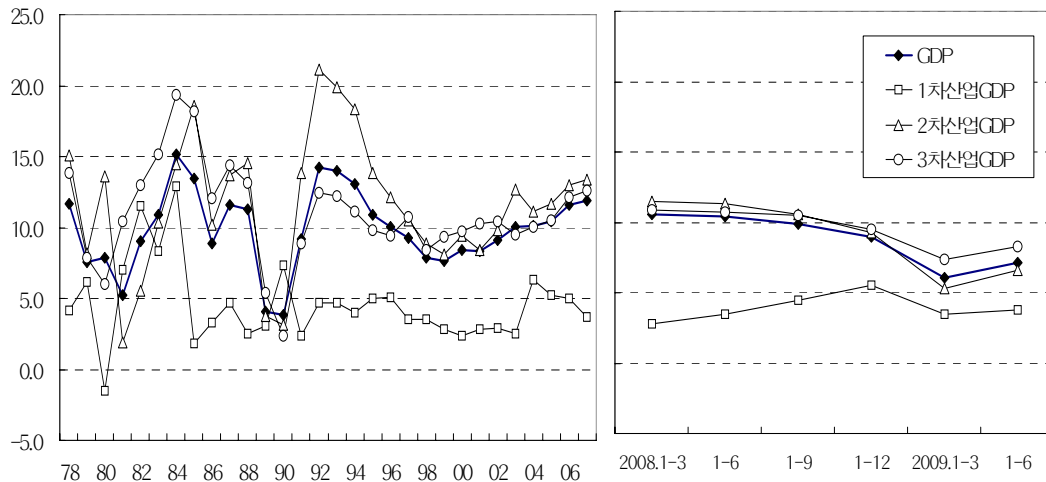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GDP 성장률	10.4	11.6	11.9	10.6	10.4	9.9	9.0	6.1	7.1
1차산업	5.2	5.0	3.7	2.8	3.5	4.5	5.5	3.5	3.8
- 농업 전체	5.7	5.4	3.9	-	-	-	-	3.8	4.2
· 재배업	4.1	5.4	4.0	-	-	-	-	2.2	3.3
· 임업	3.2	5.6	6.9	-	-	-	-	4.9	6.7
· 축산업	7.8	5.0	2.3	-	-	-	-	4.9	5.1
· 어업	6.5	6.0	4.8	-	-	-	-	3.2	4.1
2차산업	11.7	13.0	13.4	11.5	11.3	10.6	9.3	5.3	6.6
3차산업	10.5	12.1	12.6	10.9	10.7	10.5	9.5	7.4	8.3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GDP 성장률 변화 추세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09년 1~6월 중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09년 1/4분기 이후 경공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중공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유기업에 비해 비국유기업의 성장률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9년 1~6월 동안 사영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하여 공업부문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음.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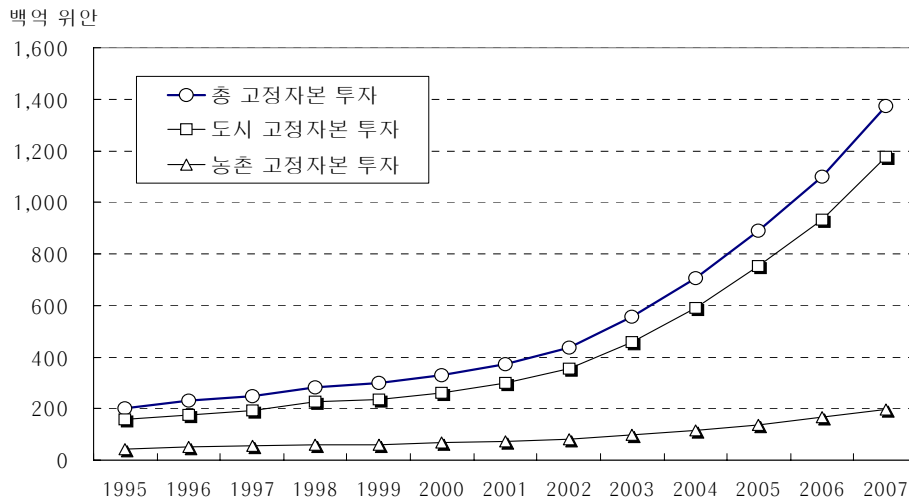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부가가치성장률	18.5	16.4	16.3	15.2	12.9	5.1	7.0
경공업	16.3	14.7	13.8	13.1	12.3	6.8	8.2
중공업	19.6	17.3	17.3	16.0	13.2	4.5	6.6
국유기업	13.8	12.9	12.7	11.8	9.1	0.1	1.7
사영기업	26.7	23.3	23.6	22.1	20.4	16.2	17.1
집체기업	11.5	11.6	10.5	9.6	8.1	3.5	5.9
주식합작기업	17.5	14.0	14.7	13.8	11.4	7.3	9.7
수식회사	20.6	18.9	18.8	17.5	15.0	7.7	9.4
직접투자기업	17.5	14.3	14.3	12.7	9.9	-1.4	1.2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2. 고정자본 투자

- 중국의 총고정자본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도시 고정자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2. 참조).
- 농촌 고정자본 투자는 도시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으며, 200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1~6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별로는 1차 산업(농림목어업)이 전년 동기대비 68.9%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차, 3차 산업은 각각 29.0%, 36.6% 증가하였음.
-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는 줄곧 높은 투자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고정자본 투자규모 증가 추세, 1995-2007년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투자 성장률	24.5	25.8	25.9	26.8	27.6	26.1	28.6	33.6
1차 산업 (농림목어업)	30.7	31.1	80.8	69.5	62.8	54.5	85.0	68.9
2차 산업 이 중	25.9	29.0	25.9	26.6	30.2	28.0	26.8	29.0
- 농부식품가공업	31.6	37.6	16.0	17.4	24.8	25.7	37.7	41.1
- 식품제조업	42.6	26.1	16.0	19.0	18.9	17.8	27.6	36.6
- 음료제조업	58.2	30.2	35.6	15.4	20.1	22.4	15.4	20.3
- 연초제조업	20.8	2.4	-20.4	10.3	30.8	20.9	104.6	47.8
3차 산업 이 중	23.3	23.2	25.3	26.2	24.8	24.1	29.1	36.6
- 숙박, 외식업	37.4	41.2	32.9	30.6	32.5	30.5	41.4	45.7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고용 및 임금

- 2009년 3월 도시 단위(單位)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한 11,997만 명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12월 대비 1.6% 감소하였음.
- 국유단위² 취업자 수는 6,411만 명으로 전체 도시 단위 취업자의 53.4%를 차지하였음. 국유단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했지만, 전년 12월에 비해서는 0.6% 감소하였음.

1 도시 단위 취업자 수는 향진기업(鄉鎮企業), 사영기업(私營企業), 개인자영업자(個體工商戶)를 제외한 국유단위, 집체단위, 기타 단위(주식합작기업, 연합경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홍콩마카오대만자본투자단위, 외국자본투자단위)에 취업하여 임금(노동보수)을 취득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함. 중국의 기업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연합경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사영기업(사영독자기업, 사영합동기업, 사영유한책임회사, 사영주식유한회사), 기타기업 등 내자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자본투자기업, 외국자본투자기업(합작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자본투자 주식유한회사)으로 구분됨. 2007년 공업총생산액을 기준으로 내자기업이 68.5%, 홍콩마카오대만자본투자기업이 10.5%, 외국자본투자기업이 21.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내자기업 가운데 사영기업이 23.2%, 유한책임회사가 22.3%, 주식유한회사가 9.9%, 국유기업이 9.0%, 집체기업이 2.5%, 주식합작기업 0.9%, 연합경영기업 0.4%를 차지하고 있음.

2 국유단위(國有單位)는 자산이 국가소유인 경제조직을 의미하며,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등기 및 등록된 비회사제의 경제조직,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를 포함함.

- 집체단위(集體單位)³ 취업자 수는 639만 명으로 전체 도시 단위 취업자의 5.3%를 차지하였음. 집체단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8.2%, 전년 12월 대비 3.5% 감소했음.
- 기타단위(其他單位)⁴ 취업자 수는 4,946만 명으로 전체 도시 단위 취업자의 41.2%를 차지하였음. 기타단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했지만, 전년 12월에 비해서는 2.7% 감소하였음.

- 2009년 1/4분기 도시 단위 취업자의 임금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전년 동기대비 7.3% 포인트, 전년 4/4분기 대비 5.6% 포인트 감소하였음.
- 국유단위는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2.7% 포인트, 전년 4/4분기 대비 2.4% 포인트 감소하였음.
- 집체단위는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했지만, 전체 단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년 동기대비 7.4% 포인트, 전년 4/4분기 대비 2.5% 포인트 감소하였음.
- 기타단위는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14.4% 포인트, 전년 4/4분기 대비 10.6% 포인트 감소하여 전체 단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표 4. 중국의 도시 단위취업자수 및 임금 총액 상승률 추이

단위: 만 명, %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취업자 수	11,713	12,024	11,876	11,991	12,078	12,193	11,997
- 국유	6,431	6,424	6,368	6,403	6,453	6,447	6,411
- 집체	764	718	696	700	699	662	639
- 기타	4,519	4,882	4,811	4,888	4,926	5,084	4,946
임금총액 상승율	17.6	21.5	21.4	21.1	21.4	19.7	14.1
- 국유	13.3	19.9	17.1	16.5	17.5	16.8	14.4
- 집체	8.5	12.6	13.5	11.6	12.5	8.6	6.1
- 기타	26.0	24.8	28.8	29.0	28.2	25.0	14.4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집체단위(集體單位)는 생산수단이 집단소유이고,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등기 및 등록된 경제조직을 지칭함.

4 기타단위(其他單位)는 등기 및 등록된 주식합작단위, 연합경영단위,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 자본 투자단위 등을 지칭함.

4. 소비

- 2009년 1~6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6.4% 포인트 감소하여 소비세가 둔화되었음.
- 현, 현 이하, 시 지역의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9%, 16.1%, 14.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5.2% 포인트, 2.8% 포인트, 7.7% 포인트 감소하였음.
- 분야별로는 숙박 및 외식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전년 동기대비 18.1%, 도소매업은 14.7%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각각 5.9% 포인트, 6.6% 포인트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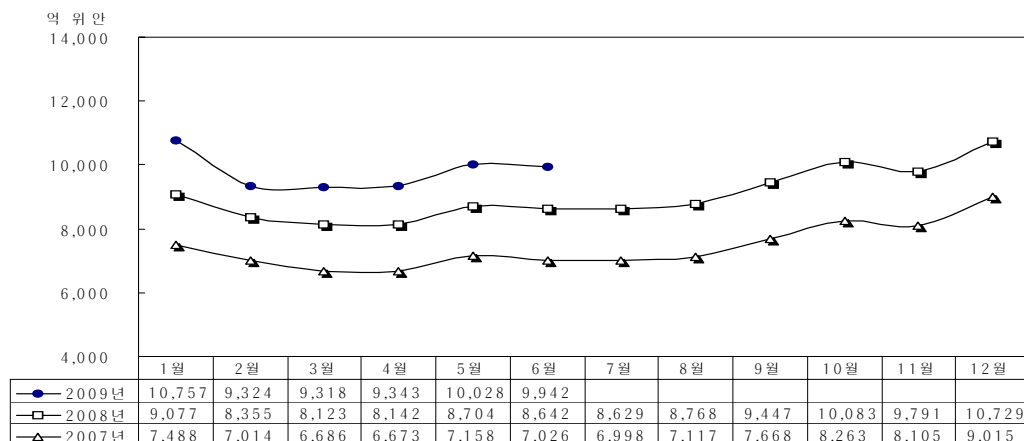
표 5.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2.9	13.7	16.8	20.6	21.4	22.0	21.6	15.0	15.0
지	13.6	14.3	17.2	21.2	22.1	22.7	22.1	14.1	14.4
시(市)									
역	12.8	13.3	17.3	21.2	22.1	22.9	22.8	18.0	16.9
현(縣)									
별	10.8	12.3	15.0	18.3	18.9	19.4	19.5	16.4	16.1
현(縣) 이하									
업	12.6	13.7	16.7	20.4	21.3	22.0	21.5	14.6	14.7
도소매업									
종	17.7	16.4	19.4	23.6	24.0	24.8	24.7	18.9	18.1
숙박 및 외식업									
별	0.4	2.3	4.5	4.2	4.4	4.0	3.7	2.8	3.0
기타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3.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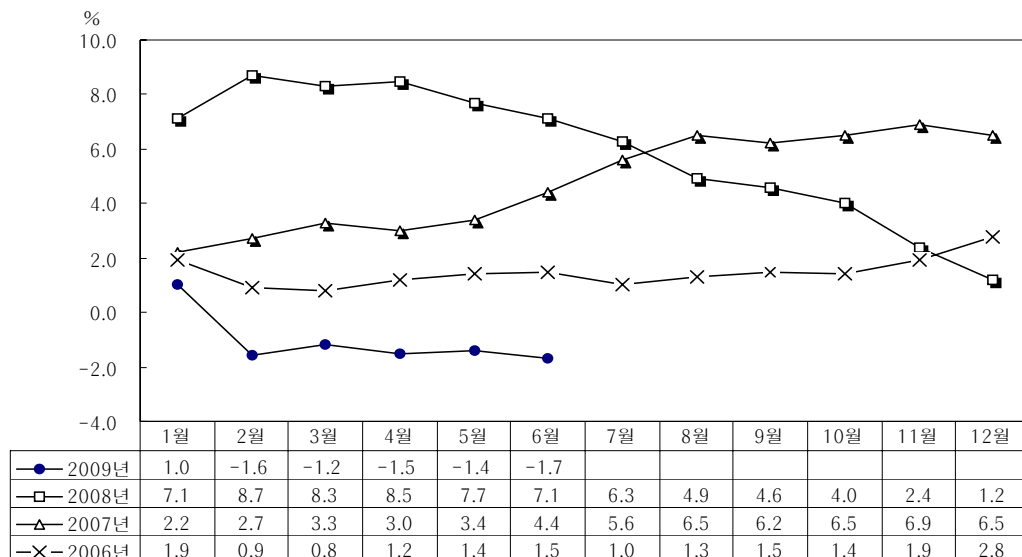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5. 물가

5.1. 소비자물가지수(CPI)

- 2009년 1~6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8.9로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함.
-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 5월 이후 식품가격의 상승(특히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월 최고치(108.7)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⁵
- 2009년 2월부터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98.3로 전년 동월대비 1.7% 하락하였음.

그림 4.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가격 33.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3.9%, 의류 및 복장 가격 9.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10.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6.0%,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14.2%, 교통 및 통신 가격 10.4%, 주택(거주) 가격 13.2%임 (<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이 중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0% 정도이며, 돼지고기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임.

표 6.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소비자물가지수	101.5	104.8	108.0	107.9	107.0	105.9	99.4	98.9
식품	102.3	112.3	121.0	120.4	117.3	114.3	100.5	99.7
-식량	102.7	106.3	106.2	107.2	107.5	107.0	104.6	104.9
-육류·가금 및 그 제품	97.1	131.7	144.1	140.6	129.2	121.7	92.6	88.9
-가금 알	96.0	121.8	106.0	104.9	104.8	104.3	100.3	101.6
-수산물	101.2	105.1	111.1	114.3	115.1	114.2	106.9	104.0
-신선채소	108.2	107.3	127.7	119.6	114.0	110.7	103.9	109.5
-신선과일	121.5	100.1	107.7	109.8	110.7	109.0	97.7	104.3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0.6	101.7	102.3	102.6	102.8	102.9	102.0	101.7
의류 및 복장	99.4	99.4	98.4	98.5	98.6	98.5	97.6	97.6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1.2	101.9	102.2	102.5	102.7	102.8	102.1	101.3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1.1	102.1	103.4	103.4	103.2	102.9	101.3	101.1
교통 및 통신	99.9	99.1	98.7	98.6	99.0	99.1	97.3	97.5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99.5	99.0	99.4	99.2	99.2	99.3	99.5	99.3
주택(거주)	104.6	104.5	106.6	106.9	107.0	105.5	97.1	96.1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09년 1~6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의류 및 복장 가격, 교통 및 통신 가격,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주택가격은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각각 0.3%, 2.4%, 2.5%, 0.7%, 3.9% 하락하였음.

- 반면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 1.3%, 1.1% 상승하였음.

○ 2009년 1~6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이는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11.1%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임.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나머지 식량, 가금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 1.6%, 4.0%, 9.5%, 4.3% 상승하였음.

5.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09년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92.0으로 전년 동월대비 8.0% 하락하였으며, 2008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상품별로 보면 2009년 6월 광산품 가격지수와 석탄, 석유, 전기 상품가격지수가 각각 85.2와 85.7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4.8%, 14.3% 하락하여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이외에도 농산품과 가공업산품의 가격지수는 각각 95.5, 91.8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4.5%, 8.2%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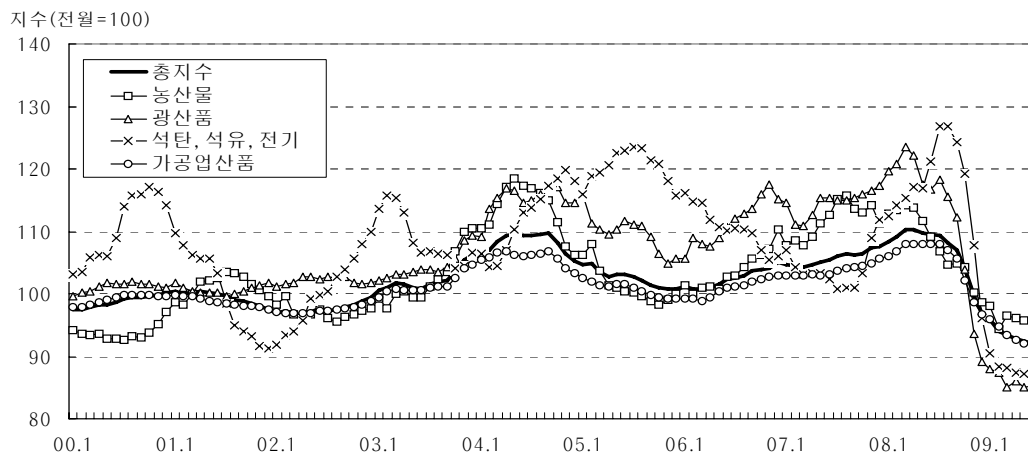
표 7.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2008					200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지수	108.2	107.0	104.0	99.6	96.9	95.8	94.0	93.4	92.9	92.4	92.0
농산품	104.7	105.0	104.3	100.2	98.6	98.0	94.4	96.5	96.1	95.8	95.5
광산품	115.5	112.3	103.8	93.6	89.2	88.0	87.4	85.0	86.0	85.1	85.2
석탄, 석유, 전기	126.8	124.2	119.1	107.8	96.2	90.6	88.3	88.1	87.4	87.1	85.7
가공업산품	107.0	105.6	102.2	98.6	96.7	96.0	94.8	93.4	92.7	92.1	91.8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그림 5.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6. 무역

- 2009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9,461.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하였음.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9년 1월부터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 동 기간 수출은 5,2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4,246.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4% 감소하여 2009년 1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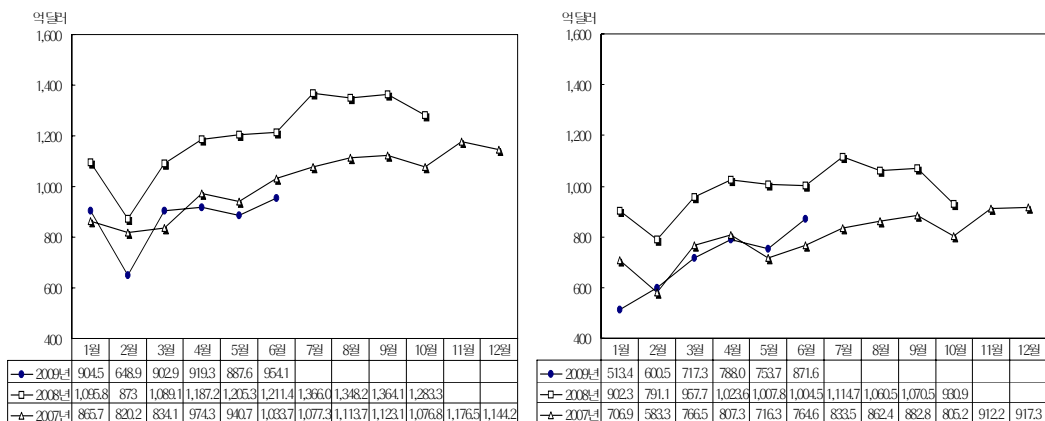
표 8.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수출입 총액	17,606.9	21,738.3	5,730.8	12,338.0	19,671.3	25,616.3	4,287.4	9,461.2
- 증가율(%)	23.8	23.5	24.6	25.7	25.2	17.8	-24.9	-23.5
수출 총액	9,690.7	12,180.1	3,059.0	6,662.5	10,740.6	14,285.5	2,455.4	5,215.3
- 증가율(%)	27.2	25.7	21.4	21.8	22.2	17.2	-19.7	-21.8
수입 총액	7,916.1	9,558.2	2,644.8	5,675.5	8,930.7	11,330.8	1,832.0	4,246.0
- 증가율(%)	20.0	20.8	28.6	30.6	29.0	18.5	-30.9	-25.4
무역 수지	1,774.6	2,622.0	414.2	987.0	1,809.9	2,954.7	623.4	969.3
- 증가율(%)	74.0	47.7	-10.6	-12.2	-2.7	12.5	53.6	-0.5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6.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7. 금융 및 환율

- 2009년 6월 광의통화(M2)는 56조 9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28.4% 증가하였음. 2008년 12월 이후 통화량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6월 협의통화(M1)는 19조 3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24.8% 증가하였음. 2009년 2월 이후 통화량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6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3조 4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1.5% 증가하였음. 2009년 2월 이후 현금 유통량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표 9.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008					200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광의통화(M2) ³	4,489	4,529	4,531	4,586	4,752	4,961	5,067	5,306	5,405	5,483	5,689
-증가율(%)	15.9	15.2	14.9	14.7	17.8	18.7	20.3	25.4	25.9	25.7	28.4
협의통화(M1) ²	1,569	1,558	1,572	1,578	1,662	1,652	1,662	1,765	1,782	1,820	1,931
-증가율(%)	11.3	9.2	8.7	6.6	9.0	6.7	10.6	17.0	17.5	18.7	24.8
유통 중 현금(M0) ¹	309	317	313	316	342	411	351	338	343	336	336
-증가율(%)	10.9	9.3	10.6	9.0	12.8	12.0	8.3	10.9	11.3	11.2	11.5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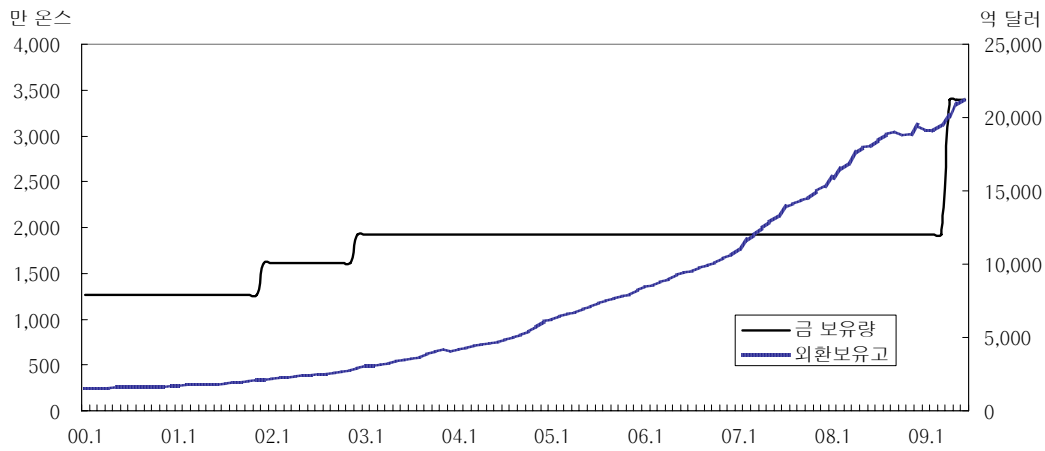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03년 이후 줄곧 1,929만 온스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4월 3,389만 온스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9년 6월 외환보유량은 2조 1,316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7.8%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량 증가율은 2007년 하반기 최고조인 45%에 도달 한 후 점차 증가 폭이 감소하여 2009년 4월 14.4%로 최저치에 도달 한 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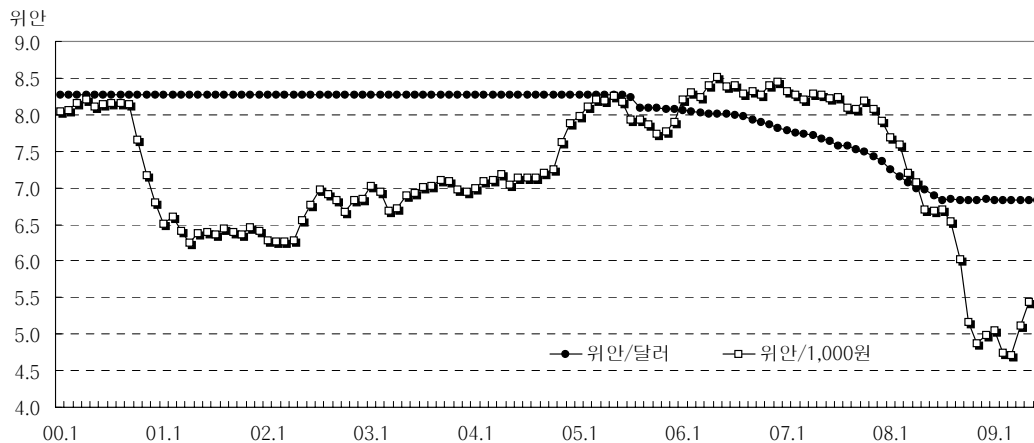
그림 7. 중국의 금 및 외환 보유량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 2009년 6월 위안/달러 환율은 6.8332로 2008년 후반기 이후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안/1,000원 환율은 5.4151로 3월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위안/1,000원 환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3월 최고치(4.7041)에 도달 한 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8.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표 10.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08					200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위안/달러	6.8515	6.8307	6.8316	6.8286	6.8424	6.8382	6.8357	6.8341	6.8312	6.8245	6.8332
위안/1000원	6.5351	6.0147	5.1576	4.8754	4.9943	5.0505	4.7459	4.7041	5.1117	5.4366	5.4151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가격 동향

1. 품목별 수매가격 및 도매시장 가격

1.1.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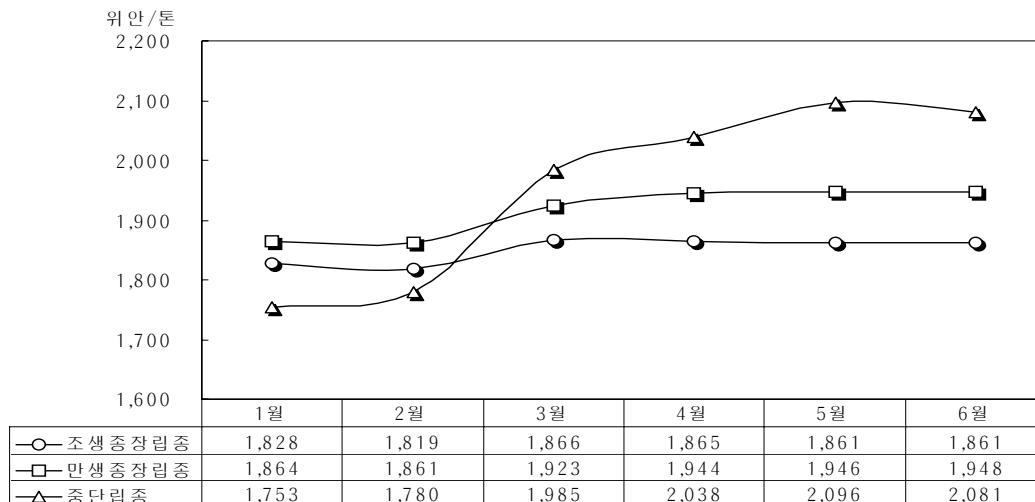
1.1.1. 쌀

가. 조생종 장립종

○ 2009년 2/4분기 조생종 장립종쌀(조곡) 수매가격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톤 당 평균 수매가격은 1,862위안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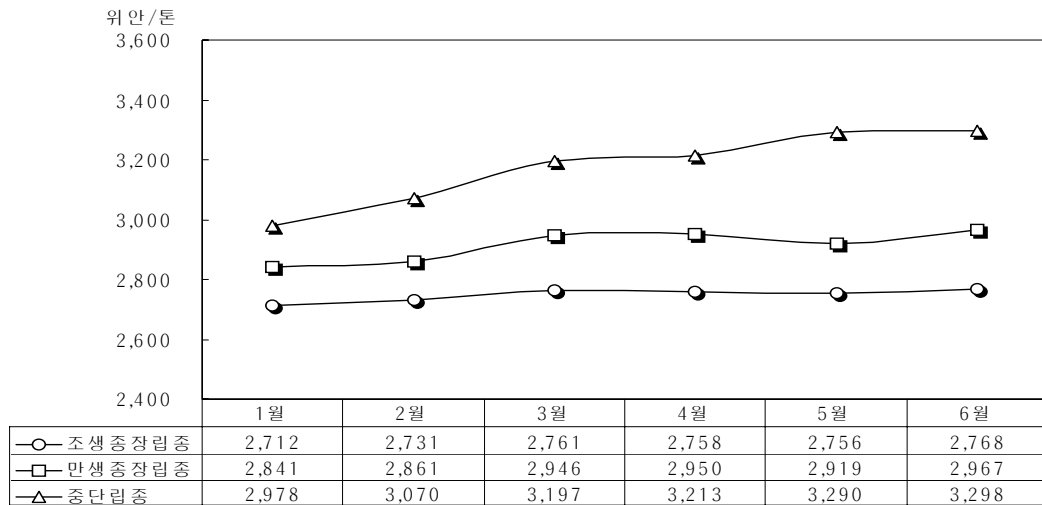
－ 4월, 5월, 6월 수매가는 각각 톤 당 1,865위안, 1,861위안, 1,861위안으로 약간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 6.6%, 5.4% 상승했음.

그림 1. 2009년도 월별 벼 수매가격 추이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2. 2009년도 월별 쌀 도매시장가격 추이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2009년 2/4분기 조생종 장립종쌀(정곡) 도매시장가격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톤 당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2,765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2,758위안, 2,756위안, 2,768위안으로 다소 상승했음.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음.

나. 만생종 장립종

- 2009년 2/4분기 만생종 장립종쌀(조곡) 수매가격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톤 당 평균 수매가격은 1,946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수매가는 각각 톤 당 1,944위안, 1,946위안, 1,948위안으로 약간 상승한 가운데, 역사상 최고 수매가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1%, 7.7%, 5.8% 상승했음.
- 2009년 2/4분기 만생종 장립종쌀(정곡) 도매시장가격은 소폭 하락한 후 상승하였으며, 톤 당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2,940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2,950위안, 2,919위안, 2,967위안으로 다소 상승했음. 6월 도매시장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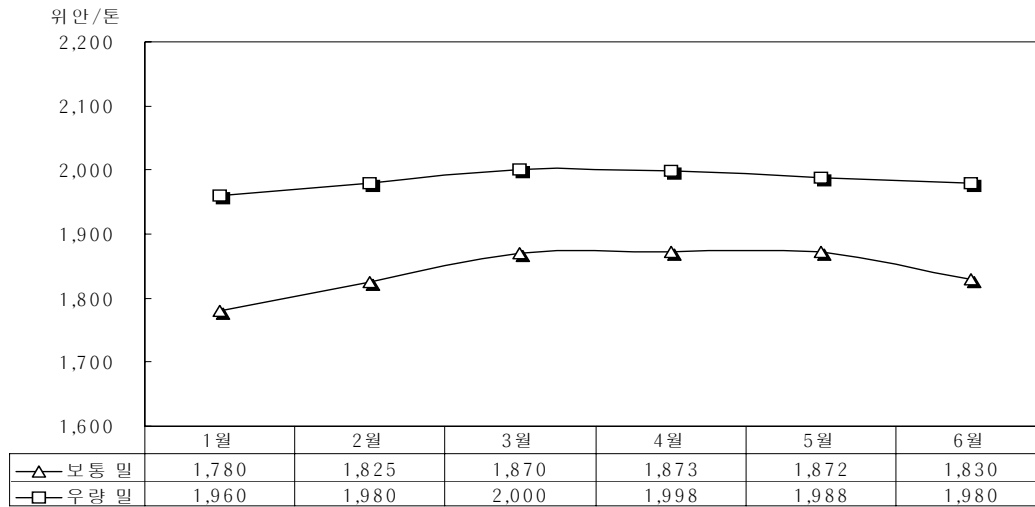
다. 중단립종

- 2009년 2/4분기 중단립종쌀(조곡) 수매가격은 소폭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 톤 당 평균 수매가격은 2,072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수매가는 각각 톤 당 2,038위안, 2,096위안(역사상 최고 수매가), 2,081위안으로 1/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2%, 7.9%, 4.6% 상승했음.
- 2009년 2/4분기 중단립종쌀(정곡) 도매시장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톤 당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3,280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3,213위안, 3,290위안, 3,298위안으로 다소 상승했음.
 - 6월 도매시장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했음.

1.1.2. 밀

- 보통 밀
 - 2009년 2/4분기 보통 밀 도매시장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 당 1,858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보통 밀 톤 당 평균 가격은 각각 1,873위안, 1,872위안, 1,830위안으로 약간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18.1%, 17.7%, 15.1%로 큰 폭으로 상승했음.
- 우량 밀
 - 2009년 2/4분기 우량 밀 도매시장가격도 소폭 하락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 당 1,989위안이었음.
 - 4월, 5월, 6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우량 밀 톤 당 평균 가격은 각각 1,998위안, 1,988위안, 1,980위안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21.6%, 21.2%, 17.4% 상승했음.

그림 3. 2009년도 월별 밀 도매시장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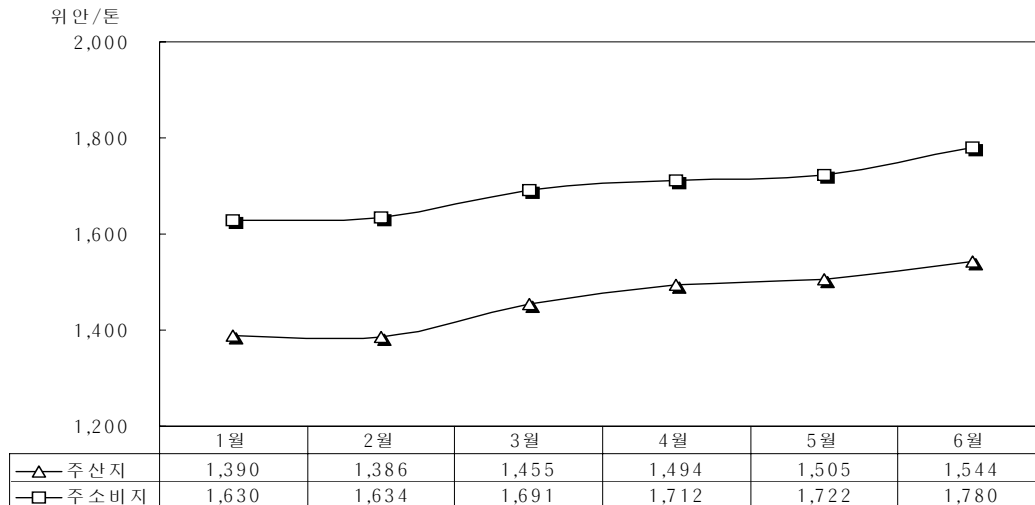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1.3. 옥수수

- 2009년 2/4분기 옥수수 도매시장가격은 3월 가격 반등 이후 정부의 수매비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음.
- 옥수수 주산지의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1,494위안, 1,505위안, 1,544위안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3.3%, 5.2%, 4.4% 하락했음.
 - 동북지역의 4월, 5월, 6월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1,570위안, 1,566위안, 1,534위안으로 소폭 상승했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9.5%, 1.0%, 1.4% 상승했음.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의 4월, 5월, 6월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1,485위안, 1,497위안, 1,553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8%, 9.8%, 6.6% 하락했음.
- 옥수수 주 소비지의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1,712위안, 1,722위안, 1,780위안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6.9%, 8.5%, 5.5% 하락했음.

그림 4. 2009년도 월별 옥수수 도매시장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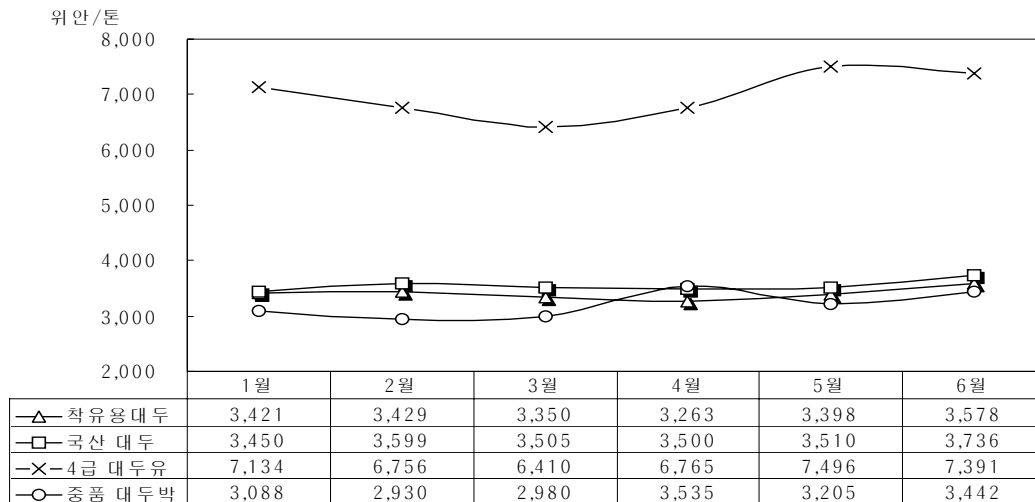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1.4. 대두

- 흑룡강성의 4월, 5월, 6월 착유용 대두의 수매가격은 각각 톤 당 3,263위안, 3,398위안, 3,578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30.6%, 31.0%, 30.0% 하락했음.
- 산둥지역의 4월, 5월, 6월 국산 대두의 공장 수매가격은 각각 톤 당 3,500위안, 3,510위안, 3,736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대폭 하락하여 각각 28.9%, 30.7%, 28.6% 하락했음.
- 산둥지역의 4월, 5월, 6월 4급 대두유 공장출고가격은 각각 톤 당 6,765위안, 7,496위안, 7,391위안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대폭 하락하여 각각 41.7%, 31.7%, 34.4% 하락했음.
- 산둥지역의 4월, 5월, 6월 중품 대두박 공장출고가격은 각각 톤 당 3,535위안, 3,205위안, 3,442위안으로 하락 후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3.3% 하락, 16.4% 하락, 21.6% 하락했음.

그림 5. 2009년도 월별 대두 및 관련 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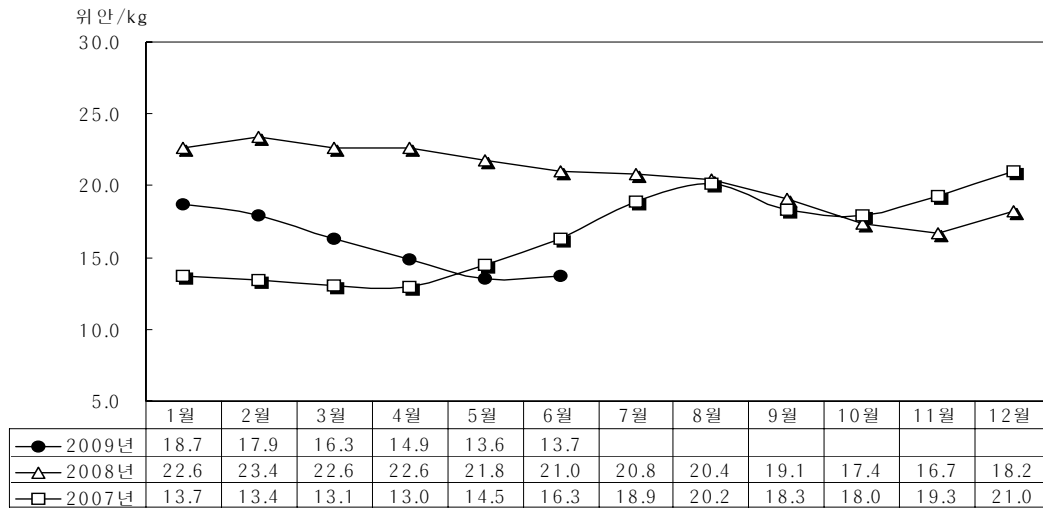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 축산물

1.2.1. 돼지고기

- 2009년 2/4분기에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
 -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14.90위안, 13.55위안, 13.69위안으로 5월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34.1%, 37.6%, 34.8% 상승했음.
- 6월 중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절강성(浙江省)으로 5.4% 상승했음.
 - － 6월 중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복건성(福建省)과 운남성(雲南省)으로 각각 kg 당 18.97위안, 17.23위안이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각각 10.0%, 3.4% 하락한 가격임.
 - － 6월 중 가격이 비교적 낮은 두 지역은 섬서성(陝西省)과 천진(天津)으로 각각 kg 당 12.09위안, 11.68위안이었음.

그림 6. 2009년도 월별 돼지고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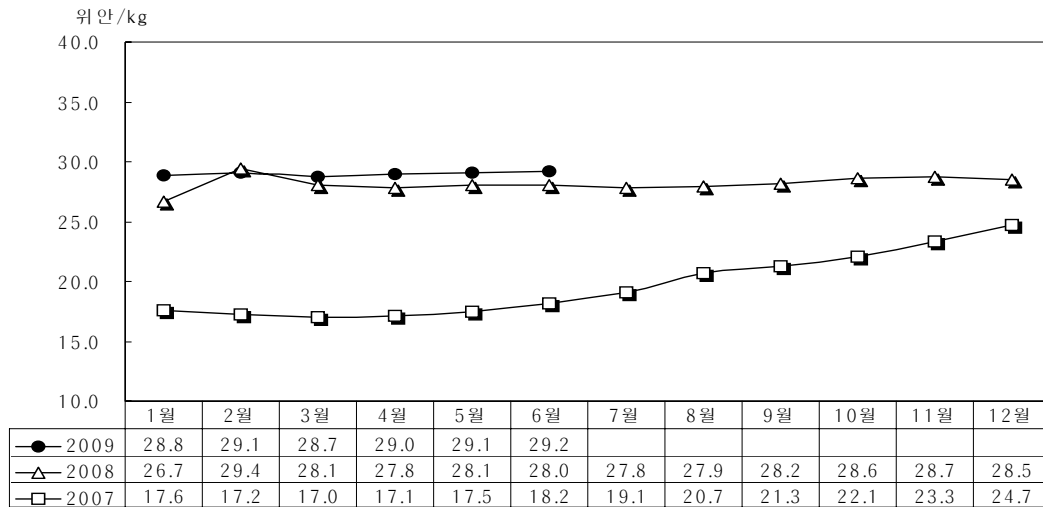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2. 소고기

- 2009년 2/4분기에 소고기가격은 소폭 상승했음.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28.95위안, 29.05위안, 29.19위안으로 다소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4.3%, 3.6%, 4.3% 상승했음.
- 6월 중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서 소고기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광서(廣西), 상해(上海), 산서(山西), 신강(新疆), 북경(北京), 산둥(山東), 사천(四川) 지역의 소고기 가격은 1~2%의 하락폭을 보임.
- 6월 중 소고기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운남(雲南) 지역으로 kg 당 38.00위안이었으며, 이는 전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
- 6월 중 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하북(河北)과 섬서(陝西) 지역으로 각각 kg 당 25.78위안, 25.60위안이었음.

그림 7. 2009년도 월별 소고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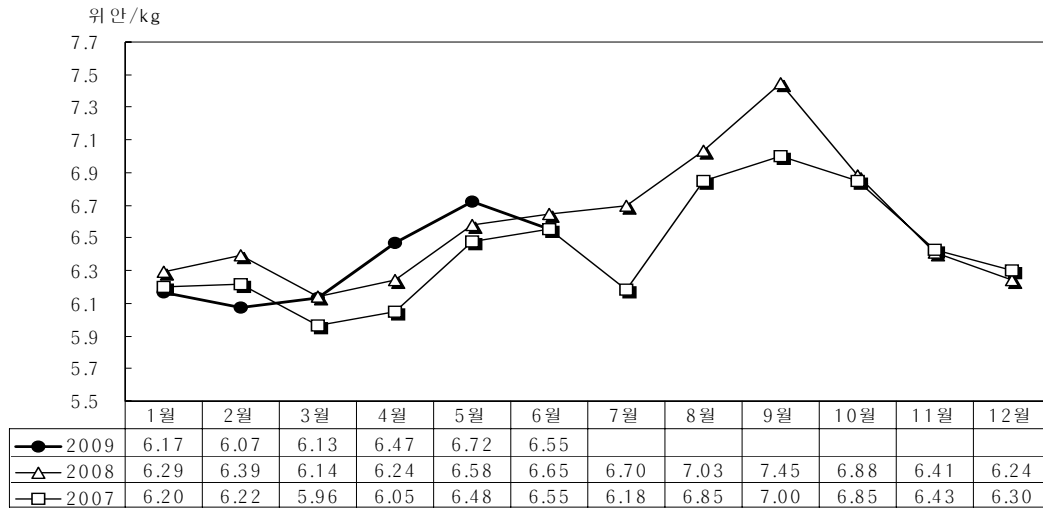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3.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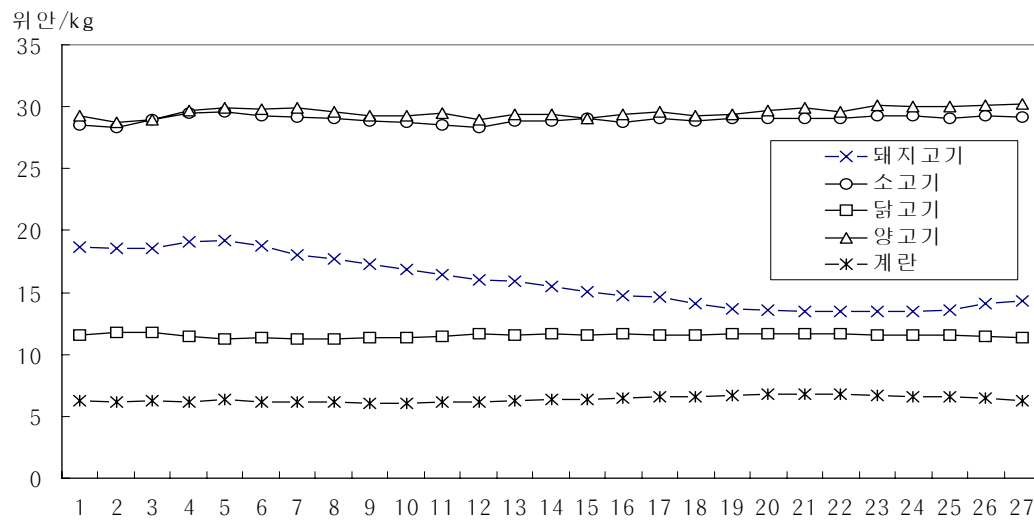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계란 가격은 소폭 상승 후 하락했음.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6.47위안, 6.72위안, 6.55위안으로 소폭 상승 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3.7% 상승, 2.1% 상승, 1.5% 하락했음.
 - 6월 중 계란 가격 하락은 기후의 영향으로 계란 수요가 소폭 하락한데 따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6월 중 섬서(陝西), 복건(福建), 내몽고(內蒙古), 녕하(寧夏) 등 4개 지역은 계란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하락함.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사천으로 하락폭은 6.84%임.
- 6월 중 전국적으로 계란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북(湖北)과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kg 당 7.50위안, 7.30위안이었음. 6월 중 계란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귀주(貴州)와 천진(天津)지역으로 각각 kg 당 6.10위안, 5.97위안이었음.

그림 8. 2009년도 월별 계란 가격 추이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9. 2009년도 주간 축산물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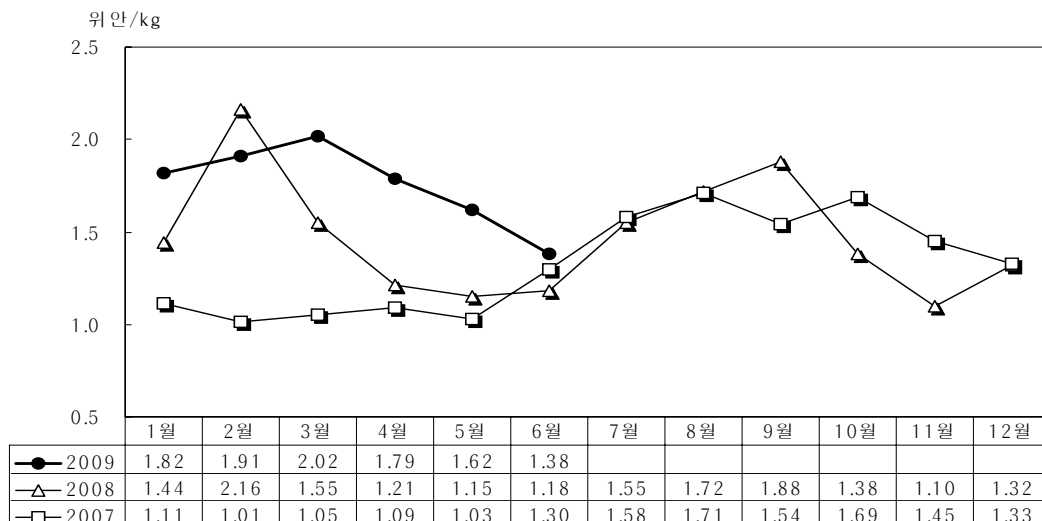
자료: 農業部. 2009.1-6. “2009年第1周~27周鮮活農產品國內價格周報”

1.3. 채소류

1.3.1. 엽채류

- 2009년 2/4분기 동안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등 4종 엽채류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1.79위안, 1.62위안, 1.38위안으로 3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갔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47.9%, 40.9%, 17.0%로 대폭 상승했음.
- 6월 중 복건(福建), 상해(上海), 광둥(廣東), 광서(廣西), 절강(浙江) 5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엽채류 가격은 하락했으며 가장 낙폭이 큰 곳은 37.43% 하락했음.
- 복건(福建)지역이 kg 당 2.66위안으로 가장 높았고(전월 대비 9.65% 상승), 내몽고(內蒙古), 요녕(遼寧), 하북(河北) 3개 지역은 kg 당 1.0위안 이하였음.
- 6월 중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각각 kg 당 0.91위안, 1.57위안, 1.95위안, 1.21위안으로, 시금치 가격이 전월 대비 11.37%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배추, 셀러리, 청경채는 각각 전월 대비 22.4%, 23.86%, 17.78% 하락했음.

그림 10. 2009.1~6월 엽채류 가격 동향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표 1. 주요 엽채류의 월간 도매시장 가격, 2009.5~6월

구분	도매시장 가격(위안/kg)		6월 증감율(%)	
	2009.5	2009.6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시금치(菠菜)	1.75	1.95	11.37	5.27
셀러리(芹菜)	2.07	1.57	-23.85	24.90
청경채(油菜)	1.48	1.21	-17.78	7.66

자료: 農業部. 2009.7.28. “2009年6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1.3.2. 과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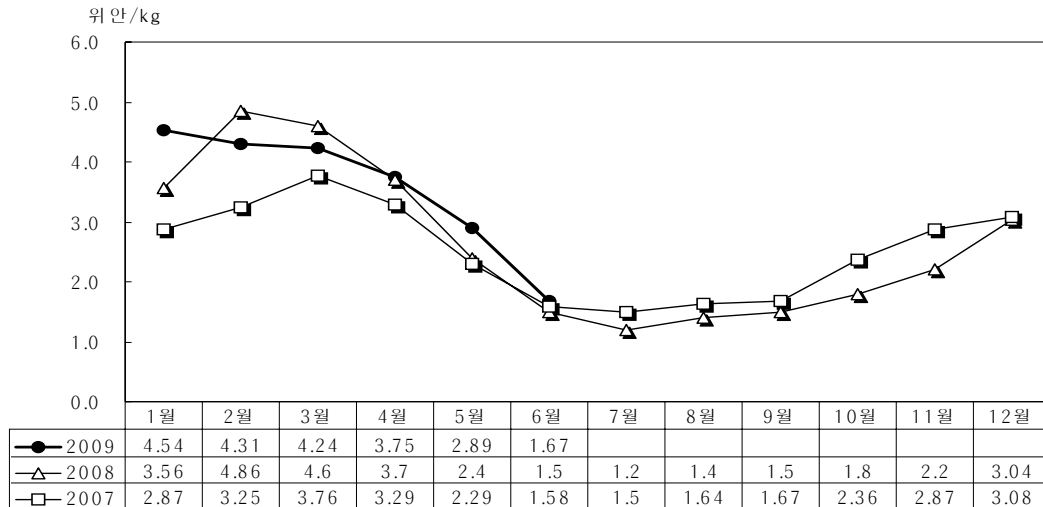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동안 배추, 청고추,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오이, 가지 등 5종 과채류의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2009년 1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음.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3.75위안, 2.89위안, 1.67위안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1.3%, 20.4%, 11.3% 상승했음.
- 6월 과채류 가격은 복건(福建)지역이 kg 당 3.95위안으로 가장 높았고(전월 대비 10.58% 상승), 하북(河北), 하남(河南)지역이 가장 낮은 kg 당 1.20위안, 1.14위안이었음.
- 5종 과채류인 토마토, 콩꼬투리, 오이, 가지, 청고추 가격은 kg 당 각각 1.71위안, 2.12위안, 1.18위안, 1.44위안, 1.99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35.14%, 419.46%, 41.83%, 44.88%, 40.06% 하락했음.

표 2. 주요 과채류의 월간 도매시장 가격, 2009.5~6월

구분	도매시장 가격(위안/kg)		6월 증감율(%)	
	2009.5	2009.6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콩꼬투리(豆角)	4.20	2.12	-49.46	2.21
오이(黃瓜)	2.03	1.18	-41.83	17.97
가지(茄子)	2.62	1.44	-44.88	-13.22
피망(青椒)	3.31	1.99	-40.06	22.48
토마토(西紅柿)	2.64	1.71	-35.14	26.53

자료: 農業部. 2009.7.28. “2009年6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그림 11. 2009년도 월별 과채류 가격 변화 추이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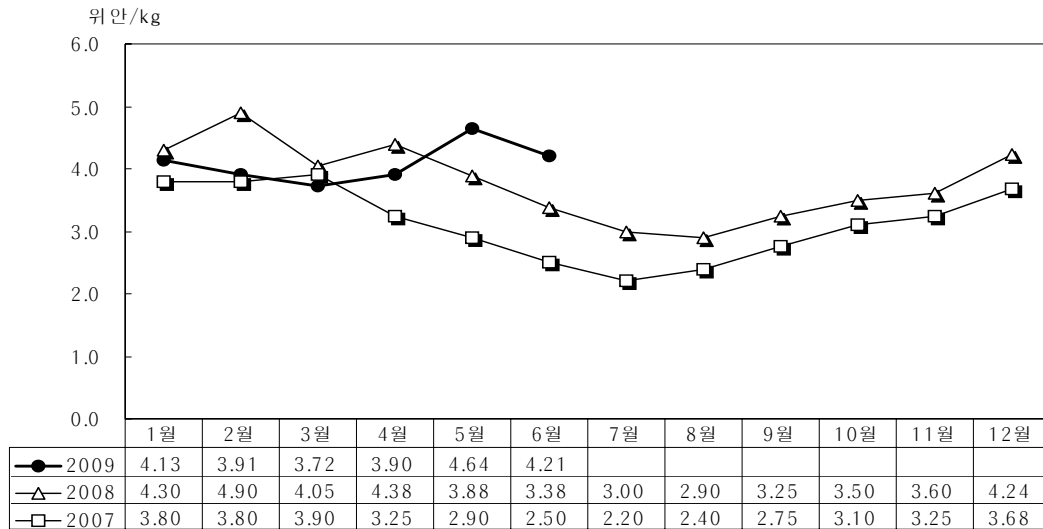
1.4. 과일류

- 2009년 2/4분기 수박, 배(鴨梨), 사과(부사), 바나나, 파인애플, 여지, 망고 등 7종 과일류 도매시장가격은 대폭 증가 후 소폭 감소했음.
- 4월, 5월, 6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kg당 3.90위안, 4.64위안, 4.21위안으로 진폭이 컸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 각각 11.0% 하락, 19.6% 상승, 24.6% 상승했음.
- 6월 과일류 가격은 신강(新疆)지역이 kg 당 6.37위안으로 가장 높았고(전월 대비 0.04% 하락), 운남(雲南)과 안휘(安徽)지역은 각각 kg 당 2.63위안, 2.43위안으로 가격이 비교적 낮았음.
- 6월 과일류 가격 하락폭이 20%가 넘는 지역은 사천(四川), 천진(天津), Ningxia(寧夏), Hebei(河北), Shaanxi(陝西), Anhui(安徽) 지역임.
- 6월 중 수박, 배, 부사,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kg 당 평균 가격은 각각 1.69위안, 3.01위안, 6.19위안, 4.44위안, 8.74위안, 3.65위안으로 수박, 바나나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46.96%, 2.98% 하락했고, 배(鴨梨), 부사, 사과, 망고, 파인애플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6.64%, 18.28%, 2.04%, 2.48% 상승했음.

- 망고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19%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품종의 과일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고, 그 중 부사는 28.02% 상승했음.

그림 12. 2009년도 월별 과일류 가격 변화 추이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표 3. 과일 상품의 월간 도매시장 가격, 2009.5~6월

구분	도매시장 가격(위안/kg)		6월 증감율(%)	
	2009.5	2009.6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수박	3.18	1.69	-46.96	2.20
배(鴨梨)	2.82	3.01	6.64	9.12
사과(부사)	5.24	6.19	18.28	28.02
바나나	4.57	4.44	-2.98	24.75
파인애플	3.56	3.65	2.48	12.15
여지(荔枝)	13.35	8.36	-37.37	-26.18
망고(芒果)	8.57	8.74	2.04	-1.19

자료: 農業部. 2009.7.28. “2009年6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2.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PPI)

- 전국 31,000개 농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산물 생산자가격 조사 결과 2009년도 1~6월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2% 하락하였음.
- 농산물 생산자가격의 상승률 감소는 2008년 1/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1/4분기 이후부터는 생산자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경종작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9%, 12.5%, 12.7%, 2.3%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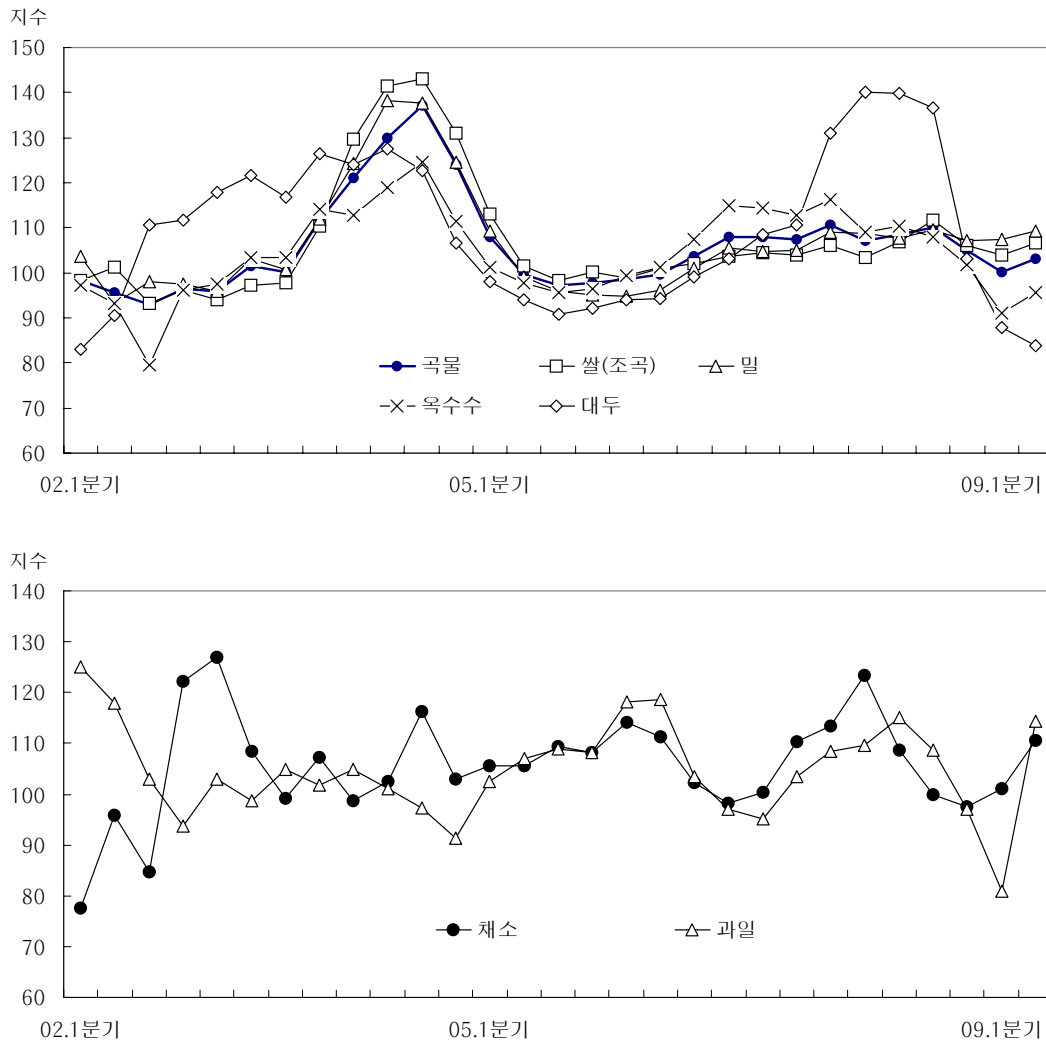
표 4. 2009년도 분기별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

구 분		2008				2009		
		1/4	2/4	3/4	4/4	1/4	2/4	1~6월
생산자가격 총지수		125.54	121.15	112.56	101.61	94.14	93.39	93.78
경 종 작 물	경종작물 전체	114.78	113.27	109.99	101.53	95.66	100.97	98.06
	식량작물 전체	111.38	112.62	113.15	104.31	98.43	100.7	99.79
	곡물 전체	107.06	108.5	109.96	104.92	100.16	103.23	101.35
	밀	108.65	107.76	109.55	107.2	107.29	109.34	108.69
	벼	103.48	106.93	111.72	105.96	103.95	106.59	104.82
	옥수수	108.91	110.29	107.83	101.8	90.94	95.52	92.57
	두류 전체	136.48	135.92	132.87	102.15	88.21	85.2	86.54
	대두	140.11	139.84	136.53	103.16	87.96	83.81	85.59
	서루	112.99	115.88	110.78	100.12	98.32	102.12	100.88
	유지작물	133.43	140.08	132.16	102.33	84.29	75.82	77.54
	면화	112.24	112.1	100.56	86.64	78.06	87.64	81.31
	식용 당류	96.47	99.31	100.11	104.29	101.46	94.8	101.18
	담배	114.24	114.32	119.13	120.36	101.03	100.71	100.91
	채소	123.36	108.61	99.83	97.59	101.09	110.62	106.44
	과일	109.71	114.97	108.62	97.01	80.84	114.4	90.56
	차	108.89	84.21	75.63	82.19	92.56	97.91	94.09
축 산 물	축산물 전체	144.94	135.15	115.87	100.21	92.16	82.70	87.34
	돼지	162.07	148.36	117.42	93.5	84.78	68.48	77.94
	소	137.27	130.75	121.6	113.37	101.74	99.41	100.44
	양	136.9	128.85	122.53	110.17	100.32	100.25	100.29
	가금	117.93	115.2	111.13	105.71	102.37	101.64	102.01
	가금알	115.87	112.97	110.12	106.92	101.98	102.6	102.33
	유제품	136.76	131.66	124.73	108.68	87.87	86.67	87.21

주: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3. 주요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 변화 추이, 2002.1분기~2009.2분기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전년 동기=100임.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09년 1~6월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했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한 반면, 2분기는 0.7% 상승했음.

－ 품종별로는 곡물 생산자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1.4% 상승했으며, 이 중 밀과 벼는 각각 8.7%, 4.8% 상승한 반면, 옥수수는 7.4% 하락하였음.

－ 또한 두류 전체는 13.5%, 대두는 14.4% 하락한 반면, 서류는 0.9% 상승했음.

- 2009년 1~6월 채소류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한 반면, 과일류와 유지작물은 각각 0.4%, 22.5% 하락하였음.
- 축산물의 경우 2009년 1~6월 돼지(총중량)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2.1% 하락한 반면, 소고기와 가금은 각각 0.4%, 2.01% 상승했음.
 - 가금알은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한 반면, 유제품류는 12.8% 하락했음.

[참고자료]

農業部 4~6월 “稻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4~6월 “小麥市場監測信息”

農業部 4~6월 “玉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4~6월 “大豆市場監測信息”

農業部 2009.7.28. “2009年6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무역 동향

1. 한 · 중 간 농산물무역

- 2009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량은 149.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수출액은 214.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했음.

표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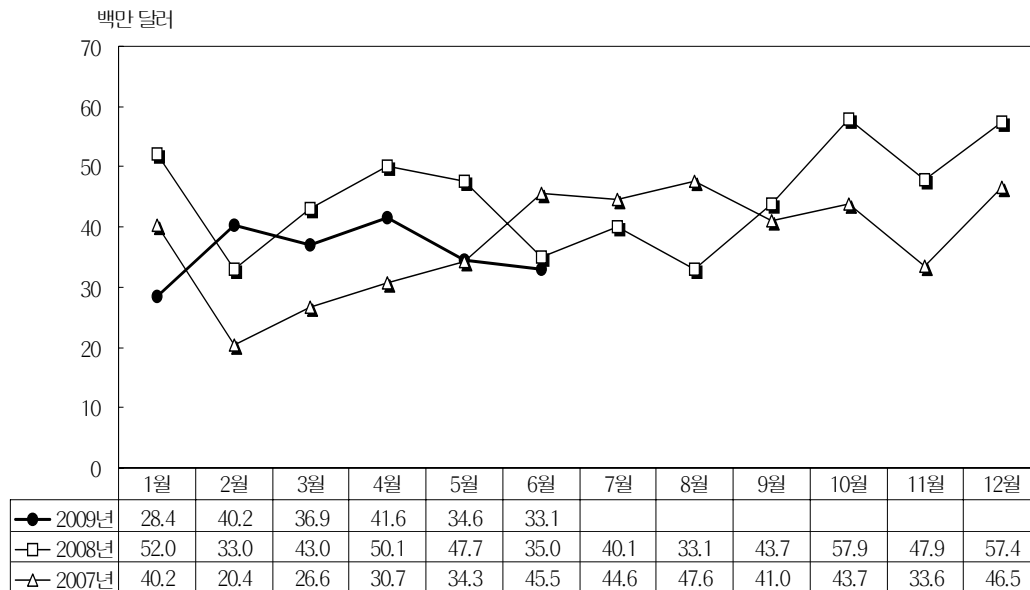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연간	1-3월	1-6월
수출 총액	335.6	452.1	121.0	245.1	358.1	536.6	105.4	214.4
- 증가율(%)	△1.2	34.7	36.3	23.1	8.2	18.7	53.4	18.3
· 농산물	216.4	257.4	71.6	135.8	197.6	300.3	61.3	140.6
- 증가율(%)	64.5	56.9	59.2	55.4	55.1	56.0	58.2	65.6
· 임산물	37.7	30.4	2.7	8.1	22.1	31.5	2.7	7.0
- 증가율(%)	11.2	△19.4	4.7	37.7	17.8	3.6	0.3	△13.6
· 축산물	5.3	6.8	2.4	5.4	8.7	14.5	2.2	6.6
- 증가율(%)	△13.9	27.4	56.2	63.5	71.6	113.4	△9.8	20.9
· 수산물	76.1	157.5	44.4	95.8	129.8	190.3	39.2	60.2
- 증가율(%)	△29.9	106.9	141.4	55.4	11.1	20.8	△11.7	△37.1
수입 총액	3,236.1	4,173.4	1,025.8	2,016.2	2,888.8	3,627.1	826.9	1,805.6
- 증가율(%)	2.6	29.0	△18.0	△9.0	△6.7	△13.1	△19.4	△10.4
· 농산물	1,550.8	2,375.2	571.8	1,095.5	1,537.0	1,950.0	439.0	914.5
- 증가율(%)	△11.7	53.2	△25.9	△14.4	△14.1	△17.9	△23.2	△16.5
· 임산물	554.8	625.0	145.5	308.9	475.7	587.8	186.3	458.5
- 증가율(%)	42.9	12.7	△5.7	△4.1	0.9	△6.0	28.0	48.4
· 축산물	93.5	100.5	27.6	51.4	71.4	85.0	10.9	21.5
- 증가율(%)	31.3	7.5	6.9	△2.4	△3.1	△15.5	△60.4	△58.1
· 수산물	1,036.9	1,072.7	280.8	560.5	804.7	1,004.6	190.6	411.1
- 증가율(%)	10.5	3.4	△6.4	△0.2	5.7	△6.3	△32.1	△2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 2009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농산물이 140.6백만 달러로 65.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산물이 60.2백만 달러로 28.1%, 임산물 7백만 달러로 3.3%, 축산물이 6.6백만 달러로 3.1%를 차지했음.
-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5.6%, 20.9% 증가한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7.1%, 13.6%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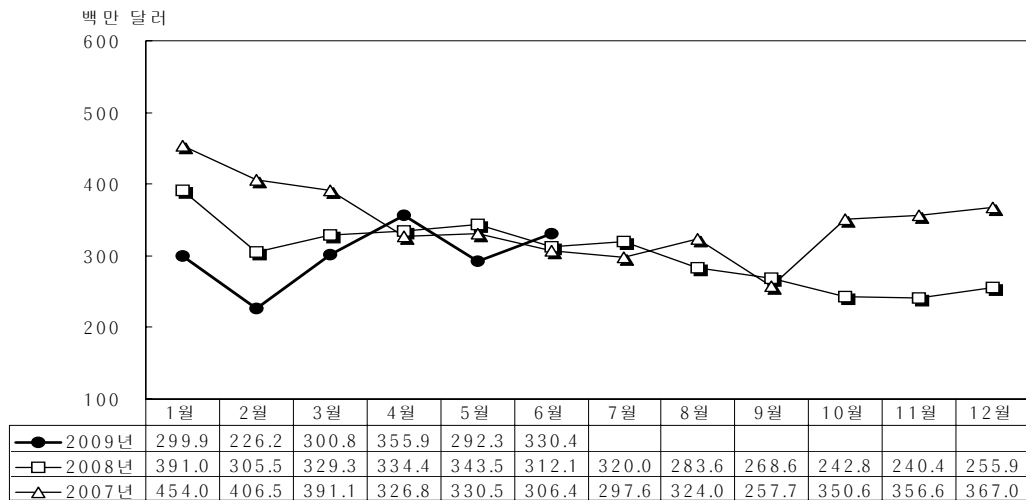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 2009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량은 3,238.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고, 수입액은 1,805.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했음.
- 2009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액 가운데 농산물이 914.5백만 달러로 50.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임산물이 458.5백만 달러로 25.4%, 수산물이 411.1백만 달러로 22.8%, 축산물이 21.5백만 달러로 1.2%를 차지했음.
- 임산물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48.4% 증가한 이외에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5%, 58.1%, 26.7% 수입이 감소했음.

그림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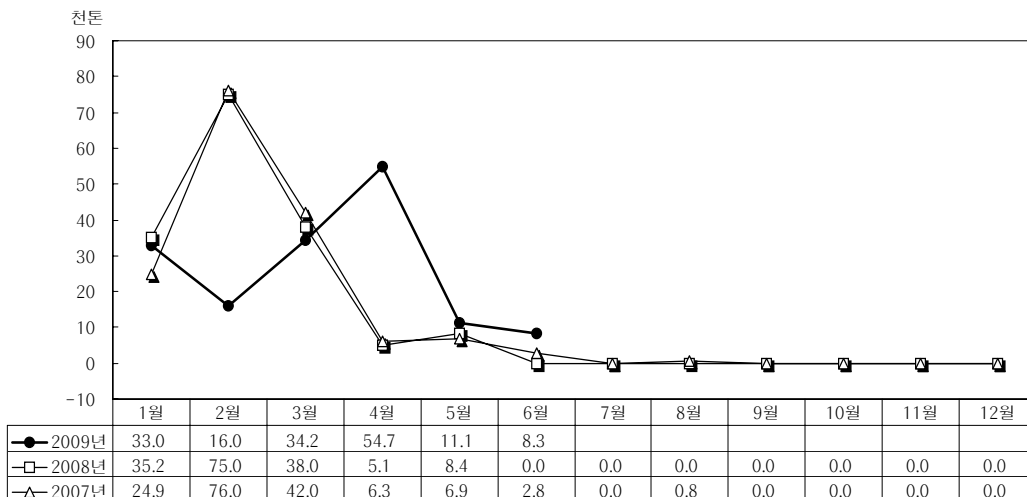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1. 쌀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쌀(AG11101) 수입은 157.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5,28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했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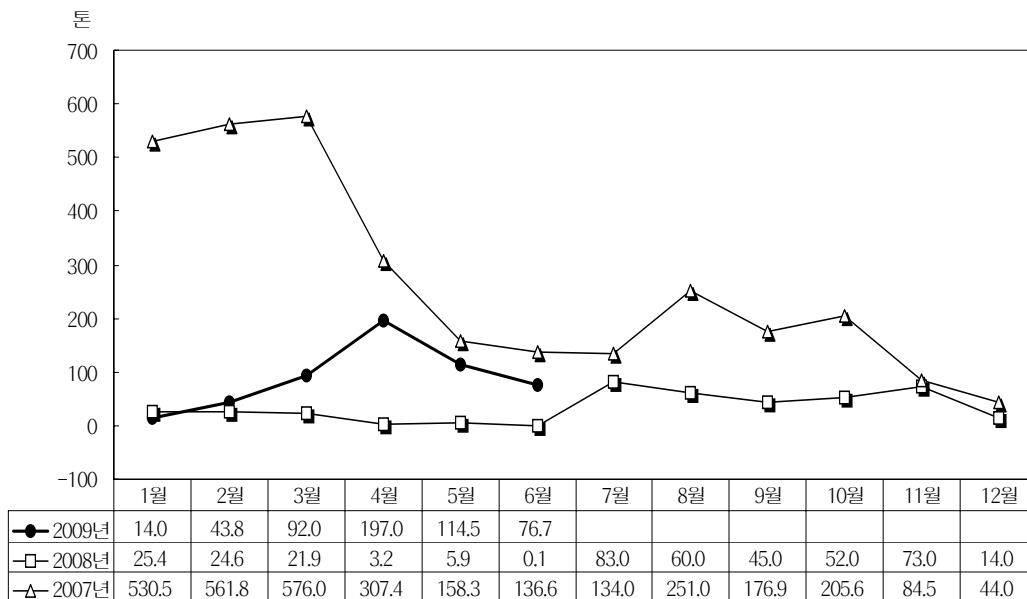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2. 옥수수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AG11105) 수입은 537.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3%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27.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9% 감소했음.
- 2009년 1/4분기에는 중국산 옥수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4월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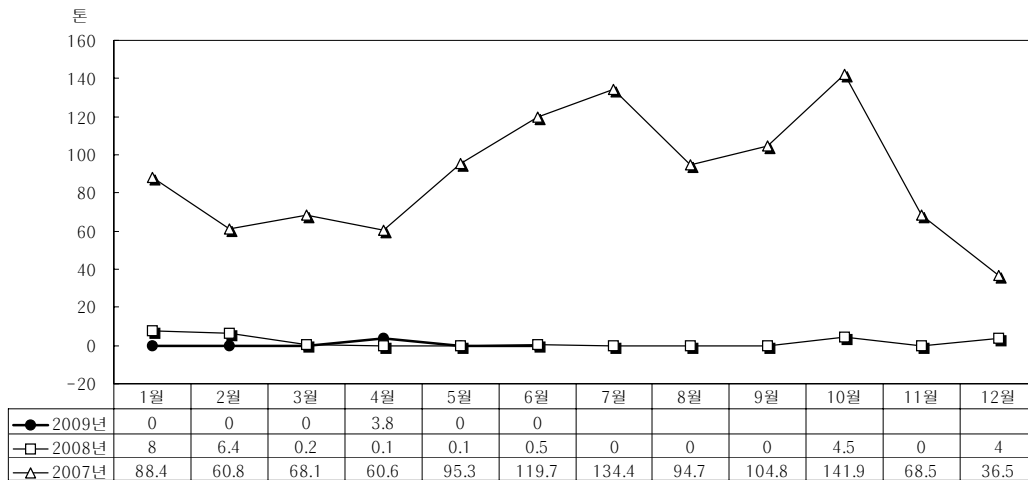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3. 밀

- 2009년 1/4분기에는 중국산 밀(AG11103) 수입 실적이 없었으며, 2/4분기에도 4월 중 3.8천 톤이 수입된 것 이외에는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임.
- 2007년 말 중국 정부의 곡물수출 제한 조치로 2008년도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은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음.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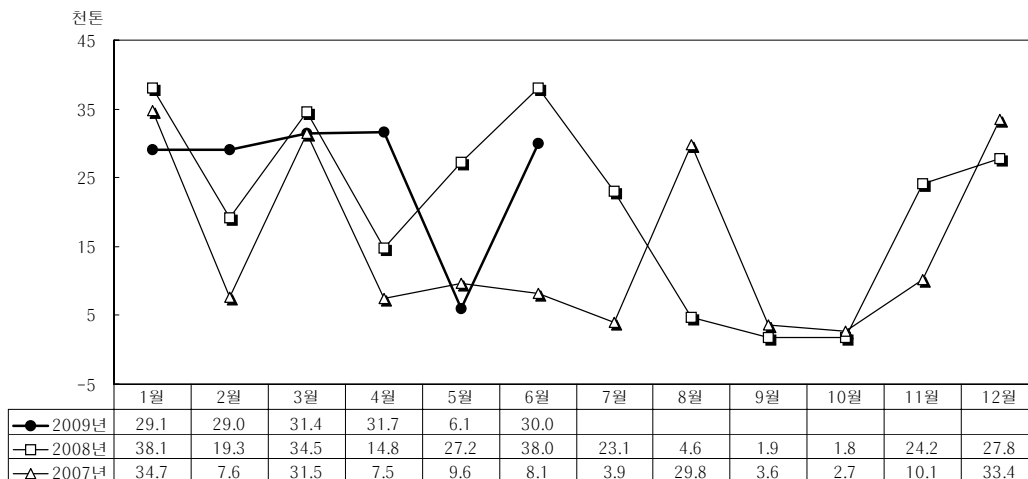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4. 대두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대두(AG11301) 수입은 157.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고, 수입액도 11,82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음.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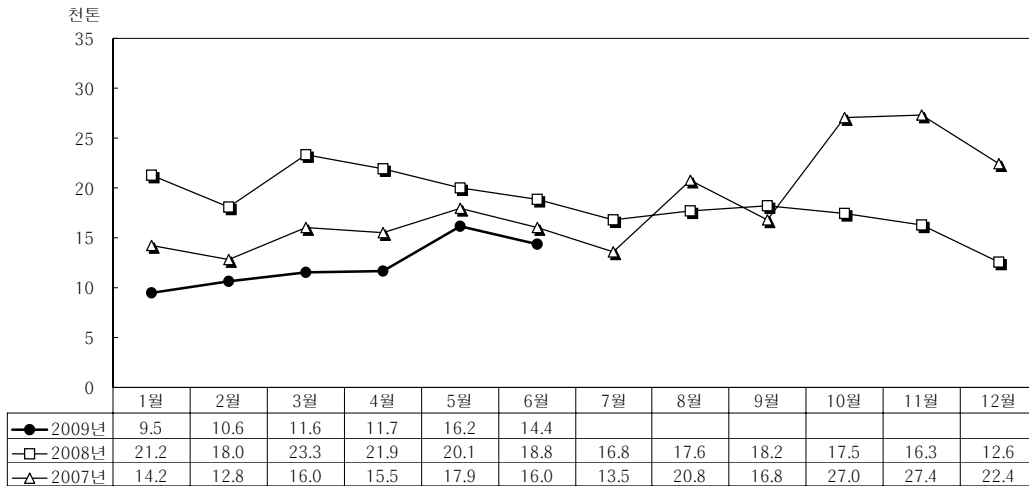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5.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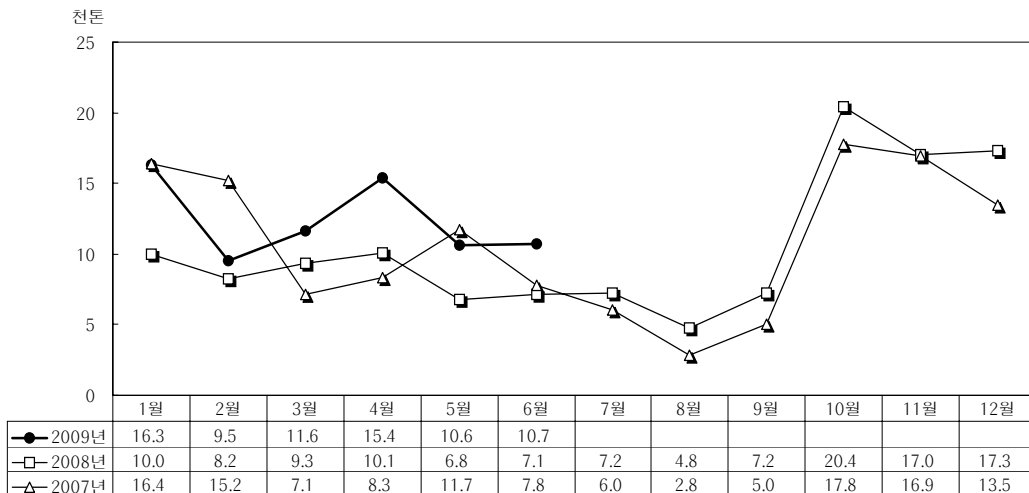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김치(AG12105) 수입은 7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했고, 수입액도 3,3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했음.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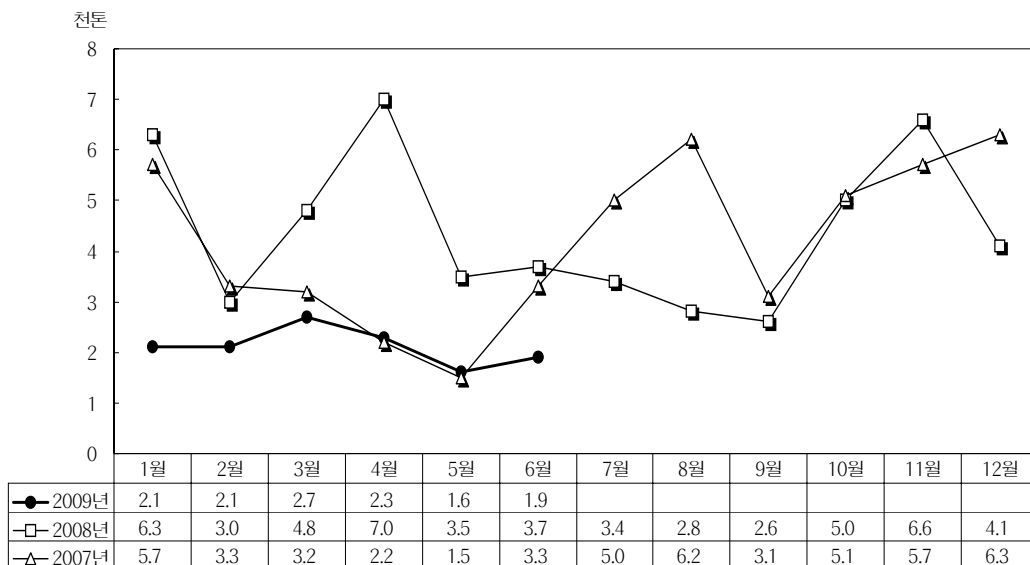
1.6. 고추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고추(AG12161) 수입은 74.0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음. 수입액은 3,93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음.
- 2009년 2월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여 4월 15.4천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6월 수입량은 10.7천 톤 수준임.

1.7. 마늘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AG12144) 수입은 12.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550.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6% 감소했음.
- 2009년 1월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여 3월 2.7천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6월 수입량은 1.9천 톤 수준임.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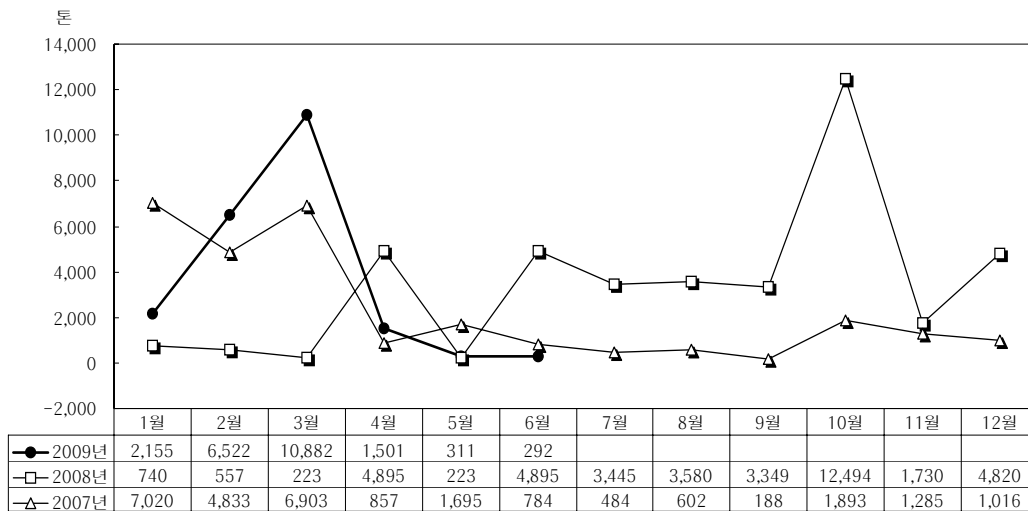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8. 양파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양파(AG12141) 수입은 21.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9.8% 증가했고, 수입액도 5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2% 증가했음.
- 2009년 1월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여 3월 10.9천 톤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급감하여 6월 수입량은 292톤 수준임.

그림 10.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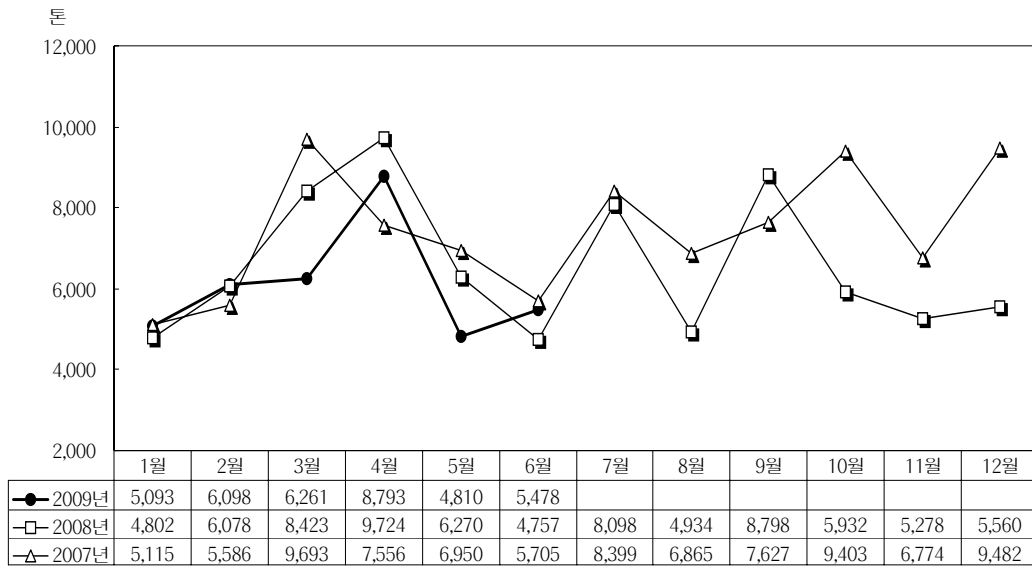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9. 당근

- 2009년 1~6월 한국의 중국산 당근(AG12123) 수입은 36.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고, 수입액도 1,54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했음.
- 2009년 1월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여 4월 8.8천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6월 수입량은 5.5천 톤 수준임.

그림 11.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 2009년 1~5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33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음.
 - 수출액은 14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고, 수입액도 18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했음.
 - 2009년 5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7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함. 수출액은 3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함.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감소함.
- 2009년 1월~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유럽, 미국, 홍콩, 한국 순임. 수출액은 각각 15.9억 달러, 15.2억 달러, 10.4억 달러, 7.5억 달러, 6.2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21.7%, 4.3%, 0.6%, 20.1% 감소한 것임.

표 2.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09.1~3

단위: 만 달러, %

국가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3월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아시아	180,057.8	-13.6	134,915.2	-10.7	178,684.3	-6.3
홍콩	23,437.4	-9.2	23,715.9	-1.6	27,892.2	-0.6
인도네시아	8,094.4	-4.6	6,840.5	1.9	8,046.6	1.0
일본	64,296.0	-13.5	36,200.6	-17.7	59,461.5	-4.4
말레이시아	10,980.3	-20.0	6,865.2	-8.9	8,379.7	-3.7
한국	20,791.8	-36.7	21,169.8	-25.9	20,888.7	-29.1
아프리카	11,391.4	-7.7	8,637.8	-4.6	12,375.5	-9.2
알제리	1,681.4	-1.4	709.0	-4.9	1,199.5	2.6
모로코	1,038.9	-7.6	1,102.9	16.7	1,375.5	8.0
나이지리아	1,627.3	34.1	763.8	13.3	839.3	-8.1
남아프리카공화국	1,859.7	-32.3	1,483.3	-26.0	2,669.8	0.4
유럽	59,200.5	-24.0	35,199.2	-29.5	57,684.0	-21.7
독일	13,769.2	-10.2	7,672.8	-17.0	13,569.1	-7.4
네덜란드	7,566.0	-39.7	4,915.7	-40.2	6,988.8	-34.1
러시아연방	8,097.1	-35.6	5,908.5	-40.3	8,417.3	-36.9
남아메리카	10,082.2	18.9	7,827.7	11.0	7,430.6	-0.9
브라질	1,026.9	-23.6	1,005.3	-41.6	839.2	-48.5
멕시코	3,255.6	-10.9	2,434.5	-7.2	2,699.0	-3.7
베네수엘라	3,208.6	954.9	1,011.3	338.5	887.3	264.3
북아메리카	48,671.1	-3.0	26,373.1	-13.6	43,123.1	-4.9
캐나다	5,540.3	-11.6	3,474.9	-14.8	4,856.5	-9.3
미국	43,130.7	-1.7	22,898.3	-13.4	38,265.1	-4.3
대양주	5,310.8	-29.3	3,217.7	-38.9	4,683.8	-33.2
오스트레일리아	4,416.6	-10.8	2,696.5	-21.0	3,952.8	-14.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3.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09.1~3

단위: 만 달러, %

국가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3월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아시아	55,464.4	-51.8	69,861.6	-40.2	80,959.5	-38.3
인도	3,926.3	-83.2	5,005.1	-78.5	4,882.5	-78.2
인도네시아	12,166.1	-43.8	21,367.6	-35.3	12,352.6	-44.7
말레이시아	10,934.6	-60.8	14,807.4	-47.0	24,907.7	-44.0
한국	2,086.2	-16.0	2,065.7	0.4	2,317.1	-3.2
태국	9,988.7	-36.8	7,943.6	-29.5	9,255.9	-23.7
베트남	4,881.8	19.7	4,753.7	40.3	8,967.5	79.9
아프리카	3,385.1	-44.5	3,702.6	-40.2	5,591.2	-39.8
에티오피아	850.0	35.4	1,060.4	33.3	1,188.5	39.4
말라위	491.3	3,791.4	815.2	10,249.1	187.3	1,242.9
남아프리카공화국	1,041.2	1.1	979.9	0.6	1,624.8	5.1
유럽	29,381.4	-35.0	29,683.4	-24.8	42,147.3	-18.5
덴마크	2,368.8	-30.1	2,281.6	-17.5	2,533.5	-26.9
프랑스	7,985.5	-39.7	8,222.7	-27.2	8,204.9	-27.6
러시아연방	5,579.2	-43.2	8,131.9	-31.5	16,990.1	-13.4
남아메리카	41,830.3	-53.9	38,466.3	-49.7	64,338.8	-38.1
아르헨티나	21,478.6	-67.5	15,401.8	-68.6	33,510.7	-56.4
브라질	11,133.6	-19.0	10,111.0	8.6	11,649.2	4.0
북아메리카	136,108.6	-18.2	156,700.1	-7.0	180,074.4	-3.0
캐나다	12,090.2	53.0	18,207.0	18.6	19,285.7	24.9
미국	123,518.0	-22.0	138,238.1	-9.4	160,525.2	-5.6
대양주	23,917.3	-24.5	23,738.4	-21.6	33,516.5	-16.6
오스트레일리아	12,782.5	-44.7	13,117.3	-42.6	21,590.0	-33.0
뉴질랜드	10,857.5	27.8	10,607.2	37.5	11,851.5	29.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 2009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로 수입액은 각각 4.2억 달러, 1.0억 달러, 7.0억 달러, 5.0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18.5%, 56.4%, 44% 감소한 것임.
- 2009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복건(福建), 요녕(遼寧), 절강(浙江)으로 수출액은 각각 20.0억 달러, 9.8억 달러, 7.8억 달러, 6.8억 달러, 6.4억 달러임. 산둥(山東), 요녕(遼寧), 절강(浙江)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7.6%, 12.6% 감소했고, 광둥(廣東), 복건(福建) 지역은 각각 0.4%, 6.7% 증가했음.
- 2009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상해(上海), 강소(江蘇), 북경(北京)으로 수입액은 각각 16.4억 달러, 16.0억 달러, 12.7억 달러, 11.9억 달러, 92,867.1만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12.4%, 25.4%, 5.8%, 53.4% 감소한 것임.

표 4.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36,157.2	10,810.2	-43.7	-13.7
한국	77,008.0	6,187.6	-49.2	-17.6
일본	29,898.4	2,914.3	-9.2	14.2
북한	12,833.6	463.5	-36.1	-31.0
홍콩	10,423.5	628.4	-1.1	27.9
인도네시아	943.7	182.8	129.0	223.0
아프리카	43,246.5	2,145.4	-76.4	-54.9
라이베리아	16,969.2	678.8	-66.3	-41.4
남아프리카공화국	8,904.0	498.5	91.3	213.2
나이지리아	10,500.0	677.4	-54.3	-9.7
탄자니아	5,515.5	220.6		
유럽	3,411.0	153.3	-82.6	-81.0
러시아연방	2,720.0	112.1	-83.2	-83.0
남아메리카	371.3	24.3	-98.7	-97.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2.2. 품목별 수출입

2.2.1 곡물

가. 쌀

- 2009년 1~3월 중국의 쌀 수출은 183.2천 톤으로 전년 대비 69.5% 감소했음. 수출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0% 감소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716.8 달러로 전년 대비 76.9% 상승했음.
- 2009년 3월 중국 쌀 수출은 68.2천 톤으로 전월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73.3% 감소했음.
- 수출액은 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48.1% 감소했으며, 평균 단가는 톤당 667.8 달러로 전월 대비 11.3%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94.1% 상승했음.

표 5. 2009년도 중국의 지역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139,104.0	10,233.6	-70.5	-44.2
천진(天津)	222.3	43.2		
요녕(遼寧)	1,678.0	67.2	-81.0	-79.4
길림(吉林)	19,173.6	954.9	-66.9	-66.2
흑룡강(黑龍江)	21,256.0	1,487.9	-51.4	-19.7
강소(江蘇)	5.7	0.4		
안휘(安徽)	504.3	90.6	68.0	102.6
하남(河南)	0.1	0.0		
호북(湖北)	289.0	66.3	12.0	43.6
호남(湖南)	50.0	9.5	-91.9	-93.3
광둥(廣東)	20.0	9.7	-96.1	-66.9
광서(廣西)	60.9	4.1	-87.9	-88.5
사천(四川)	852.1	165.6	-16.6	30.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 2009년 1~3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 일본, 라이베리아, 북한, 나이지리아 순으로, 각각 7.7만 톤, 3.0만 톤, 1.7만 톤, 1.3만 톤, 1.1만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2%, 9.2%, 66.3%, 36.1%, 54.3% 감소한 것임.
- 2009년 1~3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北京),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 지역으로 각각 13.9만 톤, 2.1만 톤, 1.9만 톤, 0.2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5%, 51.4%, 66.9%, 81.0% 감소한 것임.

나. 옥수수

- 2009년 1~3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10.5천 톤으로 전년 대비 83.8% 감소했음. 수출액은 248.1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2%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36.9 달러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음.
- 2009년 3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7.8천 톤으로 전월 대비 191.3%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9.6% 감소했음. 수출액은 184.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96.4%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4.0% 감소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232달러로 전월 대비 1.8%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0% 하락했음.
- 2009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옥수수 수출은 10.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4% 감소함. 수출 금액은 248.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9% 감소함. 평균단가는 톤당 236.9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함.

표 6.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0,473.1	248.1	-78.4	-79.9
대만	6,285.2	145.0		
북한	4,161.5	96.3	-91.0	-91.8
파키스탄	0.0	0.0		
일본	26.3	6.8	-98.9	-87.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 2009년 1~3월 중국 옥수수(玉米)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北京), 요녕(遼寧), 내몽고(內蒙古) 지역으로 각각 6.3천 톤, 2.5천 톤, 1.7천 톤을 수출하였음. 북경은 전년 동기 대비 355.7% 증가한 것이며, 요녕(遼寧), 내몽고(內蒙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91.5% 감소한 것임.

표 7. 2009년도 중국의 지역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6,285.3	145.0	355.7	366.7
천진(天津)	0.0	0.0	-100.0	-100.0
내몽고(內蒙古)	1,700.0	36.8	-91.5	-92.6
요녕(遼寧)	2,461.5	59.5	-94.0	-93.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다. 밀

- 2009년 1~3월 중국 소맥 수출은 0.1톤으로 전년 대비 100.0% 감소했음. 수출액은 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0.0%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440.0달러로 전년 대비 81.5% 하락했음.

2.2.2 축산물

- 2009년 1~5월 축산물 수출액은 14.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24.3억 달러로 25.9% 감소하여 9.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0.3% 감소한 것임.

가. 돼지고기

- 2009년 1~3월 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20.2천 톤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음. 수출액은 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3,233.4달러로 전년 대비 1.6% 하락했음.

표 8.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20,154.0	6,517.4	8.4	6.7
홍콩	17,403.6	5,589.4	26.4	21.4
마카오	920.0	283.1	9.3	5.7
싱가포르	604.7	252.8	261.2	151.7
키르기스스탄	1,712.2	376.8	-17.5	-16.7
터키	25.0	6.3	0.0	-16.3
몽골	5.0	1.9		
브루나이	24.5	7.2		
유럽	25.0	7.3	-50.0	-54.7
아르메니아	25.0	7.3	-50.0	-54.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29.2	259.9	-63.8	-49.5
독립국가연합	1,196.2	384.1	-18.6	-18.0
중동	25.0	6.3	-30.6	-40.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 2009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은 20.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함. 수출 금액은 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함. 평균단가는 톤당 3,233.8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 2009년 1~3월 중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 지역은 호남(湖南), 광둥(廣東), 사천(四川), 길림(吉林) 지역으로 각각 5.6천 톤, 5.0천 톤, 3.6천 톤, 1.0천 톤을 수출했음. 호남(湖南), 광둥(廣東)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 54.5% 증가했음.

나. 닭고기 및 제품

- 2009년 1~3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54.3천 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음.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3,045.3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상승했음.
- 2009년 3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19.6천 톤으로 전월 대비 27.8%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음. 수출액은 0.6억 달러로 전월 대비 36.9%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3,035.5 달러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했음.

표 9.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53,417.8	16,322.0	-23.8	-14.9
일본	23,749.0	9,931.2	-29.4	-12.9
홍콩	23,973.4	5,028.8	-10.6	-0.5
한국	698.3	252.8	-82.4	-83.2
키르기스스탄	1,091.9	218.5	152.8	152.3
마카오	710.8	183.7	8.3	30.4
바레인	395.1	76.5	-70.1	-74.3
이라크	448.1	77.5	-3.0	-12.2
말레이시아	1,859.1	449.0	-25.1	-16.4
아프리카	31.7	6.0	-87.2	-89.0
유럽	784.1	194.0	67.4	119.7
네덜란드	294.3	87.6		
아제르바이잔	266.2	42.9	-3.0	-15.5
북아메리카	1.8	0.5	-85.3	-94.4
대양주	58	11.6	61	91
중동	1013.3	188.9	-47.2	-54
독립국가연합	1546	296	94.1	91
유럽연합15개국	421.4	13.47		
유럽연합25개국	421.4	13.47		
유럽연합27국	421.4	13.4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81.7	477.8	-23.7	-14.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 2009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53.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함. 수출 금액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함. 평균 단가는 톤당 3,055.5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함.

○ 2009년 1~3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의 주요 수출 지역은 광둥(廣東), 산둥(山東), 요녕(遼寧), 길림(吉林), 북경(北京)지역으로 각각 2.0만 톤, 1.7만 톤, 0.6만 톤, 0.4만 톤, 0.2만 톤을 수출하였음. 광둥(廣東), 산둥(山東), 요녕(遼寧), 북경(北京)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22.1%, 44.4%, 40.0% 감소한 것이며, 길림(吉林)은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것임.

2.2.3. 채소류

- 2009년 1~5월 채소 수출은 31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하고,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함. 수입은 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냄. 수입액은 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5%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8.9% 감소한 23.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가. 대파

- 2009년 1~3월 중국 대파 수출은 10,758.1톤으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음. 수출액은 64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6% 감소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604.0 달러로 전년 대비 12.5% 하락했음.

표 10.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0,566.9	643.9	-24.6	-33.9
일본	6,977.1	594.9	-7.0	-19.2
홍콩	3,260.5	35.3	-15.3	-14.4
말레이시아	93.7	3.8	13,283.6	13,590.4
한국	32.9	1.3	-98.5	-99.2
마카오	102.4	2.1	-24.7	-23.7
싱가폴	14.5	1.1		
대만성	60.0	3.2		
태국	25.7	1.9		
유럽	183.7	5.5	14.4	9.2
러시아연방	183.7	5.5	14.4	9.2
북아메리카	7.5	0.5	78.6	18.7
캐나다	7.5	0.5	78.6	18.7
독립국가연합	183.7	5.5	14.4	9.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33.9	6.9	-61.0	-69.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 2009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대파 수출은 10,556.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함. 수출 금액은 64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함. 평균단가는 톤당 60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하락함.
- 2009년 1~3월 중국 대파의 주요 수출 지역은 복건(福建), 광둥(廣東),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6,120.9톤, 3,369.5톤, 647.0톤을 수출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 15.5%, 17.1% 감소한 것임.

표 11. 2009년도 중국의 지역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달러, %

지역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진(天津)	21.6	0.9		
흑룡강(黑龍江)	183.7	5.5	14.4	9.2
상해(上海)	647.0	45.4	-17.1	-29.5
강소(江蘇)	4.1	0.2	-98.8	-99.3
절강(浙江)	103.0	12.4	-58.6	-64.7
복건(福建)	6,120.9	542.6	-18.8	-27.3
강서(江西)	1.4	0.0		
산둥(山東)	306.9	22.9	-70.8	-69.6
광둥(廣東)	3,369.5	38.0	-15.5	-13.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나. 마늘

- 2009년 1~3월 중국 마늘 수출은 452.7천 톤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음. 수출액은 17,540.4 달러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387.4 달러로 전년 대비 27.7% 하락했음.
- 2009년 1~3월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인도네시아, 중동,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순으로, 각각 10.2만 톤, 5.2만 톤, 3.4만 톤, 3.3만 톤, 3.0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28.6%, 3.9%, 187.3%, 13.3% 증가한 것임.

표 12.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05,118.2	10,703.5	15.1	-16.8
인도네시아	102,325.9	3,429.0	3.7	-30.7
파키스탄	32,978.1	1,310.9	187.3	141.8
일본	8,486.4	849.4	12.4	-3.0
베트남	33,769.9	960.9	3.9	13.8
태국	9,274.6	541.9	41.7	14.9
방글라데시	22,612.6	687.9	39.8	1.1
말레이시아	21,906.4	668.6	3.4	-32.8
필리핀	17,424.6	475.0	13.7	-34.3
북아메리카	34,968.0	2,523.9	10.1	-11.7
미국	30,396.1	2,296.9	13.3	-8.6
유럽	45,272.6	2,027.2	-2.5	-29.0
네덜란드	13,892.5	544.8	27.8	-20.5
남아메리카	41,334.8	1,465.1	-27.2	-49.5
아프리카	22,791.3	641.4	21.7	-29.6
대양주	3,255.7	179.3	-13.8	-29.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89,223.8	6,292.8	6.9	-22.6
유럽연합27국	30,445.7	1,504.3	4.9	-24.1
중동	51,778.1	1,468.0	28.6	-26.1
유럽연합25개국	30,142.7	1,493.0	7.1	-23.0
유럽연합15개국	28,262.5	1,394.5	12.1	-20.5
독립국가연합	14,816.6	529.4	-15.8	-40.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09년 1~3월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서(廣西), 광둥(廣東), 복건(福建) 지역으로 각각 28.1만 톤, 6.1만 톤, 2.4만 톤, 2.1만 톤, 1.6만 톤을 수출하였음.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둥(廣東), 복건(福建)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28.2%, 67.8%, 1,411.7% 증가한 것이며, 광서(廣西)지역은 24.8% 감소한 것임.

표 13. 2009년도 중국의 지역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814.9	35.4	6.9	-28.0
천진(天津)	11,303.7	467.3	4.3	-34.2
하북(河北)	555.5	34.4	-17.3	-26.7
산서(山西)	79.5	2.1	-24.6	-57.6
내몽고(內蒙古)	373.2	19.7	136.8	224.5
요녕(遼寧)	1,077.7	61.7	27.2	19.7
길림(吉林)	1,797.7	33.4	-84.7	-94.2
흑룡강(黑龍江)	3,557.4	185.2	61.3	106.8
상해(上海)	5,926.3	393.8	5.1	-11.9
강소(江蘇)	60,814.1	1,988.2	28.2	-18.7
절강(浙江)	1,633.7	119.3	-43.0	-54.3
안휘(安徽)	4,951.6	256.5	-22.9	-41.2
복건(福建)	16,420.7	712.5	1,411.7	524.4
산둥(山東)	281,112.4	10,770.7	5.1	-27.0
하남(河南)	12,828.9	459.4	22.7	-21.1
호남(湖南)	53.0	1.5	-74.4	-77.4
광둥(廣東)	21,018.4	1,007.4	67.8	44.9
광서(廣西)	24,288.2	712.0	-24.8	-15.2
해남(海南)	156.0	5.6		
사천(四川)	11.2	0.2		
운남(雲南)	2,166.4	182.3	76.2	82.4
서장(西藏)	547.0	32.0	-88.9	-88.1
섬서(陝西)	37.0	2.1	-94.0	-95.2
신강(新疆)	1,216.3	47.8	-1.9	-32.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2.2.4 기타

가. 표고버섯

- 2009년 1~3월 중국 표고버섯 수출은 6.1천 톤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음. 수출

액은 3,42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5,659.7달러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음.

- 2009년 1~3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으로, 각각 2,929.9톤, 1,254.1톤, 660.1톤, 490.9톤을 수출하였음.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2%, 33.3%, 57.3% 감소한 것이며, 미국은 6.4% 증가한 것임.

표 14. 2009년도 중국의 국가별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09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4,313.3	2,690.8	-53.0	-26.5
일본	2,929.9	1,774.0	-16.2	0.9
베트남	86.1	141.9	-22.2	-14.6
한국	660.1	267.4	-33.3	-32.7
북한	137.0	135.5	19.3	40.6
싱가폴	96.3	91.5	-64.5	-70.6
태국	195.6	62.8	-21.4	-67.3
말레이시아	101.6	86.5	-80.1	-66.7
홍콩	79.3	101.6	-90.6	-76.6
북아메리카	1,281.5	493.7	1.3	9.0
미국	1,254.1	481.9	6.4	17.1
유럽	385.9	191.3	-26.4	-35.5
네덜란드	172.0	55.1	-21.4	-30.4
대양주	60.3	37.6	1.1	16.7
남아메리카	8.8	10.1	-32.8	-10.8
아프리카	1.5	1.3	-90.5	-74.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490.9	401.3	-57.3	-57.1
유럽연맹15개국	356.4	182.8	-25.1	-31.7
유럽연맹25개국	357.6	184.1	-25.7	-32.3
유럽연맹27국	357.7	184.2	-25.6	-32.3
중동	15.4	11.0	16.2	38.0
독립국가연합	23.0	2.2	-65.6	-95.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 2009년 1~3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지역은 절강(浙江), 복건(福建),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2.1천 톤, 1.8천 톤, 1.1천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31.2%, 4.1% 감소한 것임.

[참고자료]

農業部, 2009.7.3. “2009年1-5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食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9년 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소득 동향

- 전국 31개 성·자치구·시의 6.8만 호의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1~6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2,733위안으로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임금소득은 95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했음.
 - 그 중 노무수입이 84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고, 현지 노무수입은 46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고, 외지 노무수입은 38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농산물 판매소득은 1,12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했음.
 - 그 중 경종작물의 판매소득은 65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1%, 수산물은 41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음. 임산물은 2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축산물은 40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하락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겸업소득은 36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음.
 - 겸업소득의 구성을 보면 공업부문에서 얻은 소득이 67위안으로 2.5% 증가했고, 건축업은 5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했으며, 제3차 산업은 25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자산소득은 7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18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 증가했음.

표 1.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 및 격차, 1978~2009.6

연 도	1인당 주민 소득(경상가격)		소득격차	
	농촌(A)	도시(B)	절대(B-A)	상대(B/A)
1978	133.6	343.4	209.8	2.57
1980	191.3	477.6	286.3	2.50
1985	397.6	739.1	341.5	1.86
1990	686.3	1,510.2	823.9	2.20
1995	1,577.7	4,283.0	2,705.3	2.71
2000	2,253.4	6,280.0	4,026.6	2.79
2001	2,366.4	6,859.6	4,493.2	2.90
2002	2,475.6	7,702.8	5,227.2	3.11
2003	2,622.2	8,472.2	5,850.0	3.23
2004	2,936.4	9,421.6	6,485.2	3.21
2005	3,254.9	10,493.0	7,238.1	3.22
2006	3,587.0	11,759.5	8,172.5	3.28
2007	4,140.0	13,786.0	9,646.0	3.33
2008	4,761.0	15,781.0	11,020.0	3.31
2009.1~6	2,733.0	8,856.0	6,123.0	3.24

주: 농촌주민 소득은 순소득, 도시주민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나타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彙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 編. 2007. 『2007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綜合司. 2008. 『2008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7.16. “上半年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8856元 同比增長9.8%”;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7.24. “上半年全國農村居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8.1%”.

[참고자료]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7.16. “上半年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8856元 同比增長9.8%”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7.24. “上半年全國農村居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8.1%”

고추 · 마늘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 동향

- 2008년산 건고추 가격은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현재까지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종자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귀주성, 섬서성, 산둥성 등 고추 주산지의 건고추 종자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내외 감소하였음.
- 중국의 호남성 장사(長沙)시에서는 6월 26일~28일 제3회 중국 국제 고추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음. 금번 고추박람회 참가국은 한국, 인도, 이집트, 태국, 대만이며, 중국도 전국 25개 성과 시가 참가하였음.
- 최근 산둥성 위해시가 138톤에 달하는 건고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여 유럽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내딛었음.
 - 지난 10년 동안 위해시는 주로 일본과 한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였지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대 일본 및 한국 수출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음.
 - 금년 2/4분기까지 위해시가 미국,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수출한 농산물은 3,595톤, 수출액은 333만 달러에 달함. 주요 수출 농산물은 생강, 건고추, 고구마 등임.
- 중국의 건고추 재배 품종은 대부분 인도산, 금탑이지만 단수가 적고 품질이 월등하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신용광, 박영구, 윤종렬)이 해외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 못하여 대 한국 수출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북경시농림과학원 국가채소공정기술연구센터는 금년부터 수출용 신선고추 및 건고추용으로 모두 적합한 품종개발 연구를 시작하였고, 4월 9일 연구결과에 대한 검수 및 심사를 통과하였음.
- 이번에 개발된 수출용신품종은 “경탈2호(京辣2號)”, “국탑102(國塔102)”, “국탑108(國塔108)”임. 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 품질이 좋고 단수가 높으며 상품 화율도 높음.
 -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내몽고, 길림성, 산둥성 등지에 “경탈2호” 등 건고추 품종 시범 재배지를 10개 건립하였음. 또한 요녕성, 산서성에 13ha의 종자 시험재배장을 신설 하여 종자 4,300kg을 생산하였음.
 - 이들 품종은 익도산과 금탑품종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광서 흠남(欽南)지역은 흠주(欽州)시 최대 고추 생산기지로 월동 고추 재배면적이 4,600ha, 생산량은 11만 톤임. 이 지역은 겨울에 고추를 재배하여 이듬해 3월말에 수확함.
- 금년에는 방한 비닐막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조기 수확뿐 아니라 단수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실현하였음. 과거에는 3월말이 고추 출하기였는데 금년은 2월말부터 출하기 시작하였음. 금년산 신선고추 가격은 4월 말 현재 kg당 1.8~2.0위안임.
- 신강지역의 신강병단 105병단 농업원구에 “금조원(金棗園)” 고추 가공공장이 완공되어 8월이면 생산을 시작하게 됨. 이 고추가공기업에 한국의 한신상사가 2,000만 위안, 105병단이 400만 위안을 투자하였고, 원재료는 이 지역의 1만 ha에 달하는 고추 산지로부터 조달할 예정임.
- 호북성 함봉(鹹豐)현과 고악산(高樂山)진은 268ha에 달하는 한국 수출용 금탑 고추 재배기지가 있음. 금년부터 이 지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탑고추로 개종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음. 현재 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현재 20여개 행정촌의 2,500여 농가이고 연간 7,000여톤의 고추를 출하할 계획임. 현재 이 고추수출기지의 육묘작업이 완료되었음.

- 최근 고추홍색소 가공산업이 고추제품의 정밀가공으로 각광 받고 있음. 홍고추에서 추출한 홍색소는 여러 색상을 연출할 수 있어 수산물, 육류, 케익, 음료 등 각종 식품 착색에 광범하게 사용됨.
- 2/4분기에 신강 파주(巴州)지역의 고추홍색소 10톤이 산둥성 청도항을 통해 대일 수출을 실현하여 19.2만 달러의 외화를 창출하였음. 이는 신강지역에서 고추홍색소를 처음으로 수출한 사례임.
- 1/4분기에도 대 인도 수출을 실현했지만 이번 일본 수출은 인도 수출 대비 26% 많은 물량임.
- 이 지역은 2008년 4월에 연간 1,000톤 규모의 고추홍색소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고 연간 25,000톤의 고추를 원료를 사용함.
- 호남성 용산현에서도 호남성 최대 규모의 고추홍색소 가공기업을 설립하였으며, 8월에 정식으로 생산을 개시하는데 연간 홍색소 200톤, 고추기름 24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1.2. 가격 동향

- 6월 건고추 가격은 전월 대비 4% 하락한 kg당 3.1위안 수준으로 고추 저장 상인들은 출하를 관망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건고추 가격이 3.5~4.0위안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저장고추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기 어렵다는 지적임.
- 전문가들은 현재 건고추 가격은 최저수준으로 시중에 판매될 고추 물량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7월에는 고추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4.0위안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표 1. 2/4분기 고추 도매가격

단위: 위안/kg

연 도	북경 시장	산둥 시장
2009	5.9	3.9
2008	7.1	6.4
증감률(%)	-16.8	-39.4

주: 가격은 홍고추 상품 기준임.

- 주요 도매시장의 2/4분기 홍고추 가격은 북경 시장이 5.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고, 산둥 시장이 3.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하락하였음.

1.3. 국내 도입가격

- 2/4분기 중국 건고추(양건) 산지 거래가격은 톤 당 7,16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낮은 수준임. 이는 작황 호조로 2008년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중국 건고추(양건) 산지 가격은 유럽 등 수출시장 개척에 따른 수요 증가로 1/4분기보다 15% 상승한 수준임.
- 2/4분기 중국산 건고추 국내 도입가격은 600g당 5,080원, 도매가격은 5,6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 낮은 수준임. 이처럼 중국산 건고추 국내 도입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이유는 중국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낮아데다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되면서 수입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임.
 - 하지만 환율이 작년보다 여전히 높고, 2009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향후 수입증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4분기 냉동고추 민간 수입 가능가격은 600g당 510원, 가공 후 국내 판매 원가(국내 도입가격)는 3,74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4%, 11% 낮은 수준임.

2. 마늘시장 동향

2.1. 시장 동향

- 2009년 1~4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15억 달러로 국제 금융위기와 식품안전성 등의 원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재정부는 수출세 환급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중 마늘제품과 관련된 수출세 환급액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마늘제품 수출세 환급액 내역

제품명	세금징수액	수출세 환급액
건조 혹은 탈수 통마늘, 마늘절편	17%	15%
건조 혹은 탈수 기타 마늘	17%	15%
절임 통마늘, 마늘절편	17%	15%
절임류 기타 마늘	17%	15%

- 산동성 제녕 세관은 산동성의 마늘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마늘수출전문통로” 부서를 신설하여 “5+2” 근무일 체제와 24시간 예약통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늘수출의 “신고 즉시 방출”을 실현함.
 - 또한 세관의 수출마늘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마늘협회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마늘 수출기업들의 맹목적인 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현상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힘. 지난해 마늘 수출가격은 kg당 최저 0.6위안에서 현재 kg당 3.0위안으로 상승하였음.
- 국제시장의 농산물 수출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산동성의 마늘 수출도 활기를 띠. 6월 산동성의 농산물 수출가격은 지난 5개월 대비 6% 상승하였음. 그중 마늘 수출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하였음.
- 하남성의 마늘가격은 출하 당시 kg당 0.8위안에서 7월 20일 현재 kg당 4.5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금년도 마늘 출하 초기에 지난해 저렴한 마늘가격의 영향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였지만 신선마늘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늘가격이 급등하였음.
- 티벳 중남부에 위치한 내동(乃東)현의 마늘이 라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임. 최근 2년 동안 내동현의 마늘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음. 이 지역의 마늘재배 소득은 밭의 3.5배임. 1무(畝, 0.067ha) 당 마늘종 생산량은 100kg로 400위안, 마늘은 700kg로 1,680위안에 달하여 1무(畝) 당 순이익은 1,500위안 이상임.
- 마늘주산지인 산동성 금향현의 마늘은 전국 각 지역으로 판매됨. 금향현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으로의 운송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금향에서 북경은 120위안, 요녕성 심양시는 160위안, 산둥성 래우 60위안, 신장 우루무치 350위안, 피주 60위안, 산둥성 청도 100위안, 하북성 석가장 100위안, 산둥성 위해 100위안, 하남성 기현 80위안, 하남성 중머우 80위안임.

2.2. 가격 동향

- 금년도 마늘, 파, 생강 등 매운맛 채소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 현재 금향 마늘은 kg당 3.2~4.0위안, 생강은 kg당 3.2위안으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3~10배 정도 상승하였음. 마늘재배 농가들의 신선마늘 출하가격은 전년의 최저치인 kg당 0.08위안에 서 현재 kg당 3.2위안으로 상승하였음.

표 3. 중국 주요 도시 농산물도매시장 마늘가격

단위: 위안/kg

지 역	마늘			마늘종		
	2009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08년	2007년
북 경(新發地시장)	3.6	0.8	1.8	6.0	2.4	1.6
산 동(壽光 시장)	3.0	0.75	0.8	3.7	2.1	0.6

주: 7월 23일 가격(신선마늘) 중국농업정보센터, 2007년도, 2008년도 가격은 동기 대비 가격임.



Ⅲ. 농정연구 이슈

-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도입

- 경제발전 과정 중에 존재하는 일정한 도농 소득격차는 불가피한 것이나 중국처럼 소득격차가 큰 국가는 개도국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들.
- 도농 간 소득격차는 이미 중국 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건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도농 소득격차에 대한 국내외 이론계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음.
- 중국 도농 소득격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후속 연구 개진의 편의를 위해서 중국 도농 소득격차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함.

2.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측정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2.1. 도농 간 소득격차의 측정

- 도농 소득격차의 측정에서는 소득격차를 정확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 선택이 매우 중요함.
-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비율 지표가 사용되었음.

* 周端明, 蔡 敏. “中國城鄉收入差距研究評述”, 『中國農村觀察』 2008.03: 66-74을 번역 정리하였음.

- 천종성(陳宗勝, 1991)은 1인당 평균 소득, 1인당 평균 생활비, 1인당 평균 소비수준 지표를 이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비교하였음.
- 리뤄젠(李若建, 1994)은 도시주민 1인당 평균 생활비와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소득 비율을 이용하여 도농 소득격차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두 지표의 카테고리 불일치하여 비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통계국 농촌조사 과제조(國家統計局農調總隊課題組, 1994)는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지표를 사용하여 도농 소득격차를 비교하였으나, 농촌주민의 가처분소득과 순소득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생활비는 실제 획득하는 현물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처분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 도시주민은 정부로부터 대량의 비화폐적인 보조를 받는 반면, 농촌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농 소득격차를 측정할 때 도시주민이 획득하는 비화폐적인 보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통계국 농촌조사 과제조(1994), Zhang *et al.*(1994)는 1980~1992년 동안의 도시주민에 대한 주택보조, 의료보조, 기타보조 및 현물 소득을 포함한 도시가구의 비임금성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도시가구 조사 자료를 보충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 차이팡(蔡昉) 등(2000)은 1978~1997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자오롄웨이(趙人偉) 등(1999)은 중국사회과학원의 1988년과 1995년 샘플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주민 간 가처분소득 격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도농 간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농 간 소득격차의 명목수준과 실질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며, 반드시 실질 지표를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蔡昉等, 2003)

2.2. 도농 간 소득격차가 총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 90년대 중후반 이후 많은 학자들은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총 소득격차의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음.

- 리스(李實) 등(1998)은 중국사회과학원의 1988년과 1995년 두 차례 샘플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타일지수(Theil Index)를 산출, 분석한 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가 총 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38.2%에서 1995년 34.2%로 감소했다고 평가하였음.
- Kanbur *et al.*(1999)은 GE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1983~1995년 사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총 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1995년 현재 총 소득격차의 70.7%를 설명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Lin *et al.*(2002)는 타일지수 분해법을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총 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 이상이며, 총 소득격차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었음.

2.3. 도농 간 소득격차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통된 결론

-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나,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됨.
- 차이팡(蔡昉) 등(2003)은 전 세계 36개 국가의 도농 간 소득격차 비교를 통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음.
-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조사 과제조(1994)는 도농 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격차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음.
- 차이쉬밍(蔡繼明, 1998)은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주로 도농 간 비교생산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이는 사회분업과 생산력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도농 간 소득격차가 총 소득격차의 확대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크며,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가 개혁개방 이후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1985년 최저 수준에 이른 후, 1986년부터 다시 확대되었음.

3.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원인 분석

3.1. 도시편향 정책과 도농 간 소득격차

- 농업, 농촌, 농민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여 실현되는 경제발전은 종종 그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 대가가 크며, 심지어는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발전 모델, 즉 농촌을 희생시키는 “도시편향(Lipton, 1977)” 발전 모델은 여전히 대다수의 개도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도 여기에 포함됨.
- 도시편향 정책 형성에 관한 발전경제학 연구는 크게 3가지 연구방법론을 따름.
 - 첫 번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공업화 전략을 실시하는 목적과 그 경로로부터 개도국의 도농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시편중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게 공업화는 발전과 현대화의 대명사였던 반면, 소농 경제는 낙후된 것 또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개도국 지도자들은 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농업부문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취하였음.
 - Krueger *et al.* (1991)은 1980~1985년 사이 18개 개도국이 농업부문에 축적된 상당한 자본을 공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전, 사용했음을 입증하였음. 남사하라지역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농업부문으로부터 이전된 자본은 농업부문 실제 부가가치의 140%에 달하였음.
 - 두 번째 방법론에서는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농업부문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도시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Lipton(1977)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계급 대립은 농촌 계급과 도시계급 사이에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음.
 - Bates(1981)는 아프리카의 사례들에 공공선택 이론과 집단행동 이론을 접목시켜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음. 그는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시장에 관여할 때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농민의 단기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부 정책

- 에 대한 농민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농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세 번째 방법론에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전략 선택에서 도시편중 정책 선택의 내생성을 증명하였음.
 - 린이푸(林毅夫) 등(1994)은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추격 전략’ 선택이 도시편중 정책의 내생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음. 즉, 개도국은 그들이 채택한 추격전략의 실현과 실제 생산요소 상황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을 왜곡하는 거시정책환경, 계획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자원배분제도, 그리고 자주권이 없는 미시경영제도’로 구성되는 ‘삼위일체’의 특수한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경제체제에 도시 편중정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음.
 - 중국에서 도시편중 정책의 형성은 발전전략 때문인가, 이익집단의 압력 때문인가?
 - 차이팡(蔡昉) 등(2000)은 중국에서 이익집단은 도시편중 정책의 필요조건이 되지 못하며, 도시편중 정책의 형성은 경제발전 전략에서 내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단, 그는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익집단도 도시편중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도시의 가격 보조금은 도시 이익집단의 압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음.
 - 린이푸(林毅夫)·리우밍싱(劉明興)(2003)은 중국의 성급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1981~1997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음.

3.2. 요소시장의 왜곡과 도농 간 소득격차

- 리스(李實) 등(1999)과 리스(李實)(1999)의 실증연구는 농촌 노동력의 외부유출이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 외부로 유출된 노동력의 수입이 부분적으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또 농촌노동력의 외부유출은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됨.

- 농촌노동력 이동이라는 일종의 노동시장 형성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 과정 중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시장화 요구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임.
- 차이팡(蔡昉) 등(2000), 차이팡(蔡昉)(2003), 차이팡(蔡昉) 등(2003)의 연구들은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 변동 원인을 분석하였음.
- 차이팡(蔡昉)은 중국이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편향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된 도농 간 노동력시장의 왜곡이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음.
- Ding(2002)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비 지표를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의 부문 간 이동을 통해 획득되는 잠재수익이 커질수록 도농 소비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했음. 이는 노동력의 도농 간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함.
- Shi *et al.*(2002)은 중국 9개 성의 건강 및 영양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도농 간 소득격차의 42%와 시간당 소득의 48%가 바로 노동력 시장의 왜곡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 Hertal *et al.*(2004)도 도농 간 노동력시장과 토지시장의 왜곡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음.

3.3. 도농 이원구조, 도시화정책과 도농 간 소득격차

- 천종성(陳宗勝, 1991)은 도농 이원구조, 도농 인구비, 농업과 비농업의 비중 및 도농 간 협상가격차 등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이중 이원 경제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는 전통적인 농업부문이 이원구조하에서 불리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축소되기 어려우며, 이원구조가 조금씩 해소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일단 확대되다가 축소되어 2000년 이후 도농 간 소득격차가 역U자 커브의 정점에 다다르거나 근접한 후 하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국가통계국 농업조사 과제조(1994)는 1978~1993년 동안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계량분석을 진행하여, 여러 요소 가운데 도농 이원구조 계수로 도농 간 소득격차의 59.6%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는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의 대부분이 도시와 농촌이 분할된 이원 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차이쉬밍(蔡繼明, 1998)은 도농 간 소득격차의 형성은 대부분 도농 간 비교생산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도농 간 소득격차의 75.2%를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때 도농 간 비교생산력의 차이는 실제로 도농 이원화구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Bourguignon *et al.*(1998)은 40개 개도국의 노동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구조의 이원화 정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도농 이원구조가 소득격차 확대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음.
- Ravallion *et al.*(2004)는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대부분이 경제성장 모델에서 초래된 것이라 주장했고, 루밍(陸銘) 등(2004)은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3.4. 경제개방과 도농 간 소득격차

- Wei *et al.*(2001)은 중국 100여개 도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개방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만큼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 즉 경제개방이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에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 Zhai *et al.*(2002)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1인당 경지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농업의 경쟁우위가 약해졌고, 이는 결국 중국 농민의 소득저하를 초래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였음.
- Sylvianne *et al.*(2002)은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1993년 이전의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음.

3.5. 금융발전과 도농 간 소득격차

- Greenwood *et al.*(1989)은 동태모형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초기의 소득분배는 경제 성장 및 금융발전 정도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존재한다는 가설 하에, 금융발전과 소득분배의 관계는 역U자 형태, 즉 금융발전은 초기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도 확대 하지만, 금융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득격차를 축소한다고 주장하였음.
- 장치(章奇) 등(2003)은 금융발전의 관점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이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 야오후이쥘(姚耀軍, 2005)은 VAR모형과 Granger인과검증방법을 이용하여 1978~2002년 동안 중국의 금융발전과 도농 간 소득격차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금융발전과 도농 간 소득격차에는 일종의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 금융발전 정도와 도농 간 소득격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유효한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금융발전 효율성 정도와 도농 간 소득격차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 유효한 수준의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함.
- 장리쥘(張立軍) 등(2006)은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발전은 3가지 경로, 즉 금융발전의 문턱효과, 비균형효과 및 빈곤억제효과 등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 한편, 루밍(陸銘) 등(2004)은 “여타의 요인을 배제할 경우, 금융발전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현저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음.

3.6. 인력자본, 출산율과 도농 간 소득격차

- 루카스(Lucas, 1985)는 인력자본이 경제성장을 추동한다는 내생성장이론을 구축했고, Barro *et al.*(1986), Becker *et al.*(1988), Becker *et al.*(1990)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출산율의 내생결정 문제를 해석했음.

- 귀지엔송(郭劍雄, 2005)은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다루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농 간 출산율 수준, 인력자본 확보 수준 및 그 누적률의 수렴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인력자본과 출산율의 수렴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소득의 절대수렴을 초래하고, 만약 도시 편중적인 발전 전략, 도농 분할의 이원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농촌부문의 출산율 저하와 인력자본 수준의 제고는 조 건수렴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도시와 농촌의 인력자본과 출산율이 동등하다는 조건 하에서 전통적인 발전 전략과 이원구조를 유지하려면 정부와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는 도시편중적인 발전 전략과 도농 분할통치의 불합리한 체제의 최종적인 붕 괴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4. 기존 선행연구의 결함과 부족점

4.1. 개혁개방 이후의 도농 간 소득격차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 부족

- 개혁개방 이전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도 존재함.
- 즉, 중공업 우선발전의 추월식 경제성장 전략의 채택이 도시편향적인 정책시스템의 구축을 초래했고, 그것이 개혁개방 이전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한 원인임.
-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실증 분석했을 뿐,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이론적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4.2. 개혁개방 이후 도농 생산방식의 변화가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경시

- 도시와 농촌의 생산방식의 변화는 도농 간 소득격차에 큰 영향을 미침.
 - David Landes(2006)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새로운 부유계층 간,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과 국제경쟁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분배구조는 생산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분석방법을 따르면, 도농 간 생산방식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초래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요한슨(Johansson, 2004)은 농업노동력의 소득 및 임금 하락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이 농촌노동력의 한계생산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했음. 이는 실제로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도농 간 노동생산성 차이라는 것을 나타냄.
- 기존 선행연구는 이렇게 도농 간 소득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생산방식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

4.3. 향진기업의 발전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 간과

-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 잉여노동력의 취업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 즉 “농토는 떠나되 고향은 떠나지 않고, 공장에는 들어가되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離土不離鄉, 進廠不進城)”는 방식을 만들어내며, 중국 농민의 소득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도농 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 1984~1997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는 몇 해를 제외하고는 1978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비농업취업을 통해 농민소득이 효과적으로 증가하여 농촌의 쇠퇴를 막아주었기 때문임.
- 1990년대 후반 향진기업의 자본심화 과정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방식 변화측면에서 볼 때도 향진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하였음.

4.4. 도농 간 소득격차의 “누적의 인과관계” 간과

- 마르크스주의 연구사조에 따르면 생산방식은 분배방식을 결정하고, 분배방식은 생산 방식에 대해 능동적인 반작용을 가함. 또한 발전경제학에도 “누적의 인과관계”라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함.
 - “누적의 인과관계”란 시장이라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각종 경제요인들은 누적의 방식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일련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경제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의 형성은 비록 도농 간 상이한 생산방식이 초래한 도농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지만, 일단 형성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생산방식 선택에 대해 중요한 반작용을 형성하고, 나아가 도농 간 소득격차에 누적의 인과효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였음.



IV. 정책자료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전문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전문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4호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이 2009년 6월 27일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2009년 6월 27일

제1장 총칙

제2장 조정

제3장 중재

제1절 중재위원회와 중재위원

제2절 신청과 수리

제3절 중재패널의 구성

제4절 개정과 판결

제4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촌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조정과 중재시 본 법을 적용한다.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은 다음의 분쟁들을 포함한다.

* 2009년 6월 27일 공포된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 전문을 번역하였음.

- (1) 농촌 토지도급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와 종결로 인해 발생한 분쟁
- (2)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주식전환 등 유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3) 도급 토지의 회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4)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확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5)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 (6)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농촌 토지도급경영 관련분쟁

제3조 농촌 토지도급경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 등에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4조 당사자가 합의 및 조정을 원치 않거나, 혹은 합의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5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대중 편의를 위해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과 중재 업무에 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에서는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고, 관련 조정조직과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가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2장 조 정

제7조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인민정부는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업무를 강화하고, 당사자가 분쟁을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8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두신청도 가능하다. 구두신청을 할 경우, 촌민위원회 혹은 향진 인민정부는 그 자리에서 신청인의 기본 상황, 조정을 신청한 분쟁의 내용, 이유 및 시간을 기록한다.

제9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을 조정할 경우, 촌민위원회 혹은 향진 인민정부는 당사

자의 사실과 이유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을 해석하여 안내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0조 조정을 통해 합의한 경우, 촌민위원회 혹은 향진 인민정부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 혹은 지장을 찍고 조정위원의 서명과 조정 조직의 날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중재패널은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에 대해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에 의해 합의한 경우, 중재패널은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 즉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구사항과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위원이 서명하고,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직인 후 양 당사자에 전달한다.

조정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에 서명을 하기 전 당사자가 번복할 경우, 중재패널은 즉시 판결해야 한다.

제3장 중 재

제1절 중재위원회와 중재위원

제12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을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현, 구(區)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설립할 수 있고, 구(區)가 설립된 시 혹은 그 시의 직할구역에 설립할 수도 있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아래 설립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그 일상업무는 현지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이 맡는다.

제13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 대표, 관련 인민단체 대표, 농촌집체경제조직 대표, 농민대표 및 법률, 경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농민대표 및 법률, 경제 등 관련 전문가의 수가 총 인원의 1/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1명내지 2명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주임, 부주임은 전체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14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법에 근거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재위원의 임용 및 해임

(2) 중재신청의 수리

(3) 중재활동의 감독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본 법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임기 및 채용방식, 의사 규칙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제15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사람 중 중재위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위원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농촌 토지도급 관리업무에 만 5년 종사

(2) 법률업무 혹은 민사조정업무에 만 5년 종사

(3) 현지의 신망이 두텁고, 농촌 토지도급 법률 및 국가정책에 익숙한 주민

제16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농촌토지도급 등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촌토지도급 관리부문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중재위원의 교육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구성원, 중재위원은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규정과 중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수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분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재위원이 뇌물수수, 부정행위를 통해 사욕을 채우거나, 위법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당사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해야 하며,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구성원, 중재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보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절 신청과 수리

제18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 신청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당사자가 인지했거나 혹은 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인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19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의 신청인(제소자)과 피신청인(피소자)이 당사자가 된다. 농가 도급의 경우, 농가의 대표자가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인원이 많을 경우, 선출된 대표자가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중재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자로서 중재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중재 참가 여부를 통지한다.

당사자와 제3자는 대리인에게 중재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신청인이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
- (2)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을 것
- (3)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사실, 이유가 있을 것
- (4)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수리 범위에 속할 것

제21조 중재 신청을 한 당사자는 분쟁과 관련된 토지 소재지의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우편 혹은 위탁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을 명료하게 기재하고, 중재 신청과 모든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상응하는 증거와 증거 출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면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혹은 지장을 찍어야 한다.

제22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야하고, 본 법 제 20조 규정에 부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이하 나열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리해서는 안된다. 이미 수리를 한 경우에는 중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 (1) 중재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2) 인민법원에서 이미 분쟁을 수리한 경우
- (3) 법률 규정이 해당 분쟁이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4) 해당 분쟁이 유효한 판결, 재정, 중재판결, 행정처리 결정 등을 통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가 수리 결정을 한 경우,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수리통지서, 중재규칙과 중재위원 명단을 신청인에 송부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거나 중재 중지를 결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받은 날 혹은 중재 절차 중지 상황을 발견한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 수리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수리통지서,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과 중재위원 명단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5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답변이 어려운 경우,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혹은 지장을 찍는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는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답변서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재 과정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행동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렵게 되면, 재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 신청을 할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주거지 혹은 재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당사자의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재산보전으로 인해 입힌 손실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3절 중재패널의 구성

제27조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석 중재위원은 당사자가 함께 선정하고, 나머지 두 명은 양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 당사자가 선정할 수 없을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분쟁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논쟁이 크지 않은 농촌 토지도급 경영 분쟁의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한 명의 중재위원이 중재할 수 있다. 중재위원은 당사자가 함께 선정하거나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중재패널이 조직된 후 2근무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중재위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회피(回避)¹해야 하며, 당사자 역시 구두

¹ 법률용어. 재판관이나 서기가 소송 사건에 관하여 기피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스스로 그

혹은 서면으로 그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 (1)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일 때
- (2)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 (4) 사적으로 당사자, 대리인을 만났거나, 혹은 당사자, 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제출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첫 번째 중재패널 개정 전에 제출해야 한다. 회피 사유를 개정 이후 알게 되었을 경우, 중재패널 종결 전까지 회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회피 신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구두 혹은 서면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재위원의 회피 여부는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최종 결정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위원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따른다.

중재위원이 회피나 기타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 법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을 다시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제4절 개정(開庭)과 판결

제30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는 중재패널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중재패널 개정은 분쟁과 관련된 토지 소재지 향진, 촌 또는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진행한다.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칠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양 당사자가 향진 혹은 촌에서 개정을 요구한다면 향진 혹은 촌에서 개정해야 한다.

중재패널 개정은 공개적이어야 하지만,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예외로 한다.

제31조 중재패널은 개정 5근무일 전 개정 시간, 장소를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들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중재패널에 시간, 장소의 변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

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여부는 중재패널이 결정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합의에 이르면, 중재패널에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판결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신청인은 중재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반박할 수 있고, 반대 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중재패널은 재결을 내리기 전,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중재패널은 중재를 중지해야 한다.

제35조 신청인은 서면통지를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중재패널이 허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퇴장하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당사자는 개정 과정 중 의견을 발표하고,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증거제공과 대질 및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현지의 언어와 문자에 익숙하지 못한 당사자는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가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분쟁과 관련된 증거를 당사자 일방의 하청 측에서 관리하고 있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패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을 넘겨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38조 중재패널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경우,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제39조 중재패널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정한 감정기구에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당사자가 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패널이 지정한 감정기구가 감정한다.

당사자의 요구 혹은 중재패널의 요구에 근거하여, 감정기구는 감정인이 개정에 참가하도록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허가를 통해,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0조 증거는 재판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프라이버시등과 관련된 증거는 공개재판에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중재패널은 중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양 당사자에게 진술,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며, 당사자 대질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제41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 취득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당사자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한 분쟁에 관해서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중재패널이 현상 유지, 농업생산 회복 및 취토(取土), 토지점용 등의 행위 정지를 선행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선행판결에 불순응할 경우, 다른 일방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중재패널은 재판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중재위원, 기록위원,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의 서명, 날인 혹은 지장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는 자신이 진술한 기록에 대해 누락 혹은 착오가 있다고 느낄 경우, 추가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추가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제44조 중재패널은 인정된 사실과 법률 및 국가정책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판결서를 제작해야 한다.

판결은 다수의 중재위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소수의 중재위원의 이견은 기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다수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수석 중재위원의 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제45조 판결서는 중재 요구, 분쟁 사실, 판결 이유, 판결 결과, 판결 일자 및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의 기소 권리와 기소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중재위원의 서명과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다.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판결서 작성 후 3근무일 이내에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의 기소 권리와 기한을 고지한다.

제46조 중재패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7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는 중재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단,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규정된 기간을 넘겨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서는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 당사자는 법률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판결서에 대해 규정된 기한따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규정된 기간을 넘겨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거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50조 본 법에서 농촌토지는 농민단체와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근거하여 농민단체가 사용하는 경지, 임지, 초지, 그리고 기타 법에 따라 사용되는 농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제51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중재 규칙과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 시범규정은 국무원의 농업, 임업 행정주관부문이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께 제정한다.

제52조 농촌 토지도급경영 분쟁 중재는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중재업무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한다.

제53조 본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7호

『식품안전법실시조례』가 2009년 7월 8일 제 11기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2009년 7월 20일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8장 감독관리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해야 하

* 2009년 7월 20일 공포된 《食品安全法實施條例》 전문을 번역하였음.

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기관의 건전한 협조·협동 메커니즘을 세우고, 식품안전 정보 네트워크를 보다 완전하게 하며, 식품안전 정보와 식품검사 기구 등 기술 자원의 공유를 실현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에 근거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하여야 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채택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한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4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공포하고, 국민의 자문, 신고, 고발을 편리하게 제공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관련부문을 통해 식품안전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5조 식품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국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이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약품감독관리 및 국무원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기관과 함께 식품안전 위험평가 업무, 식품안전표준의 제정 혹은 수정업무, 그리고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 부문은 소재지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기관과 함께 식품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생행정 부문은 제출된 서류 상황을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등 기관은 주동적으로 식품안전위험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의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등 부문과 함께 정보의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8조 의료기구에서는 관리 중인 환자가 식품이 원인이 된 질병의 환자이거나, 식중독 환자이거나, 혹은 식품이 원인이 된 질병의 환자, 식중독 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문에 관련질병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위생행정부문에서는 관련 질병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즉시 본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하고, 동시에 상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직접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할 수 있고,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한다.

제9조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업무는 성급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등 부문과 함께 결정한 기술기구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 기술기구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과 모니터링방안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전개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과 모니터링방안의 요구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성급이상 위생행정부문과 모니터링 임무를 하달한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업무인력은 샘플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관련 식용농산품의 재배·양식지 및 식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요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샘플을 수집할 때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분석결과 식품안전의 위험이 나타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관련 정보를 해당 행정구역에 설치된 시급과 현급 인민정부와 그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종합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및 국무원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이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은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및 수정 과정에서 제공된 과학적 근거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때

- (2) 감독관리의 중점영역 및 중점 품종을 확정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때
- (3) 식품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 (4) 어떤 요소가 식품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
- (5)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국무원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 식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은 식품안전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위험평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하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위험의 출처와 성질
- (2) 관련검사 데이터와 결론
- (3) 위험 파급 범위
- (4) 기타 관련 정보와 자료

현급이상 지방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은 이전 규정의 식품안전 위험평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문은 즉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위험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평가의 결과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 등 관련 정보를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15조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은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약품 감독관리 및 국무원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실시계획을 제정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은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기관을 선택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은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산업협회 등 기관이 제창하고, 함께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을 기초한다.

제17조 식품안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는 국무원 위

생행정 부문이 조직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의 과학성, 실용성 등의 내용을 책임진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문은 식품안전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록하여 제출한 기업표준을 동급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에 통보한다.

제19조 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급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식품안전 지방표준에 대한 집행상황을 구분하여 추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제 때 식품안전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급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은 식품안전표준의 집행과정 중 문제를 수집, 종합해야 하고, 즉시 동급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협회가 식품안전표준 집행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통고해야 한다.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제20조 식품생산기업을 설립할 때, 기업 명칭은 사전에 비준해야 하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후 공상등기를 신청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 심사, 생산장소 조사, 관련 상품 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자료, 장소가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상품이 식품안전표준 혹은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타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 서비스업 허가를 취득한 후 공상등기를 신청한다. 법률, 법규는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수공업자와 식품노점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른다.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와 요식 서비스업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21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고, 식품생산경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식품안

전사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식품생산 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재차 신청해야 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하여 일상감독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도록 명령해야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재차 생산경영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22조 식품생산경영 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이 참가하는 식품안전지식 훈련을 조직하고, 식품안전 법률, 법규, 규장, 표준 및 식품안전 지식을 학습하고, 훈련 문서를 건립한다.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건강 검사제도와 직원건강 문서화 제도를 수립, 집행해야 한다. 직접 먹는 식품을 다루는 직종의 근무자가 이질, 장티푸스, A형바이러스성간염, E형바이러스성간염 등 소화기 전염병, 활동성폐결핵, 화농성 또는 출혈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지장이 되는 질환에 걸렸다면, 식품생산경영자는 기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로 조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34조 2항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해당 검사항목 등의 사항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하품검사기록제도, 식품출하검사기록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법률 규정에 기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하품 탑재 관련 정보 혹은 구매영수증을 보존한다. 기록, 영수증의 보존기한은 2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제25조 집중 일괄 원료 구매를 실시하는 집단적 식품생산기업은 기업 총본부가 공급자의 허가증과 상품합격증명서를 일괄 검사할 수 있고, 입하검사기록을 진행한다.;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표준 검사를 진행한다.

제26조 식품생산기업은 원료 검수, 생산과정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관리, 불합격상품 관리 등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건립, 집행해야 하며, 식품안전 보장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27조 식품생산기업은 이하의 사항에 대해 통제조치를 제정, 실시해야 하고, 출하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1) 원료 구매, 원료 검수, 첨가물 등의 원료 통제
- (2) 생산공정, 설비, 저장, 포장 등 생산관련 주요부분 통제
- (3) 원료 검사, 반제품 검사, 완성품 출하검사 등 검사 통제
- (4) 운송, 교부 통제

식품생산과정 중 통제조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생산기업은 즉시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 제37조에서 입하품과 식품출하에 대한 검사를 기록하라고 규정한 것 이외에도, 식품 생산과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의 보존 기한은 2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제29조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이 식품을 판매할 경우, 도매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번호, 유통기한,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상술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판매 영수증을 남겨야 한다. 기록, 영수증의 보존기한은 2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기술을 채택하고, 식품안전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기록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31조 요식 서비스업 제공자는 원료구매에 대한 통제조치를 제정 및 실시하여, 구매한 원료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요식 서비스업 제공자는 가공과정 중 가공해야 하는 식품 및 원료 등을 검사해야 하며, 부패 변질하였거나 기타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요식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식품가공, 저장, 진열 등에 사용되는 시설, 설비를 유지, 보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온시설 및 냉장, 냉동시설을 세척, 검사해야 한다.

요식 서비스업 제공자는 요구사항대로 식기, 용기를 세정, 소독해야 하며, 세정, 소독하지 않은 식기,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식품안전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리콜된 식품은 식품 생산자가 무해화 처리 혹은 폐기 처리해야 하여, 해당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벨이나

지표 혹은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한 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보조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한 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조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현금 이상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리콜하고,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경영을 중지하였다는 것을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 신용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5장 식품 검사

제34조 신청인은 식품안전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검사 기구(이하 재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검사기구의 리스트는 국무원이 인정, 허가한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문이 함께 공포한다. 재검사기구가 발행한 재검사 결과가 최종 검사결과가 된다.

재검사기구는 재검사신청인이 직접 선택한다. 재검사기구와 첫 검사기구는 동일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샘플검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 재검 결과에서 식품이 합격인 것으로 나타나면 재검 비용은 샘플을 검사했던 부문이 부담한다. 그러나 재검 결과 식품이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나면, 재검 비용은 재검을 신청한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한다.

제6장 식품 수출입

제36조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명서와 관련 비준서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세관 신고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보고한다. 식품 수입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를 통해 합격을 검사받아야 한다. 세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서명한 통관증명서를 확인하고 통관을 허가한다.

제37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 상품의 신제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상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 식품안전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허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제38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 제39조 본국 내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미 등록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혹은 해외 식품생산기업으로 인해 관련 수입식품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
- 제40조 수입한 식품첨가제는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본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첨가제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 방식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식품첨가제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상표 및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없다.
- 제41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거나, 식품안전법 제 68조 규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 샘플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이 제정한다.
- 제42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식품안전법 제69조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 종합, 통보해야 한다.
- (1)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할 때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 (2) 산업협회와 소비자로부터 보고된 수입식품 안전 정보
 - (3) 국제조직 및 해외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정보, 위험경고정보, 해외 산업협회 등 조직이나 소비자로부터 보고된 식품안전정보
 - (4) 기타 식품 안전 정보
-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부문은 필요시 합당한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수출입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가 수출입 검사검역부문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 제43조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혹은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원료, 공구, 설비 등을 즉시 봉쇄하여 보존하는 등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2시간 이내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제44조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할 때, 실사구시와 과학존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사고의 성질과 원인을 규명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후 개선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부문은 위생행정부문이 일괄 조직 협조아래 분업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고조사처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 제45조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부문은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사고 관련 상황의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와 샘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단위와 개인은 식품안전 사고조사 처리업무에 협조하여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4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 간섭할 수 없다.

제8장 감독관리

-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 제7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 식품안전 연도 감독관리 계획은 식품샘플검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영유아, 노인, 환자 등 특정집단에게 제공되는 주, 부식품에 대한 샘플검사는 중점 강화해야 한다.
- 현급 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식품안전 연도 감독관리 계획에 따라 샘플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샘플검사시 샘플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경비와 검사비 등은 동급 재정에 포함시켜 지출한다.
- 제48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문을 일괄 조직, 협조해야 하고,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자

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사고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를 중점 강화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경고 정보를 공포하거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통보한 식품안전 위험예측 정보를 접한 후, 구(區)가 설치된 시급과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본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문을 조직해야 하며 중점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제49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질병정보와 감독관리 정보 등에 근거해야 하며, 식품 중 비식품용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첨가되거나 첨가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리스트와 검사 방법에 관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국가 식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적절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0조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중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약품감독관리 부문이 인정한 신속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초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초기 검사 결과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드러나면, 식품안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초기 검사 결과는 법 집행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51조 식품안전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 정보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행정허가 상황
 - (2) 생산경영 정지 명령을 받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상품의 리스트
 - (3) 식품생산경영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상황
 - (4) 전문검사 처리업무 상황
 -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 정보
- 이상에서 규정한 정보가 두 개 이상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제52조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식품안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포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 식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서 해석, 설명을 해야 한다.

제53조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 본 단위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표해야 하며, 문의, 고발 및 보고를 받는다.; 접수

받은 문의, 고발 및 보고는 식품안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답변, 실태 조사, 처리를 진행하고, 문의, 고발, 보고와 답변, 실태 조사, 처리 상황은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상무 등 부문은 직무에 근거하여 식품업계의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산업구조 우수화를 촉진할 조치를 취하여 식품업계의 신용체계 건설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며, 식품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9장 법률책임

제5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시,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요식 서비스업 제공자가 본 조례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원료구매 통제요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요식 서비스업 제공자가 본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부패 변질되었거나 기타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을 가공, 사용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립,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생산과정 중 통제요구사항을 제정, 실시하지 않거나, 식품 생산과정 중 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본 법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과정의 안전관리 상황과 보존 관련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4)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이 본 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혹은 구매영수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 요식 서비스업 제공기업이 본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세척, 시설, 설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6) 요식 서비스업 종사자가 본 조례 제 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기, 용기에

관해 세척,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식기, 용기를 세척,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제58조 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를 수입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법을 위반하여 수입한 식품첨가제를 몰수한다. 법을 위반하여 수입한 식품첨가제의 가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2천위안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치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의료기구가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질병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위생행정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제60조 식품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단위가 본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식품안전감독관리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본 행정구역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린다.

현급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행정부문이 식품안전감독관리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요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리며 해당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하도록 한다.

제10장 부 칙

제62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 위험 평가: 식품, 식품첨가제 중 생물성, 화학성, 물리성 위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해식별, 위해특징 묘사, 평가 발표, 위험특징 묘사 등을 포함한다.
- 요식 서비스업: 즉시 제작 가공, 상업 판매, 서비스성 노동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제63조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위험검사와 위험평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품질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국경 항구의 식품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 특정보건기능을 갖는 식품 명칭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V. 농업통계

- 한·중 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1	28.4	-45.4	301.4	9.4	17.6	-24.4	164.4	10.7
2009.2	68.7	-19.0	653.5	10.5	47.1	-5.2	358.0	13.2
2009.3	105.4	53.4	982.3	10.7	74.3	57.7	549.3	13.5
2009.4	146.9	39.4	1,377.8	10.7	105.7	42.3	756.8	14.0
2009.5	181.3	23.4	1,712.9	10.6	127.3	20.4	937.5	13.6
2009.6	214.4	18.3	2,068.4	10.4	149.7	17.6	1,134.2	13.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1.jsp)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2	1,070.6	0.0	6,304.0	17.0	6,150.3	0.0	29,646.9	20.7
1993	1,047.9	-2.1	7,258.9	14.4	6,834.1	11.1	28,218.7	24.2
1994	1,179.5	12.6	8,214.5	14.4	5,915.1	-13.4	29,214.5	20.2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1	299.9	-23.3	1,538.6	19.5	491.9	-11.3	2,712.1	18.1
2009.2	526.2	-24.4	2,921.6	18.0	898.3	-13.3	5,454.1	16.5
2009.3	826.9	57.1	4,438.4	18.6	1,419.6	58.0	8,400.3	16.9
2009.4	1,182.8	43.0	6,144.7	19.2	2,042.8	43.9	11,914.9	17.1
2009.5	1,475.1	24.7	7,738.4	19.1	2,590.6	26.8	15,351.4	16.9
2009.6	1,805.6	22.4	9,650.6	18.7	3,238.6	25.0	19,694.7	16.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1.jsp)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5.3	38.5	678.8	0.8	9.1	44.7	618.0	1.5
1993	6.7	19.5	694.7	1.0	9.9	28.9	622.3	1.6
1994	12.2	17.4	835.2	1.5	23.4	32.4	771.1	3.0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3	1,133.5	5.2	91.6	33.8	1,133.5	8.1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7	1,178.1	9.7
2002	95.6	53.6	1,374.5	7.0	126.2	61.1	1,239.2	10.2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8	9.7	175.0	65.5	1,293.5	13.5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0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	300.3	56.0	2,621.0	11.5	187.7	50.1	1,390.2	13.5
2009.1	16.9	59.5	301.4	5.6	8.1	46.0	164.4	4.9
2009.2	39.4	57.4	653.5	6.0	23.5	49.9	358.0	6.6
2009.3	61.3	58.2	585.3	10.5	37.7	50.7	200.9	18.8
2009.4	90.9	61.9	853.4	10.7	61.0	57.7	497.0	12.3
2009.5	115.9	63.9	1,042.0	11.1	77.1	60.6	620.7	12.4
2009.6	140.6	65.6	1,260.0	11.2	95.4	63.7	765.1	12.5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941.9	88.0	3,404.0	27.7	6,017.0	97.8	14,197.7	42.4
1993	906.2	86.5	3,839.2	23.6	6,568.5	96.1	18,276.0	35.9
1994	932.5	79.1	4,475.3	20.8	5,495.0	92.9	19,030.8	28.9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1	157.8	52.6	906.7	17.4	264.1	53.7	1,664.3	15.9
2009.2	282.7	53.7	1,764.8	16.0	493.6	54.9	3,402.7	14.5
2009.3	439.0	53.1	2,656.8	16.5	763.6	53.8	5,189.9	14.7
2009.4	624.4	52.8	3,692.5	16.9	1,091.7	53.4	7,559.5	14.4
2009.5	751.2	50.9	4,644.9	16.2	1,340.4	51.7	9,887.7	13.6
2009.6	914.5	50.6	5,851.3	15.6	1,629.4	50.3	12,817.7	12.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0.03	0.2	95.9	0.0	0.01	0.1	55.3	0.0
1993	0.1	0.3	89.1	0.1	0.02	0.1	23.8	0.1
1994	0.09	0.1	116.0	0.1	0.03	0.0	61.3	0.0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1	0.3	1.1	9.2	3.3	0.1	0.6	4.2	2.4
2009.2	1.0	1.5	19.1	5.2	0.3	0.6	8.7	3.4
2009.3	2.2	2.1	30.2	7.3	0.6	0.8	13.2	4.5
2009.4	3.8	2.6	42.4	9.0	0.9	0.9	18.6	4.8
2009.5	4.9	2.7	51.0	9.6	1.3	1.0	22.3	5.8
2009.6	6.5	3.0	62.3	10.4	1.8	1.2	27.6	6.5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27.6	2.6	874.4	3.2	4.6	0.1	435.7	1.1
1993	27.8	2.6	631.6	4.4	5.4	0.1	347.0	1.6
1994	37.2	3.2	932.3	4.0	8.9	0.1	453.7	2.0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1	3.8	1.3	207.1	1.8	1.6	0.3	68.1	2.3
2009.2	6.7	1.3	393.3	1.7	2.7	0.3	135.1	2.0
2009.3	10.9	1.3	585.8	1.9	4.3	0.3	211.4	2.0
2009.4	14.5	1.2	798.6	1.8	5.7	0.3	294.6	1.9
2009.5	18.0	1.2	988.0	1.8	7.2	0.3	375.0	1.9
2009.6	21.5	1.2	1,190.2	1.8	8.6	0.3	460.6	1.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7.7	56.5	575.5	1.3	10.9	53.9	519.6	2.1
1993	17.9	52.3	450.0	4.0	20.7	60.3	445.3	4.6
1994	39.1	56.0	508.4	7.7	42.0	58.2	410.0	10.2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1	0.6	2.1	8.0	7.5	1.0	5.7	5.7	17.5
2009.2	1.7	2.5	13.4	12.7	2.0	4.2	10.3	19.4
2009.3	2.7	2.6	19.7	13.7	2.8	3.8	15.7	17.8
2009.4	4.0	2.7	28.7	13.9	3.8	3.6	22.0	17.3
2009.5	5.8	3.2	36.6	15.8	5.2	4.1	27.2	19.1
2009.6	7.0	3.3	46.1	15.2	5.9	3.9	34.4	17.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60.9	5.7	1,618.5	3.8	113.0	1.8	14,770.0	0.8
1993	74.3	7.1	2,268.8	3.3	244.7	3.6	9,245.2	2.6
1994	98.0	8.3	2,086.9	4.7	372.4	6.3	9,350.2	4.0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1	65.3	21.8	186.7	35.0	138.4	28.1	623.7	22.2
2009.2	109.1	20.7	347.0	31.4	235.6	26.2	1,212.4	19.4
2009.3	186.3	22.5	565.8	32.9	431.5	30.4	1,945.0	22.2
2009.4	270.9	22.9	777.2	34.9	652.1	31.9	2,701.7	24.1
2009.5	359.6	24.4	986.1	36.5	890.4	34.4	3,428.0	26.0
2009.6	459.0	25.4	1,263.5	36.3	1,184.2	36.6	4,447.0	26.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1	10.6	37.3	115.0	9.2	8.4	47.7	56.8	14.8
2009.2	26.6	38.7	231.9	11.5	21.2	45.0	107.6	19.7
2009.3	39.2	37.2	347.1	11.3	33.1	44.5	163.9	20.2
2009.4	48.3	32.9	471.3	10.2	39.9	37.7	219.2	18.2
2009.5	54.7	30.2	583.4	9.4	43.6	34.2	267.3	16.3
2009.6	60.2	28.1	700.0	8.6	46.5	31.1	307.1	15.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2~2009.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40.3	3.8	407.2	9.9	15.7	0.3	243.6	6.4
1993	39.7	3.8	519.3	7.6	15.5	0.2	350.4	4.4
1994	111.7	9.5	720.0	15.5	38.7	0.7	379.9	10.2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1	72.9	24.3	238.0	30.6	87.8	17.8	356.0	24.7
2009.2	127.7	24.3	416.5	30.7	166.4	18.5	703.8	23.6
2009.3	190.6	23.0	630.0	30.3	220.2	15.5	1,054.0	20.9
2009.4	273.0	23.1	876.4	31.2	293.2	14.4	1,359.2	21.6
2009.5	346.2	23.5	1,119.3	30.9	352.5	13.6	1,660.7	21.2
2009.6	411.1	22.8	1,345.7	30.5	416.3	12.9	1,969.4	21.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6~2009.6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6. 4	132.6	106.4	101.6	132.0	107.4	101.9
	130.6	105.7	98.5	129.4	106.5	98.0
	126.2	104.0	96.6	124.1	104.0	95.9
	124.6	99.0	98.7	122.3	98.3	98.5
	129.2	101.8	103.7	127.6	101.7	104.3
	133.7	105.3	103.5	133.0	105.9	104.2
	125.6	101.1	93.9	123.2	100.7	92.6
	125.9	102.5	100.2	123.3	102.1	100.1
	132.4	105.2	105.2	130.6	104.7	105.9
2007. 1	134.3	99.6	101.4	132.9	98.2	101.8
	136.0	101.7	101.3	134.4	100.3	101.1
	136.6	104.7	100.4	135.1	104.3	100.5
	136.0	102.6	99.6	134.3	101.7	99.4
	136.8	104.7	100.6	135.2	104.5	100.7
	143.5	113.7	104.9	142.6	114.9	105.5
	148.0	118.8	103.1	147.8	120.9	103.6
	151.6	117.3	102.4	151.9	119.0	102.8
	150.1	112.3	99.0	150.0	112.8	98.7
	149.8	119.3	99.8	149.7	121.5	99.8
	149.6	118.8	99.9	148.9	120.8	99.5
	152.1	114.9	101.7	151.4	115.9	101.7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163.3	119.4	96.7	161.6	119.5	95.9
	160.9	112.1	98.5	158.4	111.1	98.0
	162.8	110.0	101.2	160.3	108.5	101.2
	162.0	107.0	99.6	160.3	105.5	100.0
	160.7	107.1	99.1	159.3	106.2	99.4
	153.6	102.5	95.6	151.2	101.0	94.9
	147.5	98.6	96.0	144.8	97.2	95.8
	149.8	98.5	101.6	147.7	97.6	102.0
2009. 1	158.5	98.4	105.4	157.0	97.1	106.3
	159.2	91.4	100.4	158.4	89.6	100.9
	160.0	94.8	100.5	159.5	94.7	100.7
	161.1	95.4	100.7	160.7	95.4	100.8
	162.7	99.6	101.0	162.5	100.6	101.1
	159.8	99.3	98.2	159.0	100.4	97.8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101.0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9.1~3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1	154.1	151.6	2.18	158.3	157.4
1.2	153.8	151.3	2.19	156.4	155.1
1.5	154.2	151.6	2.20	156.8	155.4
1.6	159.2	157.8	2.23	157.1	155.7
1.7	155.3	152.9	2.24	157.1	156.7
1.8	155.7	153.4	2.25	158.7	157.4
1.9	156.0	153.8	2.26	158.4	157.4
1.12	157.5	155.6	2.27	159.3	158.4
1.13	158.3	156.6	3.2	158.7	157.8
1.14	159.1	157.6	3.3	159.7	159.0
1.15	159.9	158.6	3.4	159.6	158.9
1.16	159.4	158.6	3.5	160.1	159.4
1.17	159.8	159.0	3.6	160.3	159.7
1.18	160.8	160.2	3.9	160.3	159.7
1.19	160.8	160.2	3.10	160.1	159.6
1.20	161.4	160.9	3.11	160.7	160.3
1.21	162.6	162.3	3.12	160.8	160.4
1.22	163.0	162.8	3.13	160.4	160.0
1.23	164.2	164.2	3.16	160.7	160.4
2.2	163.5	163.4	3.17	161.3	161.1
2.3	163.8	163.7	3.18	161.2	160.9
2.4	162.3	162.2	3.19	160.3	159.9
2.5	161.4	161.1	3.20	160.1	159.6
2.6	160.9	160.5	3.23	158.6	157.9
2.9	160.3	159.8	3.24	158.5	157.7
2.10	158.6	157.8	3.25	159.1	158.5
2.11	158.0	157.0	3.26	159.2	158.6
2.12	158.4	157.2	3.27	159.6	159.0
2.13	157.9	156.9	3.30	159.9	159.4
2.16	157.9	156.9	3.31	161.0	160.6
2.17	158.4	157.5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9.4~6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1	161.5	161.2	5.18	162.7	162.4
4.2	161.2	161.0	5.19	162.7	162.6
4.3	161.3	161.1	5.20	162.9	162.7
4.7	162.0	16.9	5.21	163.1	162.8
4.8	161.7	161.4	5.22	163.6	163.5
4.9	161.7	161.4	5.25	164.1	164.1
4.10	161.7	161.5	5.26	164.0	163.8
4.13	161.0	160.6	5.27	164.3	164.2
4.14	160.5	160.0	6.1	163.2	163.1
4.15	160.2	159.4	6.2	162.6	162.4
4.16	159.7	158.9	6.3	161.9	161.7
4.17	159.6	158.7	6.4	161.9	161.6
4.20	159.9	159.1	6.5	161.7	161.4
4.21	160.2	159.6	6.8	160.2	159.6
4.22	160.9	160.5	6.9	160.6	160.1
4.23	160.7	160.2	6.10	159.7	158.9
4.24	159.8	159.2	6.11	158.7	157.8
4.27	162.3	162.1	6.12	159.1	158.2
4.28	161.9	161.6	6.15	159.2	158.4
4.29	162.3	162.2	6.16	158.9	157.9
4.30	162.9	162.9	6.17	159.1	158.2
5.4	162.5	162.3	6.18	158.8	157.8
5.5	162.7	162.6	6.19	159.4	158.5
5.6	162.5	162.3	6.22	159.3	158.3
5.7	162.5	162.3	6.23	159.9	159.1
5.8	162.9	162.7	6.24	159.1	158.1
5.11	162.8	162.5	6.25	158.6	157.5
5.12	162.6	162.4	6.26	158.2	157.0
5.13	162.7	162.7	6.29	157.5	156.2
5.14	162.5	162.2	6.30	158.2	156.9
5.15	162.8	162.6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09-2009-02

중국농업동향(여름호) 제2권 제2호/통권6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7. 30.

발 행 2009. 7. 30.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